2026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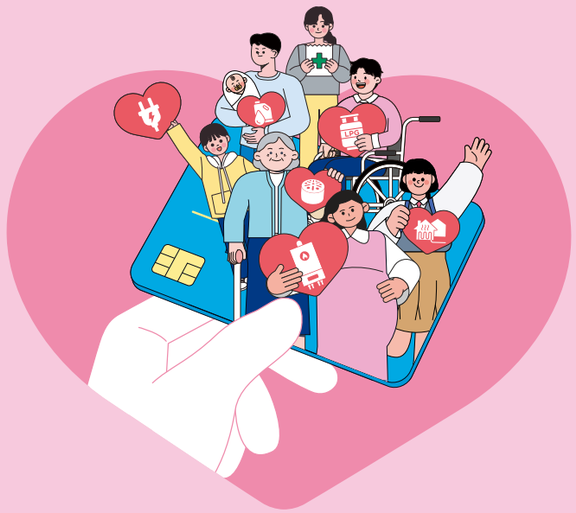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2026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2026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세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결정이 완료되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식

기존 수급자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급자

자동전환자

기존 수급자 중 당해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사업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 자

자동전환 제외자

기존 수급자 중 당해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변동이 있거나 별도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규신청이 필요한 자

신규대상자

기존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자동 중지자

별도 중지신청 없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된 자

* 수급자의 전·출입(가상카드), 사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지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가상카드(요금차감)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에너지공급자의 발행 고지서(관리비고지서 포함)에서 자동으로 에너지비용을 차감하는 방식

* 가상카드 적용 에너지원 : (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택1

발행 고지서

세대별로 발행되는 에너지사용요금 고지서(전기·도시가스 등)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에너지비용(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21종)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지역난방 불가)

전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
(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

* 계좌압류, 신용불량, 고령, 장애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하절기

여름철에 냉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절기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10월 1일부터(실물카드의 경우 10월 3일부터) 차년도 5월 31일까지의 기간

하절기 요금미차감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만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액(또는 잔액) 전액을 동절기 기간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사후 예외지급 유형1(p.25)에 해당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종료 전에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제도

사후 예외지급

주거환경, 지리적 제약, 행정착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 또는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기간 종료 후에 예외적으로 지원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외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행복이음 시스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에너지바우처 행정처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행정 전산망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에너지바우처를 동시(통합) 신청하는 제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에 난방 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지원 대상 (p.18)	✓「소득기준」과「세대원특성기준」을모두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자녀로 포함))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자녀로 포함))
	〈신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26. 6월 이후)한 세대가 아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노인(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table>
<tr><th>구 분</th><th>2025년도</th><th>2026년도</th></tr>
<tr><td rowspan="2">지원
제외
(p.18)</td><td>에너지바우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동절기 이용권 종류「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등
– 예외 하절기 기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며, 동절기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음</td><td>에너지바우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동절기 이용권 종류「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등
– 예외 하절기 기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며, 동절기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음</td></tr>
<tr><td>〈신설〉</td><td>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과 중복수급 불가</td></tr>
<tr><td rowspan="2">지원
금액
(p.19)</td><td>✓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
– 계절별(동·하절기) 지원금액 구분 없이 에너지바우처 전체 사용기간('25. 7. 1.~'26. 5. 25.) 동안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
<table>
<tr><th>구분</th><th>1인 세대</th><th>2인 세대</th><th>3인 세대</th><th>4인 이상 세대</th></tr>
<tr><td>지원금액</td><td>295,200원</td><td>407,500원</td><td>532,700원</td><td>701,300원</td></tr>
</table>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25. 7. 1.~'25. 9. 30.) 기간을 고려하여 세대원수별 차등 지원
<table>
<tr><th>구분</th><th>1인 세대</th><th>2인 세대</th><th>3인 세대</th><th>4인 이상 세대</th></tr>
<tr><td>지원금액</td><td>40,700원</td><td>58,800원</td><td>75,800원</td><td>102,000원</td></tr>
</table>
* 10월 1일 이후에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td><td>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
– 계절별(동·하절기) 지원금액 구분 없이 에너지바우처 전체 사용기간('26 7. 1.~'27. 5. 31.) 동안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
<table>
<tr><th>구분</th><th>1인 세대</th><th>2인 세대</th><th>3인 세대</th><th>4인 이상 세대</th></tr>
<tr><td>지원금액</td><td>295,200원</td><td>407,500원</td><td>532,700원</td><td>701,300원</td></tr>
</table>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26. 7. 1.~ '26. 9. 30.) 기간을 고려하여 세대원수별 차등 지원
<table>
<tr><th>구분</th><th>1인 세대</th><th>2인 세대</th><th>3인 세대</th><th>4인 이상 세대</th></tr>
<tr><td>지원금액</td><td>40,700원</td><td>58,800원</td><td>75,800원</td><td>102,000원</td></tr>
</table>
* 10월 1일 이후에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td></tr>
<tr><td>〈신설〉</td><td>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table>
<tr><th>구분</th><th>1인 세대</th><th>2인 세대</th><th>3인 세대</th><th>4인 이상 세대</th></tr>
<tr><td>하절기바우처</td><td>40,700원</td><td>58,800원</td><td>75,800원</td><td>102,000원</td></tr>
<tr><td>연탄전환바우처</td><td colspan="4">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td></tr>
</table>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한 경우(하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 이후에 모두 소멸)
<table>
<tr><th>구분</th><th>1인 세대</th><th>2인 세대</th><th>3인 세대</th><th>4인 이상 세대</th></tr>
<tr><td>지원금액</td><td colspan="4">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2025년도</th><th>2026년도</th></tr>
<tr><td rowspan="2">사용기간
및 지원
방식
(p.20~21)</td><td>에너지바우처
✓하절기 : '25. 7. 1.~ 9. 30.
–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25. 7. 1 부터 9. 30. 까지 기간 동안 발행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25. 10. 1.~'26. 5. 25.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택 1(중복불가)
– 가상카드 : '25. 10. 1. 부터 '26. 5. 25.까지 발행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수급자가 선택한 한 가지 종류의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에너지원 중복선택 불가)
– 실물카드 : '25. 10. 13. 부터 '26. 5. 25.까지 기간 동안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지역난방은 결제 불가능)</td><td>에너지바우처
✓하절기 : '26. 7. 1.~ 9. 30.
–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26. 7. 1. 부터 '26. 9. 30. 까지 기간 동안 발행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26. 10. 1.~'27. 5. 31.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택 1(중복불가)
– 가상카드 : '26. 10. 1. 부터 '27. 5. 31.까지 발행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수급자가 선택한 한 가지 종류의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에너지원 중복선택 불가)
– 실물카드 : '26. 10. 3. 부터 '27. 5. 31.까지 기간 동안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지역난방은 결제 불가능)</td></tr>
<tr><td>〈신설〉</td><td>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26. 10. 3.~'27. 5. 31.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만 지원하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연탄, 지역난방은 결제 불가능)</td></tr>
</table>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신청 및 재신청 (변경)기간 (p.21)	**에너지바우처** ✓ 신규신청 : '25. 6. 9.~ 12. 31. ✓ 재(변경)신청 – 세대원 수 감소, 동절기 이용권 방식 변경 (실물 · 가상카드→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5. 6. 9.~ 6. 26. – 이용권 방식(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에너지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수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5. 6. 9.~'26. 5. 25. ✓ 신규신청 · 재신청 일시 중단 : ① '25. 6. 27.~6. 30. ② '25. 10.1.~10. 12. ③ '25.12월 말 중 2~3일간(별도 안내)	**공통** ✓ 신규신청 · 재신청 일시 중단 : ① '26. 6. 27.~ '26. 6. 30. ② '26. 10. 1.~ '26. 10. 2. ③ '26.12월 말 중 2~3일간(별도 안내) **에너지바우처** ✓ 신규신청 : '26. 6. 15.~'26. 12. 31. ✓ 재(변경)신청 – 세대원 수 감소, 동절기 이용권 방식 변경(실물 · 가상카드→미신청) : '26. 6. 15.~'26. 6. 26. * 단, '26. 6. 30.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상태인 수급자는 최초 사용재개 신청시까지 세대원 수 감소 신청 가능 – 이용권 방식(가상↔실물),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에너지공급자, 세대원 수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주소, 수급자, 연락처 : '26. 6. 15.~ '27. 5. 31.
	〈신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신규신청 : '26. 8. 3. ~ 12. 31. ✓ 재신청 : '26. 8. 3. ~ '27. 5. 31.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신규신청 및 재신청 불가
신청 서류 (p.36)	✓ 공통 서류(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추가 서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임산부 및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 사실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 확인서 – **소년소녀가정** 업무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 공통 서류(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추가 서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영유아** 7세(2019년생)의 경우, '취학전아동'임을 증명하는 취학 면제 · 유예확인서(초등학교장 직인 포함) – **임산부 및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 확인서 – **소년소녀가정** 업무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가정위탁보호아동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추가 – **다자녀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공통 서식 제2호)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신청 서류 (p.37)	〈신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공통 서류(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보일러 교체 관련 증빙 서류 – 연탄보일러 전환 방법별로 해당하는 증빙 서류 구비(p.37) ※ 보일러 교체완료일이 '26.6월 이후인 경우에 한함
사전 예외지급 *'26년 신규추진 (p.23)	〈신설〉	✓ 대상 – 주거형태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 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사후 예외지급 유형1)에 해당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세대 ✓ 신청시기 : '26. 6. 15.~ '27. 5. 31. ✓ 신청방법 –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 작성 · 제출 (수급자 또는 대상자 → 읍 · 면 · 동) – 생계비 계좌 등 수급자 또는 대상자 본인의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제출 ✓ 지급시기 : '26. 11월 ~ 12월 ※ '26. 10월 말 기준 사전 예외지급이 신청 · 결정되고, 정보변경이 완료된 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 지급액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금액(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
사후 예외지급 (p.25)	✓ 대상 – 사용기간 내 바우처 신청 · 발급 ·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또는 대상자 ✓ 시행시기 : 향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작성 · 제출(수급자 또는 대상자 → 읍 · 면 · 동) – 지자체별 예외지급 업무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수행	✓ 대상 – 사용기간 내 바우처 신청 · 발급 ·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또는 대상자 – 전세사기 피해자, 재난 피해자 중 등본상 주소지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자 ※각 특별법에 의거, 피해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시행시기 : '26. 6. 15.~'26. 9. 4. ✓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작성 · 제출 (수급자 또는 대상자 → 읍 · 면 · 동) – 지자체별 예외지급 업무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수행 – 수급자, 대상자, 세대원 명의의 생계비 계좌 등 통장 사본 제출

Contents

Ⅰ 사업 개요

❶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14
❷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16

Ⅱ 수급자 선정 및 관리

❶ 신규 신청·결정·통지·사용안내 32
❷ 수급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45
❸ '26년도 대상자 관리 49
❹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53

Ⅲ 바우처 발급과 사용

❶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56
❷ 에너지바우처 발급 59
❸ 에너지바우처 사용 61
❹ 에너지공급자 역할 64

Ⅳ 사후 관리

❶ 기관별 역할 분담 68
❷ 부정사용 모니터링 69

Ⅴ 예산집행 및 정산

❶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72
❷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74
❸ 이의신청 처리 76

Ⅵ FAQ(자주 묻는 질문)

❶ 신규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78
❷ 재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81
❸ 수급자 신청·사용 관리 체크리스트 83
❹ 제도·지원기준 문의 86
❺ 신청 관련 문의 92
❻ 신청정보 변경 문의 100
❼ 사용 관련 문의 106
❽ 외국인 관련 문의 116
❾ 사전 예외지급 관련 문의 117

Ⅶ 부록

붙임 1. 공통 서식 121
붙임 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134
붙임 3.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자명 및 공급자 코드 138
붙임 4. 에너지 공급자별 카드 납부 방식 / 고객번호 확인 방법 140
붙임 5. 에너지바우처 관련 법령단위 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147
붙임 6.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158
붙임 7.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범위 166
붙임 8.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신청·접수~결정·통지) 196
붙임 9.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가이드 283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Ⅰ

사업 개요

❶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❷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1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1 바우처의 유형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수혜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수혜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자에게 구매권을 사용하면 정부가 공급자에게 결제액(지원액)을 지급하는 형식

묵시적 바우처

물리적 증표 없이 이용자 및 관련자가 수혜권리가 있음을 인지 후 자유롭게 재화·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바우처)이 대표적 사례

환급형 바우처

수혜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 이후에 영수증이나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환급하는 형식

출처 I 바우처연구(2002, 장광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연구(2009, 박광수)

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7의2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

-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포함한 구매형 에너지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포함한 청구형 에너지비용을 수급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에너지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수급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I 에너지바우처의 유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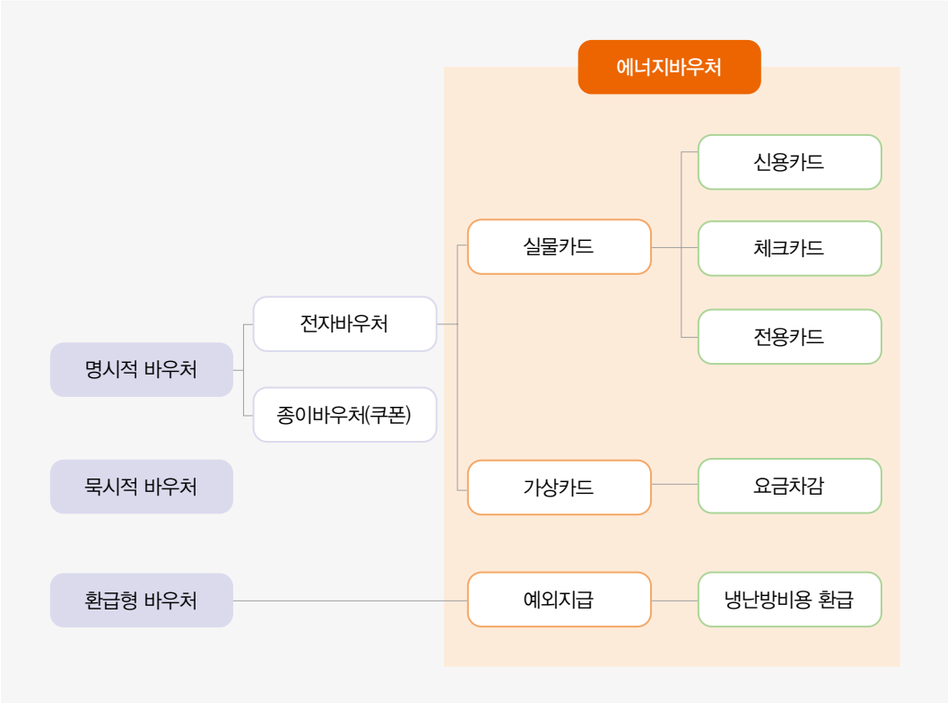

※ 주거환경, 행정착오, 지리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 실시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

1 추진경과

- 18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13년 5월)
  -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43번과제)
  -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60번과제)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를 거쳐 사업 예산 반영 및 도입 확정('14. 8월)
-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14. 12.~'15. 6월)
-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확정('15. 8월, 사회보장위원회)
- '15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5. 11.~'16. 1월, 사용 : '15. 12.~'16. 3월)
-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6. 11.~'17. 1월, 사용 : '16. 12.~'17. 4월)
  - * 지원대상 확대(임산부 포함)
- '17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7. 10.~'18. 1월, 사용 : '17. 11.~'18. 5월)
- '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8. 10.~'19. 1월, 사용 : '18. 11.~'19. 5월)
  - * 지원대상 확대(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 포함)
- '19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19. 5.~'19. 9월, 사용 : '19. 7.~'20. 4월)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지원대상 확대(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0. 5.~'20. 12월, 사용 : '20. 7.~'21. 4월)
-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1. 5.~'22. 2월, 사용 : '21. 7.~'22. 4월)
  - * 지원대상 확대(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 세대 포함)
- 20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22년 5월)
  -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2-4-21번과제)

-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2. 5.~'23. 2월, 사용 : '22. 7.~'23. 4월)
  - * 하절기 당겨쓰기 도입 및 지원대상 확대(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40%→50%)하여 주거 · 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포함)
-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3. 5.~'23. 12월, 사용 : '23. 7.~'24. 4월)
-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4. 5.~'24. 12월, 사용 : '24. 7.~'25. 5월)
  -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도입(미사용 세대 등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를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환경 조사 및 사용 안내 지원)
-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신청·접수 : '25. 6.~'25. 12월, 사용 : '25. 7.~'26. 5월)
  - * 동 · 하절기 지원금 통합 사용 및 지원대상 확대(다자녀 세대)

2 예산규모 및 법적근거

☑ **예산** 498,844백만원(민간경상보조,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비 기준)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 **시행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3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26.10월~'27.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26년도)을 발급받은 자(세대)
-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 6월 이후)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세대))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4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일반적인 경우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

- 전체 사용기간('26.7.1.~'27.5.31.)동안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하 · 동절기 기간 동안 지원금액 내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동절기에만 지원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으로 신청 필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하는 경우(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사용기간 및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

- 하절기 사용기간('26. 7. 1.~'26. 9. 30.)동안만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 '26년 10월 1일 이후에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
※ [참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에너지바우처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 가능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연탄전환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			

***유의사항** 1)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6년 10월 1일 이후에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
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불가 ('26.6.27.부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변경 불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대당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연탄전환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			

***유의사항** 1) 연탄쿠폰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 결정시 지원 중단 필요(지자체에서 연탄쿠폰 지원 중단 요청 공문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시행)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 결정 전까지 사용한 연탄쿠폰 사용액은 환수 불필요

5 지원방식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간 '26. 7. 1.~'26. 9. 30.

-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26년 7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전기만 가능)

※ 실물/가상카드 상세내용은 61p참고

동절기 사용기간 '26. 10. 1.~'27. 5. 31.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중복선택 불가)
- 가상카드(요금차감)의 경우 '26년 10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중복선택 불가)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의 경우 '26년 10월 3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지역난방은 결제 불가능)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6. 10. 3.~'27. 5. 31.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연탄, 지역난방은 결제 불가능)

6 (재)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규신청 기간 '26. 6. 15.~'26. 12. 31.

재신청 기간 '26. 6. 15.~'27. 5. 31.

- 세대원 수를 감소하거나 동절기 이용권 방식을 실물·가상카드(에너지바우처)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

| 재신청 (신규 신청이후 정보변경 등) |

구분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6년 6월 15일~2027년 5월 31일
	감소*	2026년 6월 15일~2026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2026년 6월 15일~2027년 5월 31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미신청	2026년 6월 15일~2026년 6월 26일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6년 6월 15일~2027년 5월 31일

* 세대원 수 감소 재신청은 2026년 6월 26일까지만 가능함. (단, '26. 6. 30.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상태인 수급자는 최초 사용재개 신청시까지 세대원 수 감소 신청 가능)

사용기간 '26. 7. 1.~'27. 5. 31.

- 하절기 '26. 7. 1.~'26. 9. 30.
- 동절기 **가상카드** '26. 10. 1.~'27. 5. 31. / **실물카드** '26. 10. 3.~'27. 5. 31.

참고사항 행복이음 시스템 일시중단 기간(연도전환 및 포인트 생성 처리 등)

① '26. 6. 27.~'26. 6. 30. ② '26. 10. 1.~'26. 10. 2. ③ '26. 12월 말 중 2~3일

※ 행복이음 시스템 연도전환(복지부)을 위해 행복이음 시스템 사용이 '26. 12월 말에 전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의 시스템 입력기간을 별도 안내할 예정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규신청 기간 '26. 8. 3.~'26. 12. 31.

재신청 기간 '26. 8. 3.~'27. 5. 31.

| 재신청 (신규 신청 이후 정보변경 등) |

구 분		기간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등	2026년 8월 3일~2027년 5월 31일

사용기간 '26. 10. 3.~'27. 5. 31.

참고사항 행복이음 시스템 일시중단 기간(연도전환 및 포인트 생성 처리 등)

① '26. 6. 27.~'26. 6. 30. ② '26. 10. 1.~'26. 10. 2. ③ '26. 12월 말 중 2~3일

※ 행복이음 시스템 연도전환(복지부)을 위해 행복이음 시스템 사용이 '26. 12월 말에 전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의 시스템 입력기간을 별도 안내할 예정

에너지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 분	주 체	주요내용
신청 · 접수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본인, 대리인, 공무원)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 발행 고지서(영수증), 보일러 교체 관련 증빙 서류
↓		
신청 서류 검토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세대원특성(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다자녀 세대) 및 세대원 구성 확인, 발행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해당 여부, 보일러 교체 여부 확인
↓		
수급자 선정 · 결정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 수급자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통지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 선정결과 통지 * 결정정보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전송
↓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실물카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 가상카드 정보는 에너지공급자로 전달 * 관련 DATA는 한국에너지공단에도 공유됨
↓		
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발급신청 가능
↓		
결제 · 차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	✓ 에너지판매소 등에서 에너지비용 결제 * 가상카드는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정보관리	읍 · 면 · 동/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 수급자의 사망 · 전출입 등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 등을 통한 정보관리
↓		
사후관리	읍 · 면 · 동/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안내 ✓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담당공무원)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중지처리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비용 예탁 및 정산 ✓ 카드 사용 비용 청구 및 정산 등

7 사전 예외지급 * '26년도 신규 도입

내용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사후 예외지급 유형①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전 예외지급 실시

대상 아래 조건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① 주거형태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수 없는 자 (사후 예외지급 유형①)

* 예시)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종교시설, 공장, 상가 등)

②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자

신청기간 '26년 6월 15일 ~ '27년 5월 31일

신청방법 사전 예외지급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 서식으로 신청

* 최초 1회 사전 예외지급 신청시 거주지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차년도부터 별도 신청없이 매년 사전 예외지급 추진(자동전환 및 지급)

증빙서류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공통서식 제4호의2)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한 주거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금계좌 수급자 또는 대상자 본인명의 일반계좌만 가능(세대원, 지자체 계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불가)

* 수급자 또는 대상자가 압류방지 통장밖에 없을 경우, 생계비 계좌 개설 안내

지급기간 '26년 11월 ~ 12월

- '26년 10월 내에 사전 예외지급이 신청 · 결정되고, 정보변경이 완료된 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 '26년 11월 이후 정보변경이 완료된 수급자는 당해연도 사전 예외지급이 불가하고 '27년 사업부터 사전 예외지급 반영(당해연도 사업은 사후 예외지급 기간동안 지급 예정)
- 통장해지, 압류설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당해연도 사전 예외지급 불가(사후 예외지급 신청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처리됨

* 해당 수급자에게 문자 안내 예정

시행절차

구 분	주 체	주요내용
시행계획 의결·공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기후부	✓ 예외지급 대상, 기준, 절차, 기간 등을 정하여 각 지자체로 공지
↓		
신청·접수	신청인(대상자) 또는 세대원 또는 읍·면·동	✓ 신청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읍면동에 방문신청(대리신청 가능)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서(서면) 내용을 행복이음(시스템)에 이기
↓		
입금 요청 내역 확인 및 전달	시·군·구	✓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확정된 사전 예외지급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입금 요청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
↓		
사전 예외지급 입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별 입금
↓		
결과보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기후부	✓ 에너지바우처 사전 예외지급 결과 보고

8 사후 예외지급 * 최종 확정 내용은 「예외지급 시행계획」 공문 참조

※ '25년도 사후 예외지급 시행계획으로 '26년도의 경우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 가능

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 제한 등으로 바우처를 통한 냉 ·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잔액 내에서 현금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대상자

- 유형 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 ③중앙난방

- 유형 2

  행정상의 착오 · 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자

  * ①실물카드 사용 제한, ②시스템 한계, ③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 유형 3

  거동 불편 또는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자

  * ①대상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으로 결제 장소로 이동이 불편

시행시기 신청 · 접수 : '26. 6. 15.~'26. 9. 4. / 지급 : '26. 6~9월 중

* 시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작성 · 제출(대상자→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자체별 사후 예외지급 업무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수행

  * 도메인 주소 : www.energyv.or.kr/workp

지급규모 에너지바우처 지원잔액 내에서 사후 예외지급 규모 결정

구 분	지급액	확인사항
① 에너지비용 구분 가능한 경우	✓ 영수증, 고지서 상 에너지비용을 지원 잔액 내에서 지원	✓ 영수증(고지서) 등 확인 * 수기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한 경우	✓ 에너지바우처 금액(세대원 수)별 평균 사용액 * 既사용액이 있을 시 既사용액 제함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의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사유 등 확인

지급방식

사후 예외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방지 계좌 등 대상자의 계좌가 입 · 출금이 불가할 시 수급자 희망에 따라 세대원 또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계좌로 대신 수령 가능

주체별 주요 업무

주체	주요 업무
읍·면·동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서면)를 시스템에 이기하여 신청 ✓ 대상자의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유형 확인 등 ✓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인지 확인 ✓ 입금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조회 및 확인(불일치 시 지급 지연)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입금 불가 –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 시, 입금 처리 가능 **생계비 계좌 발급 관련** – 예외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국 금융기관에서 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를 1인당 1계좌 개설 · 발급받아 예외지급 신청 가능함 ✓ 읍·면·동 계좌의 경우 예외지급 수급자의 수령 사실 증빙(수령증)은 자체 보관 ✓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신청취소 ✓ 예외지급 수급자의 입금오류가 발생한 경우 입금계좌를 정정
시·군·구	✓ 시스템에서 읍·면·동이 신청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을 검토 후 광역시·도에 예외지급 수급자 확정 요청 – 읍·면·동에서 수정 요청하거나 시·군·구 에서 검토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예외지급 신청서 반려(예외지급 신청서의 시·군·구 승인 건은 광역시·도에서 반려 가능)
광역시·도	✓ 시스템에서 시·군·구가 검토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예외지급 수급자 최종 확정 –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수정 요청하거나 광역시·도에서 검토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예외지급 신청서 반려(예외지급 신청서의 광역시·도 최종 승인(확정) 건은 반려 불가) ✓ 최종 확정된 예외지급 수급자 내역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예외지급 입금요청 공문 송부 – 예외지급 수급자 확정내역 파일(Excel)은 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 입금오류가 발생한 예외지급 수급자의 계좌정정 요청(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시행절차

구 분	주 체	주요내용
시행계획 의결·공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기후부	✓ 예외지급 대상, 기준, 절차, 기간 등을 정하여 각 지자체로 공지
↓		
신청·접수	신청인(대상자) 또는 세대원 또는 읍·면·동	✓ 신청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읍면동에 방문신청(대리신청 가능)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서(서면) 내용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시스템)로 이기
↓		
사후 예외지급 대상 검토	시·군·구	✓ 업무포털을 통해 읍·면·동에서 신청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 검토 ✓ 예외지급 수급자 확정 요청(시·군·구→광역시·도)
↓		
사후 예외지급 수급자 확정	광역시·도	✓ 업무포탈을 통해 시·군·구에서 검토한 예외지급 신청서 내용 검토 후 예외지급 수급자 최종 확정
↓		
사후 예외지급 입금요청	광역시·도 → 한국에너지공단	✓ 업무포털에서 예외지급 수급자 확정내역 파일(Excel)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문 송부
↓		
입금요청 내역 확인 및 전달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광역시·도 입금요청 내역 확인 및 전달
↓		
사후 예외지급 입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별 입금
↓		
미지급액 반납 (해당 시)	지자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읍·면·동에서 예외지급 수급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예외지급 금액(현금) 반납 * 반납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결과보고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기후부	✓ 에너지바우처 사후 예외지급 결과 보고

9 신청 및 사용관련 시스템 안내

구 분	기 능
신청단계 행복이음 시스템	✓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결정·통보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정보변경 ✓ 에너지바우처 중지 등 ✓ 사전 예외지급 신청·승인
사용단계 업무포털 시스템 (www.energyv.or.kr/workp)	✓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통계 및 사용 현황 ✓ 사후 예외지급 신청·승인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

10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

신청단계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6년도 대상자 관리(49–52p참고)

✓ 행복이음 시스템상의 기존 수급자 정보를 활용하여, '26년도 자격보유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26년도 지원여부 및 재신청(필요시) 안내 등을 실시

선정단계

- **에너지바우처**

  시 · 군 ·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세대원특성(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소년 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대원 수 등을 확인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시 · 군 · 구는 관계기관의 확인자료를 통해 대상 자격 요건* 및 비연탄 보일러로의 난방시설 교체 이력(증빙)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여부를 확인

| 연탄보일러 전환 방식별 증빙자료 유의사항 |

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사업('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연탄전환)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

② 지자체 지원사업('26년)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등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지자체 내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증빙서류 구비불요)

③ 본인부담 등 기타 전환사실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①번과 ②번의 경우,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 6월 이후인 재단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서(증빙)를 제출해야함

** ③번의 경우, '25년도 이후 연탄쿠폰 지원사업 수급자이면서,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 6월 이후인 보일러 설치 · 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발급단계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지원금액 정보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발급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1가지 방식으로 발급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발급

사용·정산단계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Ⅱ

수급자 선정 및 관리

❶ 신규 신청·결정·통지·사용안내

❷ 수급자 정보관리(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❸ '26년도 대상자 관리

❹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1 신규 신청·결정·통지·사용안내

* 기존 수급자는 「3. 기존 수급자 정보관리」(49p)에 따름

1 신청서 작성 전 용어정의

관련 용어 정의(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인		사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	대상자 (행복이음 시스템상 대상자 지정) 대상자 본인, 대리인 (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카드발급 명의자 (국민행복카드) 수급자 또는 세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인		사용자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	대상자 (행복이음 시스템상 대상자 지정)	=	카드발급 명의자 (국민행복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대상자 본인, 대리인 (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수급자 또는 세대원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연탄전환 바우처**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 6월 이후) 중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임이 확인된 자(세대)

-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수 없는 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자(세대)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차감되므로 대상자의 전기 고객번호 필수 입력(하절기 요금미차감 신청시 전기 고객번호 입력 생략 가능)**
- **동절기의 경우 해당 세대의 동절기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에 따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선택하도록 안내**

  * 61–63p 에너지바우처 사용 부분 참고

- **하절기 요금미차감 안내 및 접수**

  - **신청/해제** 하절기 요금미차감 신청을 희망하거나 하절기 요금미차감이 적용된 상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27. 5. 31.) 신청 또는 해제 가능

    * 고시원, 쪽방촌 등 전기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하절기 요금미차감 신청
    * 하절기 이후('26. 10. 1. 이후) 적용 신청 건은 차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시 적용됨
    *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하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 체크후 재신청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및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및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등)을 중복해서 신청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중복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하절기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에너지바우처를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지원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은 "Ⅰ 사업개요 –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❹ 지원금액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하는 경우…"를 참고(19p)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과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서에 동절기 이용권을 "미신청(하절기바우처만 신청(연탄쿠폰, 연탄전환 등))"으로 선택

-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방식을 "실물·가상카드(에너지바우처)"에서 "미신청(하절기바우처만 신청(연탄쿠폰, 연탄전환 등)"으로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6년 6월 26일까지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는 변경이 불가능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1) 수급자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카드발급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다른 세대원 명의로 카드 발급을 신청(전화로 카드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 등은 56–58p 실물카드 부문 참고)

   *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카드로 신청

2) 12세 미만의 수급자는 법적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다른 세대원이 없다면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신청을 안내

   * 14세 미만은 본인이 단독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발급

3) 도시가스사별로 결제방식(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결제방식·카드 등을 확인 후 카드 신청 필요(붙임4)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1) 발행 고지서의 주소와 대상자 주소(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연체요금(미납금)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으며, 에너지공급이 중단된 세대의 경우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 요금차감이 되지 않을수 있으니 가상카드(요금차감) 에너지원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하거나 이용권 방식을 실물카드로 변경하여 다른 에너지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

3) 동절기의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선택 불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

* 20p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 부분 참고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26.7.1.~'26.9.30.)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소멸됨을 안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사항

- 2026.6.27. 이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결정된 수급자는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변경 불가능 ('27년도에 변경 신청 가능)

- 2026년도 연탄쿠폰 수급자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연탄쿠폰 수급 중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공문으로 지원 중단 요청 필요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 결정 전까지 사용한 연탄쿠폰 사용액은 환수 불필요

3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가 아닐 경우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서류 안내

공통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2)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확인서, 소년소녀가정 확인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

- 영유아 중 7세의 영유아(2019년 출생자)인 경우, 취학 전 아동임을 증명하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초등학교장의 직인이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중,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임신 또는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①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 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②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 ③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하는 소년소녀가정 또는 다자녀 세대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첨부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 필요

  *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불필요

이용권 방식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신청 시 필요 서류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자명이 기재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 취사용 도시가스요금만 표기된 발행 고지서(영수증)를 가져온 경우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다른 에너지원의 가상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후 선택 신청

✓발행 고지서(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번호 확인 방법

1) 발행 고지서(영수증) 분실, 직권신청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에너지공급자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해당 세대의 고객번호를 요청 가능(「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단, 유선 확인시 고객번호 입력에 오류가 있으면 타인이 차감을 받을 수있으므로 입력 오류가 없도록 거듭 확인 필요

2) 고객번호 표기가 '고객번호/납부자 번호/납입자 번호/사용 계약 번호' 등 공급자별로 다양하므로 「붙임4」 에너지공급자별 카드 납부 방식/고객번호 확인 방법에서 해당 공급자의 고객번호 명칭을 확인하여 해당 번호를 입력

사전 예외지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급자 또는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세대원, 지자체 계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불가)

  * 수급자가 압류방지 통장밖에 없을 경우, 생계비 계좌 개설 안내

*** 생계비 계좌 발급 관련**

예외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국 금융기관에서 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를 1인당 1계좌 개설 · 발급받아 사전 예외지급 신청 가능함

-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환경임을 확인하기 위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공통서식 제4호의2) 등 필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 서류

- 비연탄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방식별 증빙서류

✓연탄전환 방식별 신청 유의사항

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사업('26년)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연탄전환)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

② 지자체 지원사업('26년)

–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등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지자체 내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증빙서류 구비불요)

③ 본인부담 등 기타 전환사실

–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①번과 ②번의 경우,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년 6월 이후인 재단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서(증빙)를 제출해야 함

** ③번의 경우, '25년도 이후 연탄쿠폰 지원사업 수급자이면서,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년 6월 이후인 보일러 설치 · 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5 신청서류 검토

에너지바우처

세대원특성 및 세대원 수 확인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함

1) 세대원특성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세대원 수 산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로 산정

고객번호 확인

이용권 방식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신청하는 경우 발행 고지서(영수증)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비교하여 행복이음 시스템 입력 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 함

1) 발행 고지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2) 행복이음 시스템 내 고객번호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 오류를 방지하고, 시스템에서 검증되지 않는 고객번호는 신청인이 가져온 고지서상의 고객번호를 재차 확인하여 입력

3) 1주택 다세대 등 1개의 고지서(고객번호)로 복수의 세대가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 중복된 '전기' 고객번호로 가상카드 발급 가능(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은 1개의 고객번호로 1세대만 신청 가능하므로 잔여세대는 전기 차감을 신청)

✓ **신청서류 검토시 유의사항(공급자코드 및 고객번호 관련)**

1) 아파트 단지의 고객번호는 '단일 고객번호' 또는 '세대별 개별 고객번호'가 있고, 동일단지 내에도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고객번호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2)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객번호 확인시(고지서 미제출시), 동일단지 내 '주택용 고객번호'와 '상가 고객번호' 등을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

3) 1개의 에너지공급자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명만 보고 에너지원별 공급자 코드를 오기입하지 않도록 유의(붙임3. 참고)

4) 고객번호 자릿수에 특히 유의해야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함(단일고객번호의 경우 동·호수 정보 반드시 필요)

5) 에너지공급자별로 고객번호 명칭이 다르므로 해당 에너지공급자의 정확한 고객번호 확인 필요(예. 고객번호, 납입자번호, 사용계약번호 등)

6) 주공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도 전기 공급자가 동별로 다를 수 있음을 유의(예. 101~106동 : 주택관리공단(전기), 201~205동 : 한전 전기)

7) 주공 아파트의 경우 대상세대의 지역난방, 전기 공급자 선택 시 주택관리공단(전기/지역난방)인지 그 외의 에너지 공급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선택

하절기 요금미차감 여부 검토

하절기 요금미차감 희망 여부를 검토하여 행복이음 시스템에 기재해야 함(공통서식 제1호)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또는 잔액) 전액을 동절기에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전기 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2) 하절기 요금미차감 신청 및 해제(요금차감 신청)는 '27. 5. 31.까지 가능함

사전 예외지급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확인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이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가 아님을 반드시 확인 필요, 수급자 본인명의 일반 통장인 경우에만 행복이음(시스템)에 입력

* 수급자 본인 이외에 세대원 계좌 또는 지자체 계좌로 입금 불가

* 수급자가 압류방지 계좌밖에 없는 경우 생계비 계좌 개설 안내(생계비 계좌는 사전 예외지급 신청 가능)

*** 생계비 계좌 안내**

사전 예외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국 금융기관에서 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를 1인당 1계좌 개설 · 발급받아 사전 예외지급 신청 가능함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확인

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촌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거주 환경임을 확인

- 입실확인서 : 고시원 등에서 발급하는 자체 양식 확인
- 실거주확인서 : 입실확인서 등 자체양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확인서(공통서식 제4호의2) 작성 안내 및 확인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 특성 확인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함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연탄보일러 교체 증빙서류 확인

- 공통 :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 추가 : 연탄전환 방식별 증빙서류

✓연탄전환 방식별 추가 서류

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사업('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연탄전환)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

② **지자체 지원사업('26년)**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등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지자체 내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증빙서류 구비불요)

③ **본인부담 등 기타 전환사실**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①번과 ②번의 경우,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 6월 이후인 재단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서(증빙)를 제출해야함

** ③번의 경우, '25년도 이후 연탄쿠폰 지원사업 수급자이면서,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 6월 이후인 보일러 설치 · 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6 신청서 입력(읍·면·동) - 행복이음 시스템

-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시에는 신속하게 행복이음 시스템에 입력 실시
- 시스템 입력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접수일자 생성 확인)

1) 「저장」만 하고 「접수」를 하지 않아 완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2) 신청 마감일('26. 12. 31.)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서 입력 및 저장·접수 필요

- 「접수」 처리 후, 신청정보 오류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신청취소」 및 「접수반려」 요청

* 단, 시·군·구에서 결정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한 이후에는 신청취소 및 접수반려가 불가하므로 읍·면·동에서는 중지 처리 후 재신청 진행

* 결정만 하고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결정 취소 후 읍·면·동으로 접수반려하여 정보 수정

- 복지로 온라인 신청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건 행복이음 시스템에 접수 처리

* 「붙임8」 참고

7 결정(시·군·구) - 행복이음 시스템

- 신청서류 및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정보 오류 등으로 정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취소, 접수반려 실시

* 단, 시·군·구에서 결정·송수신 이후에는 취소, 반려가 불가하므로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후 재신청 진행 필요

- 읍 · 면 · 동 신청 · 접수 후 결정 이전에 대상자가 전출했을 경우, 전출지의 시 · 군 · 구에서는 시스템상에서 「신청취소」를 해야 하며, 해당 대상자가 전입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결정 이후 전출했을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재신청 필요

- 최종 결정 이후에 「선택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국가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필요

8 통지(시·군·구) - 행복이음 시스템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공통서식 제3호, 제3호의2)

* 통지내용 : 수급자격 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카드종류(실물/가상카드), 가상카드 에너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

- 에너지바우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사실을 수급자에게 통지(공통서식 제3호의3)(자격상실(47p) 참고)
  - 「에너지법 시행령」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결정 및 통지"

* 자격상실로 인한 중지 사유 중 수급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통지 제외(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사망,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

9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는 수급자의 원활한 바우처 사용을 위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및 읍·면·동 사용률 관리

☑ 읍·면·동 사용률 관리

미사용 세대 및 사용이 저조한 세대 사용 독려

- 가상카드 및 실물카드 미사용 세대 및 사용이 저조한 세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을 독려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유형별 수급자 현황] 메뉴에서 미사용 세대 명단 조회 가능

☑ 재신청 처리

사망(2인 이상 세대) 및 전출입으로 중지된 세대에 대한 조속한 재신청 처리로 지속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 유도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유형별 수급자 현황] 메뉴에서 재신청 대상 세대 명단 조회 가능
- 사망으로 중지된 2인 이상 세대는 다른 세대원으로 수급자 변경 재신청 처리
- 전출입으로 중지된 세대는 전입지 정보로 재신청 처리

☑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수급자 1:1 안내

- 시·군·구는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효과적인 신청·사용 지원

*지자체 내 관련 복지단체 담당부서와 협조

대상기관	역할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노인종합복지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 재가노인복지센터(요양보호사)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활동보조인)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한부모가족)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을 통한 수급자 1:1 맞춤 안내 – **알림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이나 신청을 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 – **도우미** 에너지바우처 대상세대이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 안내 * 카드발급, 카드사용, 가맹점안내, 이동판매소 운영 등

- 업무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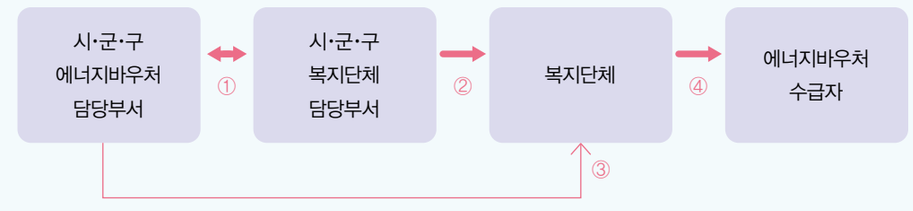

① 업무협의(관내 복지단체를 통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신청·사용 지원여부)

② 협조요청(복지단체 담당부서에서 관내 해당 복지단체에 활동 협조요청 공문발송)

③ 관련교육(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에서 복지단체에 에너지바우처 관련 내용 전파 및 교육)

④ 수급자 안내(수급세대 방문 시, 바우처 신청 및 사용안내·점검, 이동판매소 운영)

☑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이동판매소 운영

- 대상 : 고령,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 실물카드 신청자 중 사용금액이 0원인 수급자 등

단 계	내 용	필수 확인사항
지역 검토	등유, LPG, 연탄 미사용자 많은 지역	읍·면·동 협조
지원 에너지 선정	등유, LPG, 연탄 중 지원에너지 선정	
대상세대 발굴	에너지 배달을 희망하는 대상세대 모집 –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확인(보일러 사용가능 여부 등) – 구입 희망 에너지 조사 – 주소 확인 및 방문일자 확정 등	국민행복카드 소지 및 카드사용등록여부 확인
참여업체 모집	이동판매소를 운영하여 대상세대에 배달할 업체 모집	이동식 카드결제기 소지
이동판매소 운영	해당 대상세대에 방문하여 에너지 배달 및 구입비 결제	

- **참고** 운영 사진

이동판매소 운영차량	대상세대에 등유 배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좁은 골목을 오갈 수 있는 작은 차량이 유리	등유보일러나 보관용기에 등유를 배달	이동식 카드결제기 필요

10 이의신청(시·군·구, 시·도)

☑ 에너지바우처 발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 정보관리 (정보변경 및 사용중지)

1 수급자 정보 확인조사

☑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를 하여 수급자의 적격 여부, 부정수급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여부, 세대원 수 등을 확인 가능

2 수급자 정보변경

☑ **자격·지원금액 유지**

수급자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결정된 에너지바우처의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6. 7월~'27. 5월) 동안 유지되므로 수급자 사망(2인 이상 세대에 한함) 또는 전출입 등 자동중지 사유 발생 시 재신청을 통해 정보 변경 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재신청**

❶ 수급자가 사망(2인 이상 세대에 한함)한 경우 수급자 변경 재신청 가능

❷ 전출입으로 자동중지(가상카드 수급자에 한함)된 경우 고객번호, 주소 변경 등을 위한 재신청 가능

* 「붙임8」 참고

• **수급자 사망시**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을 수급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신청

1) 수급자 사망시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사망으로 인한 자동중지(다음날 오전 7시 35분)가 되며, 담당공무원은 다른 세대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됨)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1인 세대는 해당 없음)

2) 사망으로 인한 재신청시, 기존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실물카드는 새로운 수급자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하여 잔액 사용 가능)

3) 수급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행복이음 시스템이 자동중지(다음날 오전 7시 35분) 되며, 사망과 동일하게 다른 세대원으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상카드 수급자의 전출입시**

고객번호, 에너지원 변경을 위한 재신청

1) 가상카드 수급자 전출입시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전출입으로 인한 자동중지(다음날 오후 6시 5분)가 되며, 전입지의 담당공무원은 고객번호 또는 주소 변경 등을 위한 재신청 안내

2) 전출로 인한 에너지 공급 해지 요금 정산 시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차감) 불가

3) 재신청시, 기존 수급자격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

• **그 외 정보 변경시**

이용권 방식(실물↔가상, 실물 · 가상→미신청), 에너지원, 에너지공급자, 고객번호, 주거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수정 가능

* 「붙임8」 참고

재신청을 통한 변경 가능 정보	재신청 가능 기간
✓ 세대원 수 감소, 동절기 이용권 방식 변경(실물·가상카드(에너지바우처)→동절기 미신청)	'26. 6. 15.~'26. 6. 26.
✓ 이용권 방식(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에너지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수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6. 6. 15.~'27. 5. 31.

*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시작일부터 미사용 · 중지 상태인 경우 사용기간 이후에도 세대원수 감소변경 가능
* '26.6.27. 이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정보변경 재신청 불가

재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주요 변경 내용

1) **재신청 방법 1** 이용권 방식,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에너지공급자, 수급자, 세대원 수,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변경하는 경우

– **방법** [바우처신청] 화면에 접속 →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 「이력확인」 클릭 → 「변경선택」을 클릭하여, 수정해야할 항목을 모두 선택(중복선택 가능)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변경 후 '확인' 및 '저장' 후 「신청접수」

2) **재신청 방법 2** 수급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법**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수급자로 변경할 세대원을 체크하여 [바우처신청] 화면에 접속 →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 「정보수정」 선택 후 「변경선택」을 클릭하여, '대상자변경' 선택 → '이전수급자' 「이력확인」 클릭 후 추가 정보 변경 사항(이용권, 고객번호 등)이 없으면 '확인' 및 '저장' 후 「신청접수」

* (참고) 「소득/등급」 설정에 세대주와의 관계 중 '본인'이 두 명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한 명을 클릭하여 다른 관계로 지정하여 '본인'을 한 명으로 수정 후 진행

3 자격상실(시·군·구)

자격상실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읍·면·동 담당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자격에 위와 같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본인포기

수급자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포기를 희망하거나 기타 중지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상에서 [중지환급신청] – [중지환급사유] – [중지신청(본인포기)]를 선택하여 절차 진행

* 본인포기로 중지한 경우에도 추후 재신청 가능

4 개인정보 보호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등은 신청자 또는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수급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접수 후 보관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이며,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요망(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3 '26년도 대상자 관리

기존 '25년도 수급자의 자격충족 여부 검토 및 '26년도 신규 대상자 발굴을 통해 '26년도 대상자를 구분하고 ①대상자 구분별 자동전환* 여부 결정 및 ②신규신청, 재신청 등 맞춤형 안내 추진

* 자동전환 : 기존 '25년 수급자의 자격이 '26년도에도 충족하면 별도 신청없이 '26년도 수급자로 전환(수급자 유지)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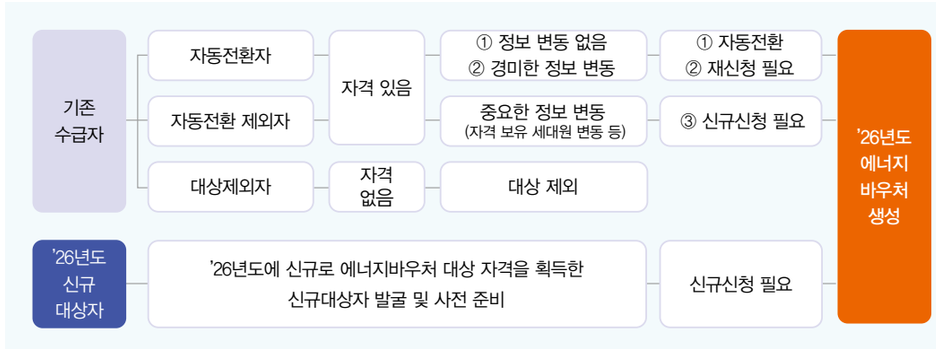

* 자동전환은 '26. 5월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자동전환 이후 수급자 정보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1 기존 수급자 정보 관리

- 담당 공무원은 행복이음 시스템(세대원정보 포함)에서 관할 지역 내 기존 수급자의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자격이 유지된 수급자(자동전환자), 자격이 변동된 수급자 등을 구분
-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6월 송부)하는 자동전환자 등 대상자 명단 참고

1) **자동전환자**

기존 수급자 중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 자

– 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25년도 대비 정보 변동이 없는 세대로서 자동전환이 완료되어 별도 신청 없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 ② **경미한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25년도 대비 경미한 정보변동(주소 등)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전환이 되었으나 재신청을 통한 정보변경 후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 불가

2) **자동전환 제외자**

기존 수급자 중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을 검토시점에 충족하였으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변동이 있거나 별도의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한 자로서 신규신청 후 에너지바우처 사용 여부 결정(사용 가능성 높음)

3) **대상제외자**

기존 수급자 중 세대원 전원 기초생활수급자격 중지 등 검토시점에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이 없는 자로서 신규 신청 후 에너지바우처 사용 여부 결정(사용 가능성 낮음)

2 자동전환자

☑ 기존 수급자가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26년도 사업에 자동 전환됨

- 한국에너지공단이 행복이음 시스템 내 신청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내 수급자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26년도 수급 대상임을 확인 후('26년 5월 기준) 자동전환 추진

1) 수급자에게 자동전환 반영 결과 및 '26년도 사업내용 안내 필요

2) 정보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 특히, 세대원이 감소하거나 동절기 이용권 방식을 실물·가상카드(에너지바우처)에서 미신청(하절기바우처만 신청(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등))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26. 6. 26.까지 재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 자동전환자 중 주소 등 경미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 불가

3 자동전환 제외자

☑ 기존 수급자 중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변동이 있거나 별도의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한 자로서 신규신청 필요

4 대상제외자

☑ 전체 세대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되거나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전체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 영유아의 연령초과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대상자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5 '26년도 신규대상자 발굴 및 신청

☑ 관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이 있는지 복지 담당 부서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발굴 및 신규 신청

☑ 신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신청

☑ 관내 전입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복지할인 등을 재신청하는 대상자 중에 에너지바우처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신청

☑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확인

-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수급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문자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복지부)
- **행복이음 시스템 메뉴 위치**

  복지대상자관리 → 맞춤형급여안내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조회 → 검색항목 선택 후 조회(안내사업 "생활"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 **업무 화면 개요**

검색조건 입력을 통해 안내사업을 “생활”로 선택한 뒤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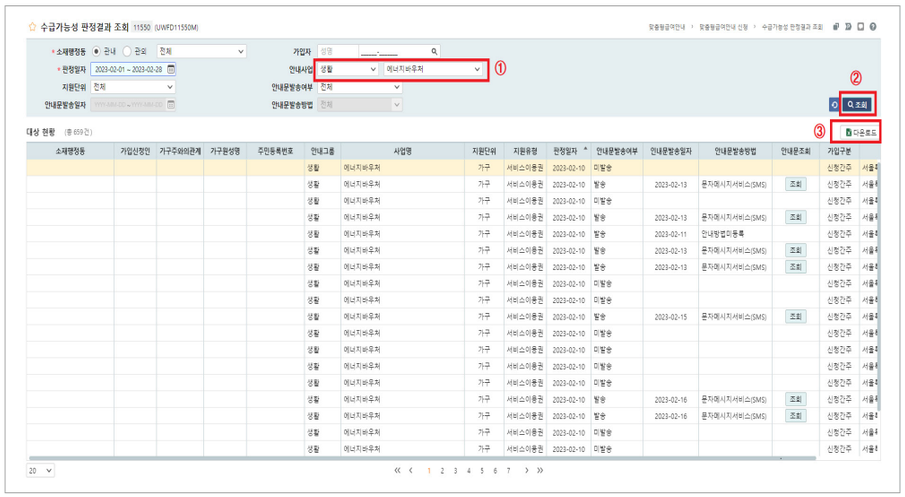

6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은 관내 자동전환자가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과 재신청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4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 신청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여, 신청 편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에너지바우처 동시신청 업무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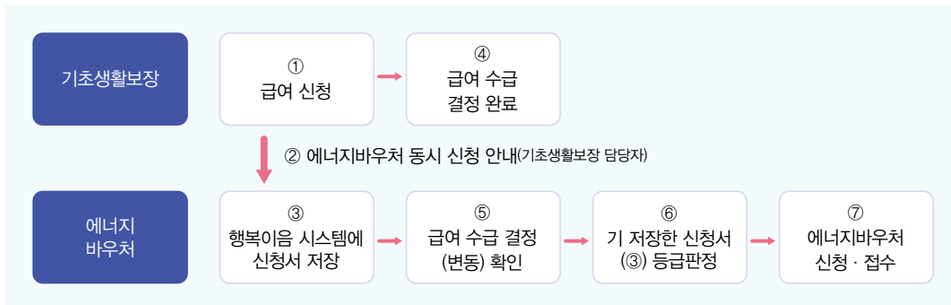

*“③ 행복이음에 신청서 저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26. 6. 15.~’26. 12. 31.)에만 가능

1 에너지바우처 동시(통합)신청 역할 분담

☑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을 받은 뒤, 유의사항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 방문 안내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은 ❶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행복이음 시스템에 저장하고, ❷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결정을 확인하여, ❸저장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의 등급판정 후 신청·접수

* ❷ 행복이음 시스템 '바우처 변동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기능 상세설명 → 269p)
  ❸ 저장한 신청서의 '등급판정' 후 신청·접수 필요(기능 상세설명 → 218p)

| 행복이음 시스템 신청서 처리 방법 신구대비 |

구분	동시신청 도입 전	동시신청 도입 후
급여 신청자 (수급 결정 전)	신청 불가	신청서 저장 → 급여 수급 결정 확인 → 신청서 자격재조회 → 신청·접수
급여 수급자 (수급 결정 후)	신청서 저장 → 신청·접수	좌동

Ⅲ

바우처 발급과 사용

❶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❷ 에너지바우처 발급
❸ 에너지바우처 사용
❹ 에너지공급자 역할

1 에너지바우처 카드종류

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국가바우처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

  * '15. 5월에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舊고운맘카드)'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舊맘편한카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에너지바우처 포함 사회서비스 21종 바우처, 보육료·유아학비 2종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

국민행복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지역난방 결제 불가능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가 필요

  *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인증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만 발급 가능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은행명
신한카드	신한은행
현대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 26년 7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예정(일부 변경가능)

체크·신용카드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 문의

* 단, 전화로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 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각 은행 (카드사)별 콜센터 *일반이용문의 (1899-4651)
	전화 발급	NH농협, iM뱅크(구.대구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단, iM뱅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일부 은행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가능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롯데카드	방문 /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1899-4282
삼성카드	방문 /전화	백화점(신세계)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1566-3336
KB 국민카드	방문 /전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지역단, KB Pay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북은행, 전북은행 쏙뱅크앱,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	1599-7900
신한카드	방문 /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SOL Pay 앱, 신한 SOL Bank 앱, 신청전용ARS(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1544-8868
현대카드	전화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앱	1577-6000

전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

* 계좌압류, 신용불량, 고령, 장애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 전용카드 발급처 |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롯데백화점카드센터
삼성카드	삼성 국민행복카드 전용 상담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전북은행 영업점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2 가상카드(요금차감)

-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자동으로 차감을 원하는 수급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 가상카드는 하절기의 경우 에너지원을 전기만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자 고객번호가 기재된 발행 고지서(영수증)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동절기 가상카드 신청자는 별도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요금차감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담당공무원 로그인 필요), 해당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AI챗봇,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에너지바우처 발급

1 발급 전 정보전송

- 결정, 통지된 대상자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을 통해 국민행복카드사업자(카드사), 에너지공급자에게 제공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결정, 통지 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에게 국가바우처(바우처 지원액(포인트)) 생성을 위한 정보 제공

가상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에너지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고객번호, 주소, 지원금액 등)를 에너지공급자에 제공

2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신용·체크·전용카드로 발급)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카드 유효기간 확인필요(카드앞면 참고))
- 발급처 직접 방문시 카드종류와 발급처의 카드보유 상황에 따라 방문 당일 카드 발급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해 카드배송
- 실물카드는 발급 후 사용 등록 필요. 카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 연락 후 카드 등록 필요

가상카드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해당 에너지원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내역 확인

3 발급관련 유의사항

카드 발급 유의

담당공무원은 신청, 접수시 가상카드 대상자가 실물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재발급

분실, 손상될 경우 발급처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실물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을 안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유효기간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27. 5. 31.) 이후에는 '26년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카드는 카드 유효기간 내(카드앞면 참고) 차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재사용 가능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

- 롯데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을 월 단위로 적용(예를 들어 12월 15일까지 유효기간이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內 타 바우처와의 이용 관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부적합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아도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內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만 중단되며 다른 국가바우처 서비스는 규정대로 사용 가능

- 신용, 체크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본인 비용 부담으로 계속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사용

1 전기(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가능)

실물카드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개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단, 구역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공급자)는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세대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단독주택(개별 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전기공급자가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

2 도시가스(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가능)

실물카드

가스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자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도시가스 공급자가 개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단,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 카드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붙임4 참고)
(특히, 전화결제는 일부 도시가스 회사만 가능)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세대에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되며, 단독주택(개별 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도시가스공급자가 발행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표기

3 지역난방(가상카드만 가능)

가상카드

수급세대에 청구되는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4 등유(실물카드만 가능)

카드결제 단말기(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 카드 사용 가능 단말기, 이하 같음)가 설치된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등유外 타 유류는 바우처 사용 불가)

*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등유 결제시 카드결제단말기나 포스 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 유종코드(유종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5 LPG(실물카드만 가능)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LPG판매소(카드사에 LPG 업종으로 가맹점 등록된 판매소에서만 가능)에서 LPG를 구입

* LPG판매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 판매소↔카드사간 가맹점 재신고 절차 진행 필요
*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 차량용 LPG 충전소는 결제 불가

6 연탄(실물카드만 가능)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정 및 가맹점 기등록 1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연탄수송업자 및 연탄을 취급하는 기타 연료판매점 등은 카드사에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단, 카드사별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결제 불가

✓ 카드사용 공통 유의사항

1)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방식)

2) 실물카드 경우, 국민행복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등록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

3) 에너지원을 구입·결제(실물카드)하거나 요금차감(가상카드)을 받는 경우,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됨(단, 바우처 금액 소진 시 본인 계좌에서 인출됨)

4) 기존에 요금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실물카드 대상자의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자동이체로 요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실물카드로 결제 필요

5)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6)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7) 요금에 대한 부분결제는 공급자마다 가부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공급자 고객센터 등에 문의 후 결제

7 공통

전기장판, 냉난방기 고장 등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공단,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협조 필요.

4 에너지공급자 역할

1 에너지공급자 협력체계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에서 에너지원별 공급자 총괄 운영·관리, 사후관리 및 홍보·교육 협조 등 전담기관과 에너지공급자 간의 채널 역할 수행

☑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공급, 공급망 내 전달체계 운영·관리(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교육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 및 사후관리 협조 등

| 에너지공급자 협력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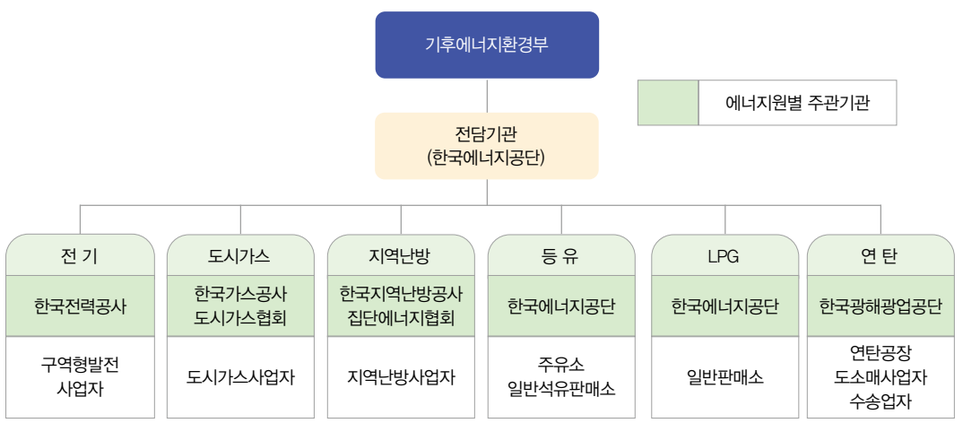

2 에너지공급자 역할

☑ **실물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 (「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
- 에너지공급자는 실물카드를 제시한 수급자에게 카드 결제의 거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요구, 가맹점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에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음
- 에너지공급자는 판매를 위장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게 현금 대출,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의 에너지 구매 유도 행위 등은 금지
-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 발행 금지 등

☑ **가상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 (「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

  * (공급자 역할) 가상카드 수급자 정보관리 및 바우처 지원금액 차감 / 전출시 가상카드 요금차감 불가 조치 / 가상카드 사용 관련 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의 정보연계 및 관리 / 기타 가상카드 사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

- 공급자명(코드), 고객번호 오류 등으로 차감이 잘못 이뤄진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과·오 청구를 통한 요금차감 정정 실시(「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3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

☑ 에너지공급자가 제공한 가상카드 수급자별 에너지요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고 수급자별 차감내역을 해당 에너지공급자에게 송부

* 가상카드 수급자 전출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에너지공급자에게 전출사실을 즉시 알리고, 바우처 사용중지를 요청. 단, 아파트관리비 정산 시 바우처 금액 사용은 불가

☑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청 및 사용안내를 적극 협조

| 아파트부문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에너지공급자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	① 대상자 정보 및 바우처 금액 송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요금차감 및 고지서 발행 →	수급자(개별세대) (○○○동 ○○○호)
• 수급자 정보제공 • 에너지요금 정산	← ④ 차감내역 송부	• 수급자 정보 관리 • 요금차감 • 홍보·사용안내	← ③ 관리비 납부	• 에너지바우처 이용

* 기존 관리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전기요금할인(한전), 가스요금경감(가스사) 프로세스와 유사

*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정액할인이 아닌 세대별 사용요금에 따른 차감이 실시되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공급자와 세대별 요금정보를 교환하여 세대별 맞춤 차감 실시(한전·아파트관리소 협조)

Ⅳ

사후 관리

❶ 기관별 역할 분담

❷ 부정사용 모니터링

1 기관별 역할분담

1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 「에너지법」 제2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처리

  * 과태료 부과(「에너지법」 제2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질문 및 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진술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도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지방자치법」 제184조 준용)

2 시·군·구, 읍·면·동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사용 여부 확인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에너지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1항, 에너지공급자가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

3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은 시·군·구(읍·면·동)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정사용 점검·조사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 제공 등 업무 지원(전담기관 포함)
-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전기), 한국가스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집단에너지협회(지역난방), 한국광해광업공단(연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2 부정사용 모니터링

1 부정사용 모니터링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사용 모니터링에 필요한 바우처 이용 · 결제 정보 제공(국가바우처→에너지바우처 포털)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는 에너지공급자, 바우처 수급자 점검 실시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에너지바우처로 선결제 후 현금·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공급자 점검·조사 개요

- 에너지공급 거부사유 발생(민원접수) 및 시·군·구(읍·면·동)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결제'가 의심되는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점검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사용 등이 신고 된 공급자 점검

- 수급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2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수급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

3 환수 및 반납절차

- 부정사용 관련 사항 발견 시 조치 이전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필요

- **당해 연도 사업**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

구 분	주 체	내 용
조사 및 확인	시·군·구(읍·면·동)	✓ 이용권 환수필요사항 현장조사 및 확인서 작성
↓		
입금계좌 안내	시·군·구(읍·면·동)	✓ 대상자에게 입금계좌안내
↓		
환수	시·군·구(읍·면·동)	✓ 환수금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입금
↓		
중지	시·군·구(읍·면·동)	✓ 지자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에너지이용권 사용중지
↓		
통지	시·군·구(읍·면·동)	✓ 조치내용 대상자에게 통지
↓		
통보	시·군·구	✓ 광역시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에너지이용권 환수 결과 통보

V

예산집행 및 정산

❶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❷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❸ 이의신청 처리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1 위탁주체와 수행기관

위탁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위탁업무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는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관련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는 에너지바우처(주택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차감 등) 사업비는 별도 정산을 통해 관리

위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 예산 및 정산 부문 업무처리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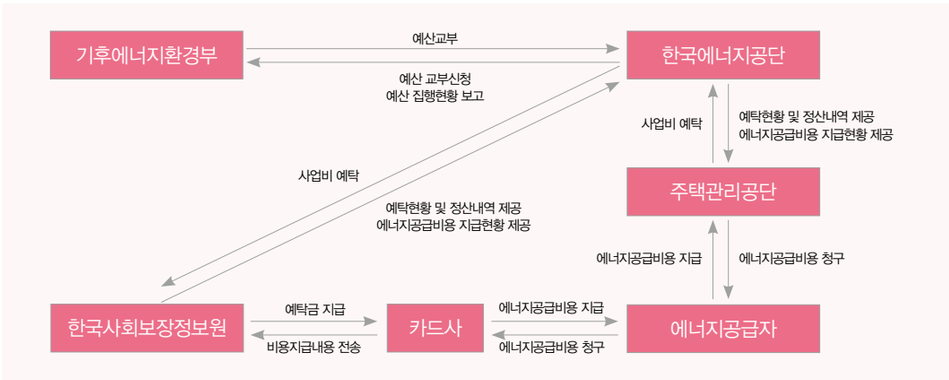

2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으로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 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사업비용을 정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처리
- 주택관리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 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공급자와 사업비용을 정산

3 예탁시기

- 대상자가 일괄(대량)구입 또는 분할 구입 등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비 전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에 예탁(사업시행(카드결제승인·요금차감) 이전에 예탁 실시)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1 바우처금액 청구

청구기관

에너지공급자

실물카드 금액 청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달된 바우처 사용금액 내역이 자동으로 카드사에 청구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에너지 사용금액 결제

가상카드 금액 청구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게 제공된 에너지 금액 내역을 근거로 국가바우처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카드사·주택관리공단 등에 바우처 사용금액 청구

청구기간

2026. 7. 1.~2027. 5. 31.까지 청구·지급

- **실물카드**

  2026. 10. 3.~2027. 5. 31.까지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승인된 비용에 대해 청구 가능

- **가상카드**

  2026. 7. 1.~2026. 9. 30.(하절기), 2026. 10. 1.~2027. 5. 31.(동절기)까지 기간 동안의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한 후 청구 가능

2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

지급기관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주택관리공단

지급방식

에너지공급자가 실물카드(카드단말기 결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결제가 발생하여 바우처 금액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에너지공급자에 입금

  * 주택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간 청구·지급은 기존 아파트관리비 방식에 준하여 실시

-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시, 국가바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집행하고, 지급내역을 국가바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으로 전송

  * 카드사 지급내역 및 예탁금 입출금 내역은 국가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주택관리공단은 자체 계좌(예탁금을 교부받은 계좌)에서 비용을 집행

3 비용의 정산

카드사와의 비용 정산 업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

* 카드사와 연계되지 않은 정산 업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종료 후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종 정산 실시

주택관리공단은 매월 에너지바우처 사용분에 대해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사업종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종 정산 실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주택관리공단은 사업 종료 후 예탁금 잔액 및 이자를 한국에너지공단에 환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경유)에 최종 정산내역 보고

* 단, 바우처 대상자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발생된 이자를 활용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청구한 바우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이의신청 처리

1 이의신청 처리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접수(읍·면·동)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읍·면·동, 시·군·구) → 이의신청 조치·통지(시·군·구)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이의신청 조치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이 처분(처리)되어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 사용중지 해제 등을 시행

- **사용기간 만료 후 처리**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이의신청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의신청 세대의 에너지비용 지출 사실을 증빙하고 지원금액을 계좌로 입금

  * 단, 당해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최종 정산처리된 이후에 이의신청 처분이 변경 결정된 경우, 차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에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

Ⅵ FAQ (자주 묻는 질문)

❶ 신규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❷ 재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❸ 수급자 신청·사용 관리 체크리스트
❹ 제도·지원기준 문의
❺ 신청 관련 문의
❻ 신청정보 변경 문의
❼ 사용 관련 문의
❽ 외국인 관련 문의
❾ 사전 예외지급 관련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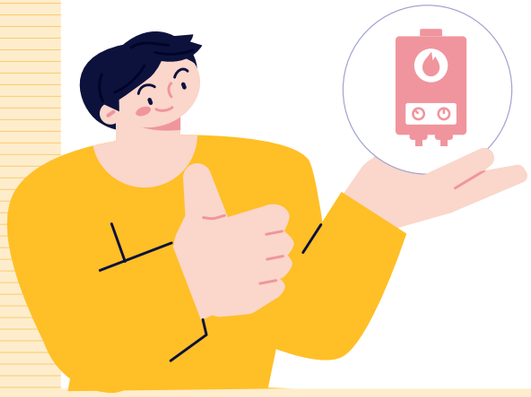

1 신규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1 행복이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❶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클릭

❷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서 신청할 대상자 선택

❸ **[서비스 찾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

2 [대상자], [신청자] 지정 및 건강보험료 데이터 조회

❶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만 지정, **[신청자]**는 세대원 중 누구나 실제 신청하는 자로 지정

※ 직권신청인 경우 대상자를 신청자로 지정

❷ **[건강보험료조회]** 버튼 클릭

※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되는 경우 **[건보료 수동 입력]** 체크〉[산정구분] "지역"선택〉건강보험료 항목에 "0"입력

3 예상결과는 참고용으로 [신청불가능]도 신청 가능

❶ 예상 결과는 참고용으로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가 [신청불가능]이어도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일괄신청] 클릭**하여 신청접수 가능

4 [대상세대] 자동선택 안 되는 경우 증빙서류 등록 필요

❶ 신청접수 시 **[대상세대]에서 자동선택이 안 되는 경우** 해당하는 [대상세대] 체크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화면 맨 하단의 **[구비서류]에 등록** 후 신청접수

* 증빙서류 : ❶ 임산부 :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분만 후인 경우 6개월 미만 확인 필요), ❷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사업안내서 부록에 나와있는 병명 코드나 기호가 기재된 진단서, 처방전 등(암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타 질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서류 필요), ❸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 등 법정 서식은 없으나, 지자체 담당자가 소년소녀가정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약식 확인서 등 ❹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2명 이상 포함한 가구) :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이 발송한 산정특례 등록완료 카카오톡, 그 외 문서(공문 등)를 통해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캡쳐 화면, 문서 등을 구비서류로 첨부 가능

5 [에너지원 고객번호] 동/호 필수 입력

❶ **[에너지원 고객번호]** 란의 **동/호 필수 입력**

※ 단, 주거형태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촌]** 선택 시 **[하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 입력 불가 및 [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 실물카드로 자동 체크**

6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이용권 선택

❶ 에너지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아파트/오피스텔'**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요금차감 등 사용 가능한 이용권 선택

7 고객번호 검증 등 관련 문의(※중요)

❶ 입력한 고객번호에 해당되는 주소가 없더라도 **발행 고지서 또는 에너지 공급자를 통해 확인한 고객번호가 맞으면 신청접수 가능**

❷ 정상적인 고객번호임에도 검증이 원활치 않은 경우, 거주지 주소와 고지서 상의 주소가 일치하면 **발행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를 우선**으로 하여 신청**(시스템상 고객번호 검증은 참고용)**

※ **잘못된 고객번호**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재신청을 통한 정보변경을 해야하며 정정하지 않을 시 요금차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요금차감 등 사용 가능한 이용권 선택

8 [저장] 후 [신청접수]까지 클릭해야 완료(※중요)

❶ 화면 맨 하단의 [저장] 클릭 후 오른쪽의 **[신청접수]까지 클릭해야 신청접수 완료**

9 신청접수 후 바우처 신청현황 확인(※중요)

❶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신청현황] 클릭

❷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

- 신청 : 읍면동에서 [저장] 클릭 후 신청상태(수정가능) ☞ 시·군·구로 미전송
- **접수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클릭 후 접수상태(수정불가능) ☞ 시·군·구로 전송**
- 판정 : 시군구에서 결정한 상태
- 응답대기 : 신청정보 송신(시군구) 후, 바우처 생성 대기 상태
- **완료 : 바우처 생성 및 모든 절차 완료 상태(통지서 출력가능)**
- 신청취소(읍면동·시군구 가능) : 시군구 결정처리 전 가능, 재등록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 (기존 신청서 수정 불가)

※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신청서의 상세보기 메뉴로 이동하며 [신청자]/[대상자]를 제외한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등 수정 가능(단, 접수 이후에는 수정 불가능)**

2 재신청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신청상태가 [중지]여야 재신청가능(※중요)

❶ 재신청 사유 : 정보수정(이용권, 주소, 고객번호 등) 또는 본인포기

❷ 중지방법 : ❶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대상자 관리]–[바우처 중지환급신청관리]에서 맨 아래 하단의 [중지환급신청] 클릭, ❷ **[바우처 중지환급신청등록] 화면**이 뜨면 검색할 수급자 입력 및 에너지바우처 선택, ❸ **하단의 [중지환급신청]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 (주의) 사망, 전입 중지처리(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이용권이 가상카드인 경우에만)는 시스템에서 자동중지처리 되므로 임의 중지 금지

※ 자동중지 반영시각은 사망신고후 익일 7시 35분, 전입신고후 익일 18시 5분이후이며 읍면동 담당자는 자동정지가 반영된 이후에 재신청 진행

2 세대원 감소 신청은 6월 26일까지 가능(※중요)

❶ 2026년 6월 26일까지 변경이 가능한 정보 : **❶세대원 수 감소, ❷동절기 이용권 방식 변경**(실물·가상카드(에너지바우처)→미신청

※ 단, '26. 6. 30.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용불가 상태인 수급자는 최초 사용재개 신청시까지 세대원 수 감소 신청 가능

❷ **그 외 변경 가능 정보**(이용권 방식(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에너지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수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가능**

3 행복이음 시스템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방법-① [세대원 변경]

❶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클릭

❷ [바우처신청] 화면의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❸ **[변경선택]**에서 **[세대원 변경]** 선택 후 [확인] 클릭

※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

❹ **[이력확인]** 버튼 클릭〉**[저장]**〉**[신청접수]**

4 행복이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방법-② [대상자 변경]

❶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변경할 수급자를 [대상자] 항목에 변경 체크**

※ 변경할 대상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함

※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소득기준과 상관 없이 변경 가능

※ 사망중지 변경 시 사망자가 아닌 변경할 대상자(세대원)으로 조회하여 신청

❷ [바우처신청] 화면의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❸ **[변경선택]** 버튼 클릭 후 **[대상자 변경]** 선택 후 **[확인]**

※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

❹ **[이력확인] 버튼 클릭 시 [이전 대상자] 정보 입력〉[저장]〉[신청접수]**

※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으로 선택된 가구원이 2명이상입니다."** 알림 메시지 발생한 경우, [소득/등급설정]의 [가구원 소득수준 산정]에서 세대원 중 본인 2개로 체크되어 다른 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변경 필요

5 행복이음 시스템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방법-③ [기타]

❶ **[바우처]**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의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클릭

❷ [바우처신청] 화면의 [서비스정보] 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

❸ **[이력확인]** 버튼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 조회

❹ **[변경선택]** 버튼 클릭 후 **[정보변경구분선택]**에서 변경이 필요한 **항목 선택 후 [확인]**

3 수급자 신청·사용 관리 체크리스트

1 신청 관련사항

- ☑ 신청 자격 확인 :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신청화면에서 '신청불가능'으로 떠도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 시 '일괄 신청' 버튼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자격이 자동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필수
-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수에 맞게 신청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가상카드 신청 시 발행 고지서 상 고객번호 반드시 확인

  * 신청 오류가 가장 빈번한 건이며, 수급자가 아닌 민간세대에 적용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사자 간 직접 환수·환급 처리해야함)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미신청'으로 선택)
- ☑ 자동전환 시기에 중지되어 미신청된 대상자 확인(질환자 등 행복이음에서 자동 확인이 안되는 대상자 등)
- ☑ 외국인 세대원은 대상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필요
- ☑ 전화번호 입력시 지역번호 정확히 입력(자릿수 오입력시 전송 오류 발생)
- ☑ 가상카드 신청자 고객번호 확인 필수, 난방용이 아닌 취사용 에너지원을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인 경우 동, 호수 기입 필수

2 사용 관련사항

|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 내 확인 가능한 내용 |

- **(수급자현황)**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가능(신청정보, 사용현황 등)
- **(유형별 수급자현황)** 미사용 세대, 재신청 가능 세대(전출입, 사망 등) 확인 가능
- **(예외지급 관리)** 예외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 관리(신청접수, 신청 정보 확인) 가능
- **(동절기 미사용 사유 조사)** 동절기 미사용 사유조사 및 대상 확인 가능
- **(신청대상 확정 조사)** 신청 가능 대상 세대 확인 및 확정 및 제외 가능
- **(공지사항)** 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한 게시판
- **(Q&A)** 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한 게시판
- **(자료실)** 에너지바우처 업무에 필요한 사업안내서, 신청서식 및 홍보자료 등 다운로드 가능
- **(통계)**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대한 지자체별 통계자료 확인 가능
- **(회원관리)** 관할 행정구역 하위 지자체 담당 공무원 확인 및 가입 승인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결정(신청접수 완료)된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등 중간에 자격 상실되더라도, 최초 신청했던 자격이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까지 유지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사망, 전출입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중인 수급자 관리 : 업무포털 내 '에너지바우처 관리〉유형별 수급자 현황' 메뉴에서 '재신청 대상자' 확인 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재신청(수급자 사망 후 남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수급자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 전출입(가상카드 세대), 사망으로 자동중지가 되지 않은 경우, 행복이음 고객센터로 문의

☑ 예외지급 대상자 관리 : 예외지급 신청이 필요한 수급자들은 읍 · 면 · 동에서 명단을 관리하여 예외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

☑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 · 납부한 에너지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

* 단, 수급자 확정 이후 사용기간 내 청구된 에너지요금 고지서에 과거 미납금 또는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 납부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 또는 요금차감 적용이 가능하며,

** 당해년도 사업의 최종 정산 이후에 이의신청 처분이 변경 결정된 경우 차년도에 소급 적용 가능함.

☑ 전기(주택용, 일반용 저압, 심야전기), 도시가스(난방용, 취사용), 지역난방(난방용, 취사용)만 요금차감 가능

☑ 실물카드로 등유 구매 시 유종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로 배달비 포함(등유, LPG, 연탄)해 결제 가능

☑ 가상카드(요금차감) 사용기간 안내 : 사용기간에 사용한 난방비 요금차감이 아닌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됨을 안내

☑ 사업 종료기한 전까지 수급자 정보 변경신청(재신청) 시 행복이음 시스템 내 시군구 송수신까지 반드시 처리 완료 요망

* 행복이음 바우처 메뉴 내 [신청관리]–[바우처 신청현황] 내 신청상태 '완료' 여부 확인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결정된 수급자가 보유한 국민행복카드는 연탄과 지역난방 에너지원 사용 불가

☑ LPG 사용 시 주의사항 : 수급자는 LPG 구매 시 해당 판매점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 가능함. 차량용 또는 취사용 등 난방 외 용도로 결제한 금액은 지원 불가함.

3 기타 사항

☑ 업무포털 회원가입 방법 : 회원가입 후 승인요청서 작성 및 첨부하여 승인기관(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문 발송

※ 승인요청서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공문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사전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안내(에너지복지처–2805(2024. 10. 8.))" 참고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ID, PW 분실하셨을 경우, 업무포털 로그인 페이지에 있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활용

- 아이디 찾기는 그룹 구분, 이름, 이메일 입력 시 확인 가능
- 비밀번호 재설정은 그룹 구분, 아이디, 이름, 이메일 입력 시 입력한 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발송

  * 임시 비밀번호로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재설정 필요
-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사용 중 오류 발생 시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핫라인(1600–3192) 혹은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42~8, 0552~6)으로 연락하여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행복이음 시스템의 ID, PW는 행복이음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

4 제도·지원기준 문의

Q1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는 여름·겨울철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주(主) 냉·난방에너지를 의미하며, 해당 에너지로 연계 사용되는 온수, 취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음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6.6월 이후 연탄보일러 사용가구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취약계층*이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대체 연료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연탄쿠폰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에 해당

Q2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각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가 아래 지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입니다.

-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것이 확인된 대상자는 (연탄전환)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26.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수급자(세대)는 동절기 기간('26. 10. 1.~'27. 5. 31.)에 사용이 가능한 (연탄전환)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하절기 기간('26. 7. 1.~'26. 9. 30.)동안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연탄쿠폰)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신청한 경우 하절기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 전 연탄쿠폰 사용금액은 환수 조치 없음

Q3 에너지바우처에서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타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수준)만 대상이 됩니다. 즉, 타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세대 전체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세대의 소득을 뜻하며, 소득액과 재산액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에너지바우처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및 주거급여(중위소득48%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뜻함

Q4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과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암환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타 질환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 인정).

- 해당하는 상병코드는 사업안내서 붙임7(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범위) 및 업무포털〉게시판 현황〉공지사항〉"[질환자] 세대원 특성자격 질환자 인정 범위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환자 상병코드는 질병분류 정보센터(www.koicd.kr)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Q5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중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또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만약,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관련하여 위탁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보호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영유아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영유아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Q8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시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보장시설급여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 받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Q9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며 '26. 12.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하절기 지원금액으로 '26. 7. 1.부터 '26. 9.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연탄쿠폰 등

Q10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까지 신청 완료하였는데 변심하여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26. 6. 26.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을 기존의 "실물 · 가상카드" 방식에서 "동절기 미신청"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26. 6. 27.부터는 '26. 9. 30.까지 별도로 정해진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26. 10. 1.이후에는 바우처 사용을 중지 처리해야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동절기 바우처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중복으로 지원 불가)

※ (주의) 만약,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환수해야 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완료된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당해연도에 변경 불가능합니다.('27년에는 신청 가능)

Q11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서 양식에서 하절기 바우처 신청 및 동절기 바우처 미신청 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필요

Q1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할까요?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26년 6월 26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이 더 많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Q13 하절기는 에너지바우처로, 동절기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신청을 완료하였는데, 동절기도 에너지바우처로 신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신청한 경우,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로의 변경은 재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에 반드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Q14 에너지바우처에서 노인이나 영유아의 나이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른 '만 나이'로 주민등록상의 출생연월일 기준 노인은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입니다. 7세(2019년생)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취학의무 면제 · 유예 승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15 에너지바우처에서 장애인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은 신청시점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임산부는 신청 시점에 임신 사실이 확인(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확인서 등)되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16 에너지바우처에서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전체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가 다자녀 세대 대상이 되며,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Q17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수(동거인 포함)로 산정됩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별도세대(단독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세대원 수를 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25년도) 수급자가 세대원 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읍 · 면 · 동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세대원 감소의 경우 '26. 6. 15 ~ '26. 6. 26.까지 가능하며, '26. 6. 30.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불가 상태인 수급자는 최초 사용재개 신청 시까지 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증가는 '27. 5. 31.까지 재신청 가능).

Q18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연탄전환바우처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			

- 동절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한 경우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			

Q19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것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기간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11개월('26. 7월~'27. 5월)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총 금액이 40만 7천 5백원(2인 세대 기준)입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사용기간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8개월('26.10월~'27.5월)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총 금액은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합니다.

Q20 여름·겨울철 기간동안 총 40만 7천 5백원(2인 세대 기준)이면 에너지 비용으로써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써, 특히,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 지원대상과 정부 예산을 고려하여 2인 세대 기준으로 407,500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1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 명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더 받거나 여러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특성에 해당되는 세대원이 여러명이더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번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총 295,200원
  * 예2)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총 407,500원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총 532,700원
  *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 701,300원

5 신청 관련 문의

Q1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하절기, 동절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신청기간이 따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둘 다 포함하여 1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26. 7. 1.~'26. 9. 30.), 동절기 사용기간('26. 10. 1.~'27. 5. 31.)

- 또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상카드로 전기요금 차감방식만 신청 가능하므로 전기 고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단,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기 고객번호를 입력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써 하절기, 동절기 신청기간이 따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지원금액은 다 같은가요?

- 신청 기간 내('26. 6. 15. ~'26. 12. 31.) 신청하시면, 세대원 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신청하셔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지원금액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사용기간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금액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이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몸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죠?

-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6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내려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자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나 가상카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관내 에너지공급자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 등록 가능

- 만약,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지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국민기초생활 및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영 · 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류, 임산부 확인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자녀 세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 아동, 다자녀 세대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7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죠?

-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8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명을 받아와야 하나요?

-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은 대리사실을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Q9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신분이 확인 가능한 경우)하거나, 법적보호자, 후견인이 대리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물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는 미성년자는 발급이 불가하며,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을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카드 발급이 가능한 다른 세대원이 없는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에너지바우처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10 신청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경우에는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135p 참고)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접수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신청인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11 에너지바우처 카드방식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만 신청하여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신용 · 체크카드 등)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동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만 가능합니다.

Q12 실물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건가요?

- 실물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카드사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신용등급 및 계좌유무에 따라 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체크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전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3 가상카드를 신청하고 싶은데, 요금고지서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를 통해 정확한 요금차감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차감받기 원하시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가 필요합니다.
- 다만, 가상카드 신청자가 요금고지서 증빙자료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내 에너지 공급자에 문의하여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14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거주지가 달라도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 만약 주소확인이 안되거나, 고지서 상의 주소지 표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에너지공급자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15 세입자인데, 요금고지서가 집주인 명의여도 상관 없나요?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입니다. 즉,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같다면 요금고지서상의 명의(계약자)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Q16 시스템 접수시 고객번호 검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행복이음 시스템內에 각 에너지공급자의 고객번호 DB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 및 누락으로, 정상적인 고객번호임에도 검증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거주지 주소와 고지서 상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를 가장 우선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시스템상의 고객번호 검증은 참고용입니다).

Q17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상카드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여도 가상카드(요금차감) 지원이 가능합니다.(전기, 도시가스)

  ※ (참고) 다만, 구분 계량이 불가하여 다른 세대에서 사용한 에너지비용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계량기는 여러 세대의 가상카드로 균등하게 차감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계량기는 한 세대의 가상카드로만 차감·지원 가능합니다.

Q18 그룹홈 등 한 거주지에 여러명의 수급자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여러명의 수급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각각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지원대상 조건이 된다면 별도 세대별로 에너지바우처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룹홈 거주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4인 이상 세대로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용 시설 그룹홈 거주자의 주민등록이 각각 되어 있을 경우 그룹홈 운영자가 한국전력에 '수가구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면 각각 전기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 전기요금고지서 두 개를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둘 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1세대당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위한 고객번호는 1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고지서 중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가상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두 개 모두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Q20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심야전기요금도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야전기보일러가 주 난방 에너지원이라면 심야전기 요금고지서로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업용·산업용·공업용 전기는 난방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해당 전기 요금 고지서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심야전기 고객번호는 일반전기 고객번호와 상이하므로 심야전기용 고객번호를 확인바랍니다.

Q21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고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거주하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고객번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별 고객번호는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고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으시면 더욱 처리가 빠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는 개별로 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의 경우, 별도 발급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지참하셔야 합니다.

Q22 도시가스(전기) 연체(미납)금으로 공급이 차단된 경우에도 가상 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체(미납)금으로 인해 도시가스 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연체(미납)금 정산 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가능한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 신청하시거나, 실물카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3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는 주 난방 에너지원을 차감하길 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에너지원 가상카드 발급을 위해 다른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시거나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임을 확실히 인지하고도 차감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사용 도시가스 고객번호로 가상카드(요금차감) 지원이 가능합니다.

Q24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시스템상 '완료' 처리), 언제든지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한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 전화·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선택하신 에너지 공급자의 청구일정에 따라 자동 차감됩니다.

  * 결정·통지(시스템상 '완료'처리) 이전에도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결정·통지 이후에 결제하셔야 정상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25 에너지바우처 결정 통지서를 수급 세대에 보내야 하나요?

- 시 · 군 · 구는 읍 · 면 · 동으로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Q26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결정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시·군·구 담당자는 에너지바우처 결정 및 송수신 완료 후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에너지바우처 결정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및 우편 발송을 위해선 지자체 해당부서가 사전에 발송 부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송부서 등록방법은 행복이음 시스템 복지광장〉공지사항〉"e-그린우편 이용신청 및 발송관련 FAQ"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7 쪽방촌, 고시원, 원룸 등 월세에 난방비(관리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어떤 카드를 신청해야 하나요?

- 개별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는 쪽방촌, 고시원, 원룸 등 월세에 전기 및 난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전기요금고지서 및 고객번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되는 1주택 다세대의 경우에는 하절기는 요금미차감 선택, 동절기는 실물카드를 선택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수급자*는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에 에너지비용을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자에 한함

Q28 경로당, 목욕탕, 사찰 등으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카드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와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Q29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정보변동이 없어도 내년 신규신청을 해야하나요?

- 행복이음 시스템 내에서 질환자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되는 경우, 전출입 및 세대원수 변동 등 기타 정보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전환됩니다.
- 단, 시스템에서 질환자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전환 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암환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타 질환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 인정)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스템 상에서 확인 불가능하므로 매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Q30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녀의 학업, 취업 또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부모와 자녀가 모두 받고 있다면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31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차년도 사업에 자동전환이 되나요?

- 차년도 자동전환 시, 주민등록번호의 변동은 중요정보 변동에 해당되어 자동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Q3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올해 언제부터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 (추가서류) 연탄전환 방식별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연탄전환 방식별 추가 서류

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사업('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연탄전환)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

② **지자체 지원사업('26년)**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등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지자체 내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증빙서류 구비불요)

③ **본인부담 등 기타 전환사실**

보일러 설치 · 시공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①번과 ②번의 경우,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 6월 이후인 재단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서(증빙)를 제출해야함

** ③번의 경우, '25년도 이후 연탄쿠폰 지원사업 수급자이면서, 보일러 설치 · 시공 완료일이 '26. 6월 이후인 보일러 설치 · 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6 신청정보 변경 문의

1 전출입 관련 정보변경

Q1 신청 이후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전출입이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우선, 접수된 신청정보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정 이전에 전출입이 발생하신 경우 전출지 시·군·구에서 신청취소 후에 새로운 전입지에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이사하는 경우 사용 중지되며, 재신청 불가

Q2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 하나요?

- 동절기 사용 기간동안 실물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읍·면·동에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 하절기 사용기간 중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기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중지되어 있을 경우, 차년도 사업에 자동전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Q3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 할까요?

- 가상카드 수급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수급자는 전입지 읍·면·동을 통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고객번호가 동일하여도 재신청 필요)

  ※ 전출입 발생 후 익일 18시 5분에 자동중지되며, 자동중지 처리 후 재신청 해야함(자동중지 전 수기로 중지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류 발생시 지자체 핫라인(1600-3192)로 연락하여 데이터 보정 요청)

- 가상카드 재신청의 경우에는, 전입지의 고객번호를 증빙할 요금고지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관내 에너지공급자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출입으로 인한 재신청시에는 수급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수급자가 아닌 세대주가 전출했을 때도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 관련 2인 이상 세대에서 수급자만 전출했을 경우 잔여 세대원이 재신청 할 수 있나요?

- 2인 이상 세대에서 수급자만 전출했을 경우 ① 수급자가 전입지에서 재신청(잔여 세대원은 신청 불가) 또는 ② 기초생활수급자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하여 2인으로 재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잔여 세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전출한 대상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2인 이상 세대에서 수급자만 전출했다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원의 수급자 변경 재신청은 세대원의 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①잔여 세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 바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②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단(상담센터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여 중지 코드를 사망 코드로 변경한 이후 수급자 변경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세대에서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 잔여 세대원이 전출한 경우 수급자 변경 재신청은 세대원이 새로 전입한 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Q5 에너지바우처 '25년도 수급자는 '26년도에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출입한 경우는 어떡하죠?

- 전년도 신청 정보와 비교하여 전출입, 사망 등의 정보 변동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가상카드(요금차감) 사용자가 2025년도 사용기간 중 전출입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었고, 재신청을 하지 않아 중지 상태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차년도에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차년도 신청기간 중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 외(동절기 실물카드 수급자, 2025년도 사업 종료 후 주소가 변동된 자 등)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자동전환이 되나 주소 및 고객번호 변경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Q6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를 사용하다가 전출입으로 인해 가상카드로 변경 발급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가상카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정보수정'을 위한 재신청을 진행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지' 신청을 우선 진행한 후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Q7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사를 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및 수급 결정 당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 사용 기간 중 자격이 변동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한해 계속 지원합니다.
- 다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수급자 사망 관련 정보변경

Q8 실물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카드명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실물카드는 수급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카드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사망 사실이 행복이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 중지 처리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다른 세대원(수급자 사망 시에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을 수급자로 지정 가능)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한 후, 재신청한 세대원이 카드 발급처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시어 국민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9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했습니다. 요금차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정보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수급자 사망 시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을 대상자로 지정 가능)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10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2인 이상 세대) 세대원 감소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재신청 해야하나요?

- 2인 이상 세대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수급자를 변경*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감소 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엔 세대원 수를 감소하여 재신청하기 바랍니다.
- 세대원 감소 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수급자 변경 후 당해연도에 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 감소는 불가합니다.

* 수급자 사망의 경우에 한해, 변경하려는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자로 변경 가능

* 수급자 변경 및 세대원 수 변경 방법 : ①수급자 변경 → ②세대원 수 변경(총 두 번의 중지 및 재신청이 필요하며 동시 진행 불가)

Q11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이상 세대에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재신청을 통해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세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되며, 재신청을 통한 사용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3 세대원 수 변동 관련 정보변경

Q12 이미 1인 세대로 신청했는데, 세대원이 늘어나서 2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신청 이후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바우처 사용기간('27. 5. 31.까지) 내 세대원 증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감소는 정해진 기간('26. 6. 15.~'26. 6. 26.)내에만 가능합니다.

Q13 각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A, B세대에서 A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B세대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신청 기간에 따라 재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① (세대원 감소 재신청 기간 내) A세대는 세대원 수를 감소하여 재신청하고, B세대는 세대원 수 증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A세대 모두가 B세대로 전입할 경우 A세대의 신청 정보를 삭제한 후 B세대의 세대원 수 증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삭제는 ☎ 1600-3192로 문의)

② (세대원 감소 재신청 기간 종료 후) A세대 수급자의 주소를 B세대 주소로 변경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B세대의 세대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B세대는 세대원 수 증가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A세대 수급자는 B세대 주소지에서 당초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Q14 2인 세대로 신청했는데, 세대 분리하여 각각 1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각각 1인 세대 지원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세대원 감소 변경 기간 내('26. 6. 15.~'26. 6. 26.)에 수급자 2인이 세대분리하여 각각 1인 세대로 바우처 사용을 원하는 경우, 2인 세대를 1인 세대로 세대원 감소한 이후에 각각 1인 세대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26.6.30일 기준으로 중지 중인 세대의 최초 재신청에 한하여 변경 기간에 관계없이 1인 세대로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세대원 감소 변경 기간 외에는 각각 1인 세대로 분리하여 신규신청이 불가하여, 기존대로 한세대에서만 2인 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 정보변경

Q15 읍·면·동에서 접수를 완료했는데, 수급자가 정보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만약 시·군·구에서 결정 처리 후에 바우처 송수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시·군·구에 '결정 취소' 후, '접수반려'를 요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정보변경 후 다시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군·구에서 바우처 송수신이 완료 되었다면, 신청 완료 후 중지 및 재신청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Q16 실물(가상)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가상(실물)카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실물(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가상(실물)카드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정보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 당일 실물카드 사용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 1~2일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17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용기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용기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연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및 수급 결정 당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 사용 기간 중 자격이 변동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한해 계속 지원합니다.
- 다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Q18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중이나, 사용 중지처리 하고, 에너지바우처로 변경 가능한가요?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간 변경은 '26년 6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자격요건 충족 시, '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19 읍·면·동 분동 시에도 주소 변동으로 보아 자동중지가 되나요?

- 수급자의 주민등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동중지 되지 않습니다.

7 사용 관련 문의

1 실물카드 및 가상카드(요금차감) 공통

Q1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이며 동절기는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하절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동절기)까지 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발행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차감이 이뤄지며,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2026년 10월 3일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카드방식별로 사용기간이 지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으로 인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지원받는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은 소멸)

Q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 내에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발행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Q3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결정처리와 송수신 처리를 완료한 당일 저녁 8시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따라서,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단, 카드수령 방식에 따라,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고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 이후부터 에너지 공급자별 발행 고지서에 반영되어 요금차감이 적용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물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업무포털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의 경우 시간 단위로 결제 내역이 업무포털에 반영되므로 결제 이후 최소 한 시간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업무포털을 통해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공급자에서 청구요청을 한 2일 후 차감 내역이 업무포털에 반영됩니다.

- 또한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의 『잔액조회』 기능(수급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필요)과 에너지바우처 챗봇(수급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필요)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봇 QR코드〉

Q5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2027년 5월 31일 이후 모두 소멸되어 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6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한 건가요?

- 일반 가정에서는 조명 등의 전기사용량과 냉·난방용 전기사용량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합니다.

Q7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목재펠릿을 구입 가능한가요?

- 현재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연탄에 한해 결제 가능하며, 목재펠릿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간주하여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절기 사용기간('26. 10. 1.~'27. 5. 31.) 내에 구매하신 영수증으로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전기요금 가상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도중에 실물카드 발급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에서 실물카드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당일 실물카드 사용 시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 당일 1~2일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카드(요금차감)

Q9 가상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가상카드는 신청한 에너지원의 요금이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등이 차감됩니다.
- 수급자는 익월(또는 익익월) 발행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가상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도 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되나요? 어떻게 카드발급이 된 것을 확인하죠?

- 가상카드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실물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고지서상의 차감내역 또는 해당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센터, 국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상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1 도시가스(전기) 요금 연체금액이 있는데, 가상카드를 신청하면 연체금(체납금)부터 결제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전의 연체금은 정산되지 않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하절기 : '26. 7. 1.~'26. 9. 30. / 동절기 : '26. 10. 1.~'27. 5. 31.) 내의 발행 고지서에 한해서만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Q12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역난방요금 중에 급탕비와 난방비 둘 다 차감되는 건가요?

- 아파트관리비에서의 지역난방요금은 난방비, 급탕비 순으로 차감되며, 둘 다 차감도 가능합니다.

Q13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난방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로 사용 가능한가요?

- 기름(벙커c유, 경유 등)보일러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로 가상카드를 신청하거나, 실물카드로 발급 후 추후에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동절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가능하며, 기름 연료 등은 가상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Q14 7월부터 사용가능한데, 6월분이 청구된 전기요금은 결제가 가능한가요?

-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하절기)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내에 청구, 발행된 발행 고지서의 요금에서 차감되므로, 수급자 신청 및 확정이 '26. 7월 이전에 되었을 경우, 6월에 사용한 요금이 7월에 청구될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단, 각 공급자별로 검침일, 청구일 등이 상이하여, 6월에 신청하셨더라도 7월 고지서부터 차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차감일정은 각 공급자 문의 필요)

Q15 가상카드 신청했는데, 해당 에너지요금이 전혀 차감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실제 사용한 에너지 요금이 매우 적은 경우, 다른 복지할인(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혜택으로 인해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에너지바우처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서는 적게 사용하는 수급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가상카드 신청 정보(공급자명, 고객번호 등)가 잘못된 경우 차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 고지서 내 고객번호와 행복e음상 고객번호의 일치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기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한국전력 지사 내 요금관리부의 고압(공동주택) 또는 저압(일반주택) 전기요금 업무 담당자*를 통해 고객번호, 주소, 요금 미차감 사유 등 상세 확인 가능합니다.

  * '한전ON' 홈페이지>위치찾기>전국사업소>관할지사를 통해 확인 가능

Q16 가상카드 신청했는데, 세대당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 뿐만 아니라 공동요금도 차감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만 차감됩니다. 공동요금은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차감 되지 않습니다.

Q17 1주택 다세대 등 한 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세대가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나요?

-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따로 설치된 경우엔 요금차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계량기(1개의 고객번호 및 고지서)를 쓰는 다세대인 경우는 전기에 한하여 복수세대가 요금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은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 세대만 요금차감 신청가능)
- (예시) A, B, C 3개의 세대가 각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A는 도시가스(또는 지역난방)로 신청, B와 C세대는 전기로 요금차감 신청 가능

3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Q18 실물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실물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시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등유 결제시 카드결제 단말기나 포스 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LPG의 경우, 난방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구매 전 해당 판매점의 가맹점 해당 여부, 난방용으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19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작성한 수급자 명의의 카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명의의 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실물카드의 경우, 발급을 원하시는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수급자의 여건으로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대신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더라도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0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분실·손상 등의 사유로 실물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금융기관 및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21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 기존 국민행복카드의 카드 유효기간이 유효하다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 외에 별도의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 보통 국민행복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최초 카드 발급 후 5년이 지난 경우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 확인 필요

Q22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 은행발급 카드(BC계열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롯데·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연계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시어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 연계 가능 은행|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신한은행
현대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 26년 7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예정

Q23 거동이 불편하여 카드 결제를 하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나 카드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상카드(요금차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카드사용이 어렵다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해당 에너지공급자 고객센터로 전화(ARS)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전화결제 : 국번 없이 123 (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가능하며 구역전기사업자(한전을 제외한 전기회사)는 실물카드 사용 불가)

  * 도시가스요금 전화결제 :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이 상이하며, 일부 회사만 ARS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

Q24 요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가면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국민행복카드로는 전기요금 등을 은행 창구나 공과급 수납기를 통해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에너지공급자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결제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ARS, 온라인, 영업소 방문 등을 통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전화결제 : 국번 없이 123(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가능하며 구역전기사업자(한전을 제외한 전기회사)는 실물카드 사용 불가)

  * 한전의 경우 영업소 방문 결제가 불가하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자마다 결제방식이 다르므로 각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결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5 실물카드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중복해서 결제할 수 있나요?

-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결제 횟수 등에 관계없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자유롭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26 실물카드로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도 결제가 가능 한가요?

-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의 5가지 에너지원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물카드는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로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감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주 난방에너지원을 다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7 실물카드로 전기, 도시가스의 부분 결제가 가능한가요?

- 전기는 공급자가 한전인 경우에만 실물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가능) 전기는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공급자)의 경우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합니다.(실물카드 결제 불가)

- 도시가스는 공급자가 발행 고지서를 개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자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 회사별로 부분결제에 대한 방침과 결제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Q28 집을 비워 카드를 제때 못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 카드는 개별로 거주지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회까지 다시 배송이 가능하며, 끝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각 은행, 카드사별 반송센터에서 카드를 관리하오니 각 은행,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지 않으니 유의)

Q29 카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최초 신청·접수 이후 카드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본인 및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명의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물카드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Q30 개인 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하나요?

- 자동이체는 유지하시되, 자동결제일 이전에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 하시면 됩니다.(자동결제일은 해당 에너지공급자에 문의)

  * 참고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경우)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시면 편리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결제일을 감안한 카드결제가 불편하신 경우는 가상카드를 신청하시어 요금을 차감받으시면 됩니다.(요금 차감은 자동이체와 관계없이 요금이 먼저 차감되고 자동 결제됩니다.)

Q31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외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냉 · 난방 에너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셔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2 농협의 농축협 직영 매장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나요?

- 농축협 직영 매장은 가맹점 등록이 농산품, 농자재, 공산품 및 유류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등록이 유류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결제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구매가 불가능하니 결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Q33 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 구매시 배달비도 결제 가능한가요?

-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합니다. 배달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문의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Q34 실물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물카드로 결제가 안되는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원인	해결 방법
유종코드를 '등유'로 선택하지 않음	결제 시 포스기에서 유종코드를 '등유'로 선택 필요
카드 사용등록을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미사용한 경우(거래정지등)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사용 등록 등 필요
지정된 업종에서 결제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	판매소가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이면서 업종이 유류, 주유소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결제 가능 → 판매소가 카드사에 연락하여 가맹점 등록 또는 업종 변경 필요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차량용 LPG로 결제 시도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용 LPG에 한하여 결제 가능하므로, 차량용 LPG가 아닌 난방용 LPG로 구매 · 결제하여야 합니다.

Q35 실물카드로 결제 했는데,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아닌 판매소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계좌에서 사용금액이 인출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①해당 판매소에서 결제 금액 환불 후(결제 취소),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문의)에서 카드 재사용, ②에너지바우처가 지원하는 에너지원의 난방에너지를 판매하는 판매소라면, 판매소는 카드사(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추후 환불 후 재결제 ③만약 난방에너지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①,②번이 어렵다면 영수증을 보관 후 향후 예외지급(환급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6 실물카드로 등유를 구입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로 구입 가능한 유종은 등유입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다른 유종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로 등유 결제시 카드결제단말기나 포스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여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정상 결제됩니다. 유종코드(유종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 시 결제 오류가 뜬다거나 본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Q37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이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사용기간이 종료 된 이후 동절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동절기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만 사용가능합니다.

8 외국인 관련 문의

Q1 외국인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사람은 세대원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은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와 동일 등본상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2명 이상 포함)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관련 내용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을 받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되지 않는 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일반 외국인도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Q3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시 외국인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나요?

-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으므로, [서비스 찾기]를 통해 외국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대상세대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세대의 세대원에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수 변경을 통해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사전 예외지급 관련 문의

Q1 사전 예외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유형①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자는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유형①

(유형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

①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 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는 자

* 고시원, 쪽방, 여인숙, 원룸 등

②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종교시설, 공장, 상가 등

③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벙커C유, 경유,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Q2 사전 예외지급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전 예외지급 대상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추가 서류와 함께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외지급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신청 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며, 수급자 본인명의 일반통장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및 세대원, 지자체 계좌 등 타인 계좌로 신청 불가
- 추가 첨부서류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환경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입실확인서(자체양식), 실거주확인서(별지 4호의2 서식)

Q3 사전 예외지급의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사전 예외지급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사전 예외지급은 신청완료 후 언제 입금되나요?

- 사전 예외지급은 2026년 10월 신청분까지, 11월~12월 중 순차적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 2026년 11월 이후 신청 건은 사후 예외지급으로 처리되며, 2027년 6월 중 순차적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Q5 사전 예외지급을 지급기간 이후에 신청했습니다. 사후 예외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사전 예외지급을 지급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 수급자가 별도로 사후 예외지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신청정보가 사후 예외지급으로 반영됩니다.

Q6 사전 예외지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사전 예외지급은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으로 지급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50% 이상 사용한 세대의 평균사용액

Q7 사전 예외지급액 수령 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전 예외지급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당해연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남은 잔액 사용이 불가합니다.

Q8 타인 계좌로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전 예외지급은 수급자 본인 일반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지자체 계좌 등 타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9 수급자가 압류방지계좌밖에 없으면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수급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방지 통장밖에 없는 경우 사전 예외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경우 생계비 계좌로는 사전 예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계좌 안내

예외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국 금융기관에서 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를 1인당 1계좌 개설 · 발급받아 사전 예외지급 신청 가능

Q10 사전 예외지급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사전 예외지급은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신청하면 다음연도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수급자가 전출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수급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입한 경우 사전 예외지급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가 사전 예외지급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VII

부록

붙임 1. 공통 서식

붙임 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붙임 3.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자명 및 공급자 코드

붙임 4. 에너지 공급자별 카드 납부 방식 / 고객번호 확인 방법

붙임 5. 에너지바우처 관련 법령단위 비교표 (법-시행령-시행규칙)

붙임 6.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붙임 7.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범위

붙임 8.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 (신청·접수~결정·통지)

붙임 9.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가이드

붙임 1 공통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위임장
공통서식 제3호	에너지이용권 지급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제3호의2	에너지이용권 부적합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제3호의3	에너지이용권 사용중지 통지서
공통서식 제4호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4호	실거주 확인서
공통서식 제5호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00.>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재신청서 [ ]

※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ㅇ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이용권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이용권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대상세대	[ ] 노인(65세 이상) [ ] 장애인 [ ] 영유아(7세 이하, [ ] 미취학) [ ] 임산부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 다자녀			
세대원수	[ ] 1명 [ ] 2명 [ ] 3명 [ ] 4명 이상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주거형태	[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하절기	[ ] 가상카드 (요금차감)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 요금미차감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 1)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에너지원(택 1)	[ ] 전기	❍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 도시가스	❍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동, 호)	
		[ ] 지역난방	❍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동, 호)	
	[ ] 미신청(하절기바우처만 신청(연탄쿠폰, 연탄전환 등))			
예외지급	사전지급	[ ] 신청(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 대상(고시원, 쪽방 등)) [ ] 미신청(해당없음)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확인	※위 계좌가 수급자 본인 계좌이며, 압류방지 계좌가 아님을 확인함 [ ]	
	안내사항	※ 해당 지급액은 본인 거주지의 에너지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함을 확인함 [ ]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당해연도 연탄보일러를 타연료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대상세대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노인(65세 이상)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전환형태	교체방식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지자체 지원사업 [ ] 기타( )
	교체유형	[ ] 등유보일러 [ ] LPG보일러 [ ] 도시가스보일러 [ ] 기타( )
이용권방식		[ ] 실물카드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 ]신청, [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영유아가 7세인 경우 :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연탄전환의 경우: (비연탄)보일러 설치 · 시공확인서 8. 예외지급 사전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_서류,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 9.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4.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영유아가 미취학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6.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7. (비연탄)보일러 설치 · 시공확인서(연탄전환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8. 예외지급 사전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외지급 사전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9.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을 신청(예정)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6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식 제2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6.29.>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3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00.00.>

에너지이용권(지급 결정) 통지서

[ ] 하·동절기 [ ] 하절기 [ ] 연탄전환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ㆍ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성명	구 분	이용권 금액	카드 종류 (실물/가상)	가상카드 에너지원	이용권 사용기간
	하절기				
	동절기				
	연탄전환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연탄전환은 전기, 등유, LPG, 도시가스(LNG)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
*** 표기된 이용권 금액은 당해 에너지이용권 총 지원금액이며 사용 잔액이 아님에 유의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전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전출·전입,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됩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3호의2]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개정 2026.00.00.>

에너지이용권(부적합 결정)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 ] 하절기 부적합 [ ] 동절기 부적합 [ ] 연탄전환 부적합

부 적 합 사 유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자격 [ ]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기준 [ ] 연탄쿠폰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안내사항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3호의3]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의3 서식] <개정 2026.00.00.>

에너지이용권(사용중지)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 ] 이용권 사용중지

일 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안내사항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4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00.00.>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예외지급 사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비용 구분가능 여부	[ ] 구분 가능(영수증, 고지서) [ ] 구분 불가
에너지비용 구분불가 사유 (구분불가 선택 시 작성)	[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종교시설, 공장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기타 (사유작성 :)

입금계좌정보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구분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계좌확인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금액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또는 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안내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1인 세대 수급자 사망 시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불가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4호의2]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개정 2026.00.00.>

실거주 확인서

거 주 인 (임 차 인)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거 형 태	[ ] 고시원 [ ] 쪽방 [ ] 여인숙 [ ] 종교시설 [ ] 상업시설 [ ] 공장시설 [ ] 기타( )	
거 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대 료	월 원 (보증금 : 원)	

위와 같이 거주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거주 제공자(임 대 인) 확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5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6.29.>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고 인	성 명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		
부정 사용자 및 사용 에너지	부 정 사 용 자 정 보	[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 에너지공급 사업자		
		성 명 (상호명)		연 락 처
		발 생 지 역	( ) 시·도 ( ) 시·군·구	
	에 너 지 유 형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 ] 등 유 [ ] LPG [ ] 연 탄 [ ] 기 타( )		
부 정 사 용 내 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위임장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0.>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재신청서 [ ]

(작성방법)
신규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재신청시 '재신청서'에 체크

※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이용권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이용권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일		

신청인	성명	*①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성명 기입 (대리인 성명 아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대리인 주민번호 아님)*	자택전화 휴대전화 *③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의 정보 입력(전화번호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기입) (없는 경우, 대리인 또는 가족의 연락처 입력 가능)*
	주소	*④ 바우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기입 (대리인의 주소 아님)*			

[ ] 에너지바우처 *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체크(√)*

수급자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⑥ 대상자에 해당되는 급여종류에 체크(√)*
대상세대	[ ] 노인(65세 이상) [ ] 장애인 [ ] 영유아(7세 이하, [ ] 미취학) [ ] 임산부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 다자녀 *⑦ 대상자 세대원 중 해당하는 세대원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세대원수	[ ] 1명 [ ] 2명 [ ] 3명 [ ] 4명 이상 *⑧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에 체크(√)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전화번호 (집/직장/휴대폰 등)
	⑨ 대상자 본인도 포함하여 작성해야함.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정보를 입력 (단, 시스템 입력시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거형태	[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⑩ 해당하는 주거형태에 체크,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를 경우,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체크(√)*
하절기	[ ] 가상카드 (요금차감):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⑪ 하절기엔 전기요금이 차감되므로 전기 고객번호 입력(고시원, 쪽방촌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는 하절기 미차감 체크)* [ ] 요금미차감 *⑫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액(또는 잔액)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 1)	[ ] 실물카드 *⑬ 원하는 카드 방식에 체크 (중복체크 불가). 단, 가상카드 신청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해야함* [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에너지원(택 1) [ ] 전기: ❍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동, 호) [ ] 도시가스: ❍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동, 호) [ ] 지역난방: ❍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동, 호) *⑭ 가상카드 선택시에만 한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고객번호 및 회사명 입력(관리소가 존재하는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를 반드시 기입)* [ ] 미신청(하절기바우처만 신청(연탄쿠폰, 연탄전환 등))
예외지급	사전지급: [ ] 신청(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 대상(고시원, 쪽방 등)) [ ] 미신청(해당없음)
	계좌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계좌확인: ※위 계좌가 수급자 본인 계좌이며, 압류방지 계좌가 아님을 확인함 [ ]
	안내사항: ※ 해당 지급액은 본인 거주지의 에너지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함을 확인함 [ ] *⑮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당해연도 연탄보일러를 타연료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⑯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체크(√)

대상세대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노인(65세 이상)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전환형태	교체방식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지자체 지원사업 [ ] 기타( )
	교체유형	[ ] 등유보일러 [ ] LPG보일러 [ ] 도시가스보일러 [ ] 기타( )
이용권방식		[ ] 실물카드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 ]신청, [ ]재신청)합니다.

⑰ 신청유형(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을 선택하고, 작성일자 및 성명과 서명을 기입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영유아가 7세인 경우 :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연탄전환의 경우: (비연탄)보일러 설치 · 시공확인서 8. 예외지급 사전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_서류,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 9.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4.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5. 영유아가 미취학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6.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7. (비연탄)보일러 설치 · 시공확인서(연탄전환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8. 예외지급 사전지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외지급 사전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9.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홍 길 동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을 신청(예정)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6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방식으로 연탄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직전년도에 연탄구입 또는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됩니다.
6. 예외지급 사전지급은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고시원, 쪽방 등)에 에너지이용권 전액 미사용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예외지급 금액 입금이 불가능하며, 일반 통장이 없을 경우 생계비 계좌 개설 후 예외지급을 신청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2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6.29.>

위 임 장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501200-1234567*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OOO*

전 화 번 호: *010-0000-0000*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 동 길*

주민등록번호: *700100-1234567*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아파트 501호*

전 화 번 호: *010-0000-4166*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년 6 월 10 일

위 임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가상카드 에너지원별 공급자명 및 공급자 코드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전기	01	한국전력공사	주관기관
전기	02	대성산업(전기)	
전기	04	엔솔브(전기)	
전기	05	삼천리(전기)	
전기	07	JB(전기)	(舊)중부도시가스(전기)
전기	09	CNCITY에너지(전기)	(舊)충남도시가스(전기)
전기	11	한국지역난방공사(전기)	
전기	12	주택관리공단(전기)	
도시가스	21	귀뚜라미에너지	
도시가스	22	강원도시가스	
도시가스	23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24	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	25	군산도시가스	
도시가스	26	대륜E&S	
도시가스	27	대성에너지(도시가스)	
도시가스	28	대화도시가스	
도시가스	29	MC에너지	(舊)목포도시가스
도시가스	30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31	삼천리(도시가스)	
도시가스	32	서라벌도시가스	
도시가스	33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34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35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36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도시가스	37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도시가스	38	예스코	
도시가스	39	인천도시가스	
도시가스	40	전남도시가스	
도시가스	41	전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2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43	JB(도시가스)	(舊)중부도시가스(도시가스)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도시가스	44	지에스이	
도시가스	45	참빛속초도시가스	
도시가스	46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도시가스	47	참빛원주도시가스	
도시가스	48	참빛충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9	CNCITY에너지(도시가스)	(舊)충남도시가스(도시가스)
도시가스	50	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1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2	㈜해양에너지	
도시가스	53	제주도시가스	
도시가스	54	주택관리공단(도시가스)	
도시가스	55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도시가스	56	명성파워그린	
지역난방	60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주관기관
지역난방	61	DS파워	
지역난방	62	GS파워	
지역난방	63	LH공사	
지역난방	64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66	내포그린에너지	
지역난방	67	대구그린파워	
지역난방	68	대륜발전	별내에너지와 합병
지역난방	69	대성에너지(지역난방)	
지역난방	70	대전열병합발전	
지역난방	71	대성산업(지역난방)	
지역난방	72	무림파워텍	
지역난방	73	위드인천에너지	
지역난방	75	부산시청	
지역난방	76	엔솔브(지역난방)	
지역난방	77	삼천리(지역난방)	
지역난방	78	수완에너지	
지역난방	79	안산도시개발	
지역난방	80	나래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81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	82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	83	전북집단에너지	
지역난방	85	JB(지역난방)	(舊)중부도시가스(지역난방)
지역난방	87	청라에너지	
지역난방	88	CNCITY에너지(지역난방)	(舊)충남도시가스(지역난방)
지역난방	91	평택에너지앤파워	(舊)평택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92	포스코와이드	(舊)포스코 O&M
지역난방	93	한국CES	
지역난방	94	휴세스	
지역난방	95	주택관리공단(지역난방)	

붙임4 에너지 공급자별 카드 납부 방식 고객번호 확인 방법

* 공급자코드 01~12(전기), 21~55(도시가스), 60~95(지역난방), 공급자 사정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 (2026. 4월 기준)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01	한국전력공사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02	대성산업(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3	대성에너지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4	엔솔브(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5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
05	삼천리(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07	JB(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앞장 우측상단 또는 고지서 중앙우측 “고객번호” 8자리 숫자
09	CNCITY에너지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우측, 고지서 하단 좌측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11	한국지역 난방공사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12	주택관리공단 (전기)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관리비 고지서 우측 상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21	귀뚜라미에너지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22	강원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 번호 불가, 방문결제 본사에서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3	경남에너지	BC	○	○	○	○	‘고객번호’ 2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4	경동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납부번호” 12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5	군산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수용가번호 및 지로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6	대륜E&S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지로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7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에 “사용계약번호” 10자리 숫자 (납부자번호도 동일한 번호임)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8	대화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우측상단에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29	MC에너지	BC	○	○	○	–	고지서 앞장 우측상단 또는 고지서 중앙 왼쪽상단에 “고객번호” 13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30	부산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1	삼천리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적색 박스로 되어 있는 “납부자번호” 9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2	서라벌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 고객번호 0, 1, 2로 시작 (추가했음)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3	서울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 “사용계약번호” 6으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1로 시작하는 고객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4	미래엔 서해에너지	BC	○	○	○	○	고지서 우측 “납부자번호” 13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5	대성청정에너지	BC	○	–	○	○	고지서 좌측하단 가운데 "사용계약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6	영남 에너지서비스 구미	BC	○	○	○	○	고지서 하단 좌측중앙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37	영남 에너지서비스 포항	BC	○	○	○	○	고지서 하단 좌측중앙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8	예스코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10자리 숫자 (금융기관용 고지서의 경우, 우측중앙에 “전자납부번호” 10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39	인천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상단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0	전남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 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1	전북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5로 시작하는 “고객납부번호” 10자리 숫자 (세대번호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2	전북 에너지서비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 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3	JB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앞장의 중앙에 “납부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4	지에스이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9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45	참빛속초 도시가스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고지서 상단 우측 등 고지서내 3군데 표기 (계량기 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6	참빛영동 도시가스 동해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7	참빛원주 도시가스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8	참빛충북 도시가스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49	CNCITY에너지 (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뒷면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0	충청 에너지서비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번호 불가, 1 또는 2로 시작하는 8자리)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1	코원 에너지서비스	BC	○	–	○	○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홈페이지 가입 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2	㈜해양에너지	BC	○	○	○	○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10자리 숫자 (100–***–****, 1로 시작하는 10자리)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확인 방법
53	제주도시가스	BC	○	○	–	–	고지서 우측상단에 “고객납부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4	주택관리공단 (도시가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관리비 고지서 우측 상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55	참빛영동 도시가스 강릉	BC	○	–	○	○	“고객번호” 9자리 숫자 (계량기번호는 불가)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56	명성파워그린	BC	○	–	–	○	“고객번호” 7자리 숫자
		삼성	○	–	–	○	
		롯데	○	–	–	○	
		KB	○	–	–	○	
		신한	○	–	–	○	
60	한국지역 난방공사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61	DS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62	GS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5자리 숫자
63	LH공사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고객번호” 8자리 숫자
64	서울에너지공사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하단에 “고객번호” 7자리 숫자
66	내포그린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67	대구그린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12자리 숫자
68	대륜발전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69	대성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0	대전열병합발전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71	대성산업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2	무림파워텍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3자리 숫자

공급자 코드	회사명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					고객번호 (납부자 번호) 확인 방법
		카드사명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73	위드인천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우측 영수증에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5	부산시청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6자리 숫자
76	엔솔브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6으로 시작하는 8자리
77	삼천리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78	수완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79	안산도시개발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사용자번호" 9자리 숫자 (고지서 하단 '8'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
80	나래 에너지서비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81	인천공항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7자리숫자 ('IAE'로 시작)
82	인천종합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9자리 숫자
83	전북집단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4자리 숫자
85	JB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앞장 우측상단 또는 고지서 중앙우측 "고객번호"8자리숫자
87	청라에너지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사용자번호)" 12자리 숫자 고지서 중앙의 사용자 현황, 고지서 하단 지로번호 아래
88	CNCITY에너지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중앙 좌측 상단에 "납입자번호" 8자리 숫자
91	평택 에너지앤파워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8자리 숫자
92	포스코와이드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3자리 숫자
93	한국CES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지서 좌측 상단 "사용자명(코드)" 6자리
94	휴세스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고객번호" 또는 "납부자번호" 9자리 숫자
95	주택관리공단 (지역난방)	가상카드로만 신청·발급 가능 (아파트관리비에 포함)					관리비 고지서 우측 상단 "고객번호" 6자리 숫자
'26년도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중 현대카드(신규) 납부 방식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붙임5 에너지바우처 관련 법령단위 비교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에너지법」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10.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략)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한다. 1. (생략) 2.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3. ~14. (생략) ③ ~ ⑬ (생략)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재산 및 소득 규모 2. 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 〈2023.4.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장애인 증명서 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그 밖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1. 9. 24.〉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③~⑥ (생략)		
제21조(질문 및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 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에너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에너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붙임6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라.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영 제13조의2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다른 에너지(등유, LPG 등)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제3조(자료제공 요청 대상)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4.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

제4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4. 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
6. 보일러 설치 · 시공확인서

② 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 · 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④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5.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나. 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제6항제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영 제13조의6제1항 및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전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통장 사본
2. 입실확인서, 별지서식 제4호의2의 실거주확인서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환경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⑨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6조(예외지급) ① 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시스템의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에너지이용권으로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멸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 신청은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너지이용권을 전액 미사용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전에 예외지급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의6제1항과 고시 제4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 · 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신청과 사용을 위한 방문 안내 및 상담 등의 업무
1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 · LPG : 한국에너지공단
5. 연탄 :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 ·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5.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 · 협력 업무
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 · 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 업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부서장

⑤ 위촉직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담기관 규정에 따른 징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문성 부족 및 기타사유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에게 제12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특정 대상에게 유 ·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평가한 경우
5.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8.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의4(위원의 제척 · 회피 ·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 및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 의결 대상업체 또는 기관의 용역, 자문, 연구, 감정을 수탁하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심의 · 의결 대상 업체 또는 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 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심의 안건 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위원의 대리참석) ① 제12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7(위원의 수당)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대리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 전담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의 에너지원별 주관기관과 그 밖의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바우처 운영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7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범위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나.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 (V306은 제외)	다.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라.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마.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 · 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0 /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 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죠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9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열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쉬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안드로젠저항증후군	E34.5	V16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캅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넙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티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_2–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_2–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_2–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_2–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Ⅳ	E75.1	V117
	GM_1–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_3–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마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Ⅰ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헐러증후군	E76.0	V117
	헐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Ⅱ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Ⅲ, Ⅳ, Ⅵ, Ⅶ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Ⅲ[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Ⅱ[Ⅰ–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Ⅰ]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윌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1	V120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 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 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G12.20	V123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V123
	케네디 병	G12.28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육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푹스디스트로피	H18.5	V307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츠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이완불능증	K22.0	V315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가성 장 폐색	K56.0	V312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전신농포건선	L40.1	V313
	손발바닥농포증	L40.3	V313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쳐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 – 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 – 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M92.2	V299
	성인의 킨뵉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탄력섬유성 거짓황색종	Q82.8	V31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안치지의 형성이상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좌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 ~ 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 · 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 · 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페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페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311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딸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딸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6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7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붙임8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 시스템 가이드(신청·접수~결정·통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명 자료 - 행복이음 시스템-

2026. 05.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행복e음 목 차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업무처리 순서 P5
2. 에너지바우처 2026년 등급변경 사항 P6
3.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간편 매뉴얼 P7
4.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업무 별 처리 순서 P8
5. 신청구분별 변경 선택 항목 상세 설명 P8~9
6. [공통] 행복이음 로그인 P10
   - 로그인 P11
   - 로그인 후 첫 페이지 P11
   - 바우처 메뉴 선택 화면 및 신청 기간 P12
7. 신청,접수 - 바우처 홈(읍면동) P13
   - 바우처 홈(읍면동) P14
   - 서비스 찾기 P15~16
   - 바우처 신청 – 신청 화면 P17~23
   - 바우처 신청 – "소득/등급"영역 P24
   - 바우처 신청 – 카드 정보 등록 영역 P25
   - 바우처 신청 – "구비서류" 등록, 서비스 신청 접수 P26~27
8. 대상자 결정 처리(시군구) P28
   - 바우처 대상자 결정 처리 P29
   - 바우처 결정 처리 상세 정보 확인 P30
   -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신청취소, 접수반려, 결정취소 P31
9. 바우처 송수신 관리(시군구) – 대상자 결정 처리 이후 P32
   - 송수신 관리 P33
10. 통지서 발행(읍면동, 시군구) –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P34
   - 통지서발행 P35~38
11. 중지 신청(읍면동, 시군구) – 정보수정 필요 시 P39
   - 중지신청 P40
12. 바우처 송수신 관리(시군구) – 중지 후 P41
   - 송수신 관리 P42
13. 원스크린 P43
   - 바우처 원스크린 P44

한국에너지공단 3 한경정보기술

목 차

14. 바우처 재신청(세대원수 변경, 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등) P45

- 재신청 전 변경 기간 확인 **P46**
- 재신청 (정보 수정 시 – 중지처리를 하고 진행가능) **P47**
- 재신청 (정보수정-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P48**
- 재신청 (정보수정-세대원수 변경) **P49**
- 재신청 (정보수정-하절기 요금 미차감 변경) **P50**
- 재신청 (정보수정-대상자 변경) **P51**
- 재신청 (읍면동 담당자 대상자 변경으로 재신청 시 주의 사항) **P52**

15. 바우처 신청현황 P54

- 바우처 신청 현황 **P55**
-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P56-58**

16. 바우처 대상자현황 P59

- 바우처 신청 현황 **P60**

17. 전달사항 및 결정대기 현황 P61

- 바우처 홈(시군구) **P62**

18. 이의 신청(읍면동, 시군구) P63

- 이의신청 등록(읍면동, 시군구 가능) **P64**
- 이의신청 현황(시군구) **P65**
- 이의신청 결정(시군구만 가능) **P66**

19.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P67

- 온라인신청현황조회 **P68~70**
- 온라인신청서 접수 **P71~74**

20. 바우처 변동현황 P75

- 온라인신청현황조회 **P76**

21. 바우처 변경신청 관리(읍면동, 시군구) P77

- 바우처 변경신청 **P78**

22. 바우처 송수신 관리(시군구)) – 변경신청 P79

- 송수신 관리 **P80**

23. 기타 질의사항 P81

- 엣지/ 크롬 캐시 삭제 **P82 ~ P85**
- 외국인 성명 보정 **P86 ~ P87**
- 대상자 주소 수정 **P88**

에너지바우처 업무처리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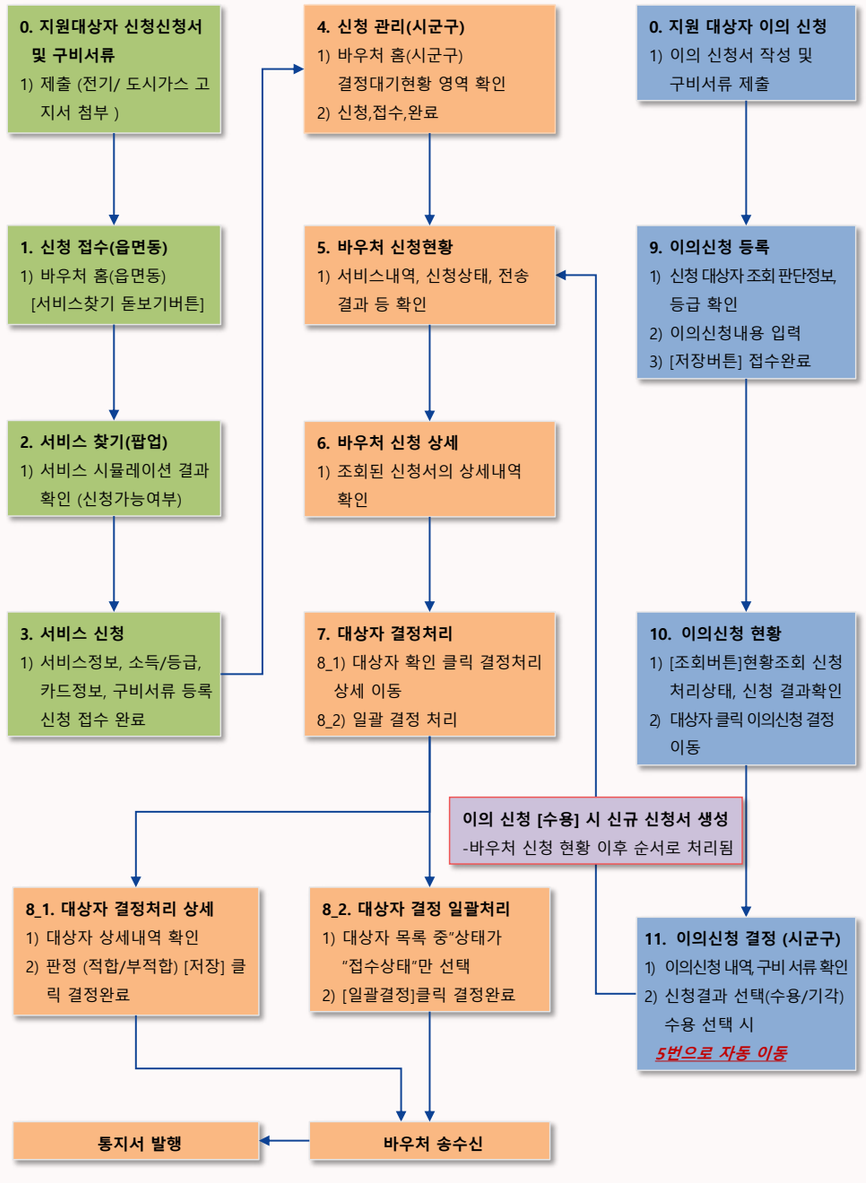

에너지바우처 2026년 등급변경 사항

’26년 4단계 차등 지급 및 세대인원별 지급금액 (타 동절기 서비스 미사용자)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1등급)	2인 세대 (2등급)	3인 세대 (3등급)	4인 이상 세대 (4등급)
’25년 일반 등급	295,200	407,500	532,700	701,300
다른 동절기 이용권 수급자	40,700	58,800	75,800	102,000

- 세대원 수 하향 가능 기간 : ~ 2026.06.26 (해당 기간 내 중지 완료자)
- 일반 등급 → 다른 동절기 이용권 수급 변경 기간 : ~ 2026.06.26 (해당 기간 내 중지 완료자)

- 단, ’26. 6. 30. 기준 중지 상태인 수급자는 최초 재신청에 한해 세대원 수 하향 신청 가능함

’26년 에너지바우처 등급 변동 가능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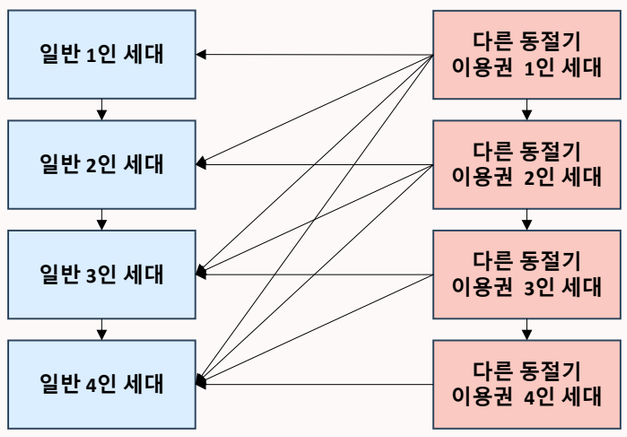

- 해당 내용은 2026년 6월 26일 이후 중지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며, 6월 26일까지 중지 완료된 대상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변동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간편 매뉴얼

읍면동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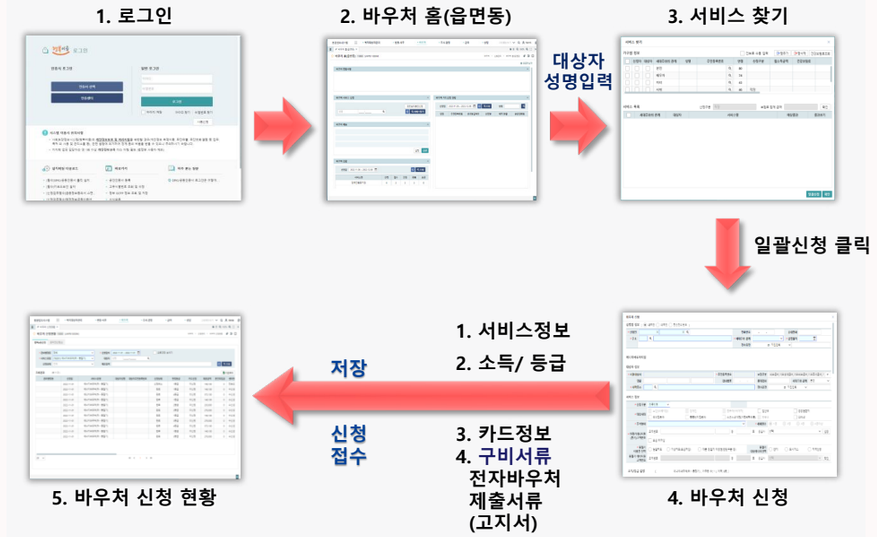

시군구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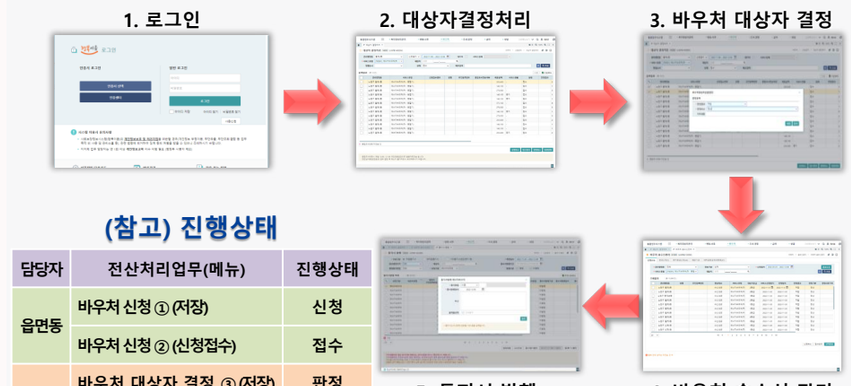

(참고) 진행상태

담당자	전산처리업무(메뉴)	진행상태
읍면동	바우처 신청 ①(저장)	신청
	바우처 신청 ②(신청접수)	접수
시군구	바우처 대상자 결정 ③(저장)	판정
	바우처 송수신 관리 ④(전송)	응답대기 /완료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업무 별 처리 순서

업무 구분	대상자	업무 순서 및 해당 페이지
✓ 신규신청	1. '26년 신규 대상자 2. 기존 대상자('25년도)중 세대원수 변동, 전출입 가상카드 대상자 등	1. 신청 및 접수 : p13 ~ p27 2. 대상자결정처리 : p28 ~ p31 3. 송수신관리 : p32~P33 4. 통지서발행 : p34~P38
✓ 중지 신청	1.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중지 처리 후 재신청) 2.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 전출입, 사망의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 중지됨	1. 중지환급신청 : p39 ~ p40 2. 송수신관리 : p41 ~ p42
✓ 신청정보변경에 의한 재신청	1. 정보 수정에 의한 재신청 대상자 • 신청자 중에서 정보수정을 원하는 경우 재신청은 중지 처리이후 진행 가능	1. 원스크린 : p43 ~ P44 2. 재신청(정보수정) 및 접수 : p45 ~ P52 3. 대상자결정처리 : p28 ~ p31 4. 송수신관리 : p32~P33 5. 통지서발행 : p34~P38

신청구분별 변경선택 항목 상세 설명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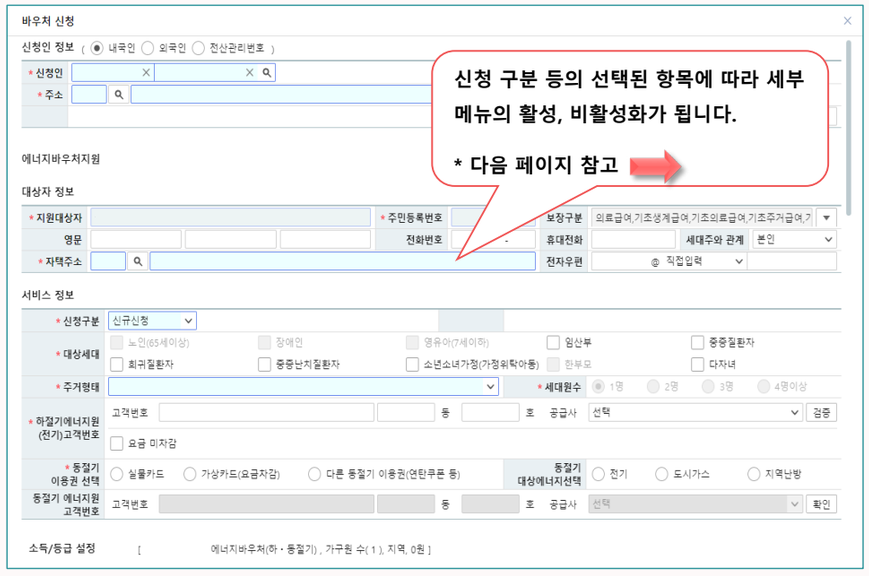

신청구분별 변경선택 항목 상세 설명 (2/2)

신청구분	세부구분 1	세부구분 2	세부구분 3	관련 항목 및 기능
신청	대상세대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다자녀** 외 임의 선택 불가 (위 세대원특성기준이 시스템상 확인 불가시 구비서류 첨부 필요)
	주거형태			주거형태 활성화
	동절기 이용권선택			동절기 이용권선택 활성화
	동절기 대상에너지 선택			가상 카드일 경우 활성화
	하.동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			동절기 : 가상 카드일 경우 활성화
	하절기 요금미차감			하절기 고객번호, 공급자, 동, 호 입력 비활성화
재신청	정보수정	동절기 이용권 선택	(이용권 선택 활성화 → 가상카드 클릭 →)	주거형태, 대상에너지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공급자 활성화
			(이용권 선택 활성화 → 실물카드 클릭 →)	대상에너지 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공급자 비활성화
			(이용권 선택 활성화 → 다른 동절기 이용권 클릭 →)	대상에너지 선택, 에너지원, 고객번호, 공급자 비활성화 하절기 정보 입력 비활성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자동 체크 **단, 6월 26일 이후에는 에너지바우처에서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 변경 불가함**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동/호수 입력 필수
			다가구·다세대주택(1개 주소에 2세대이상 거주)	동/호수 선택 입력
			연립주택·단독주택(1개 주소에 1세대만 거주)	동/호수 선택 입력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동/호수 선택 입력
			종교·복지시설 등 기타	동/호수 선택 입력
		고객번호		고객번호 활성화
		공급자		공급자 활성화
		동절기 에너지원변경		대상에너지 선택 활성화
		하절기 요금미차감		하절기 고객번호, 공급자, 동, 호 입력 비활성화
		세대원수	증가	'26. 6. 15. ~ '27. 5. 31.
			감소	'26. 6. 15 ~ **'26. 6. 26.** **(단, '26. 6. 30. 기준 중지자는 최초 재신청에 한해 '27. 5. 31. 까지 세대원수 하향 가능)**
		대상자변경		이전대상자명, 이전대상자주민등록번호 입력칸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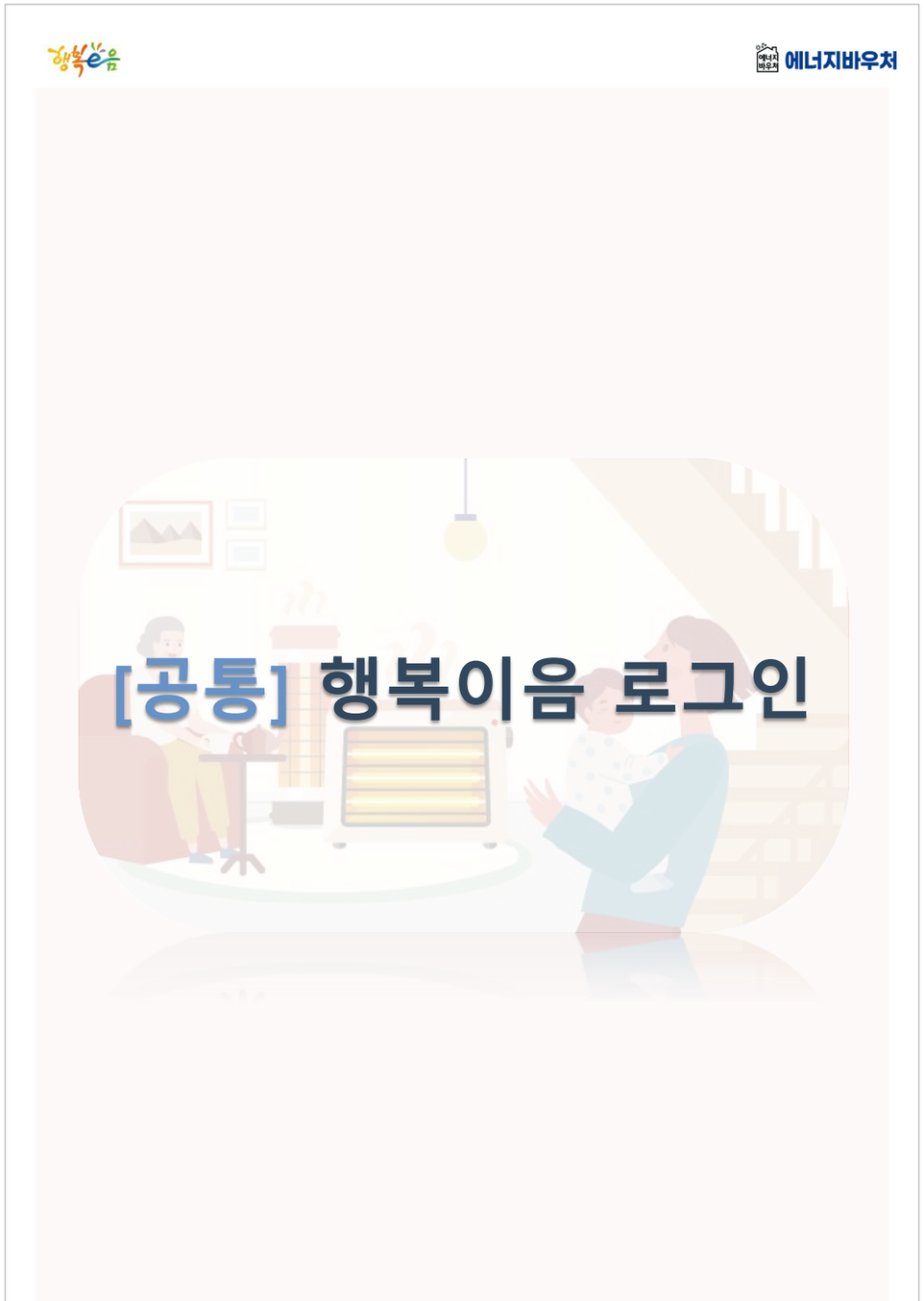

행복이음 메뉴 공통(1/2)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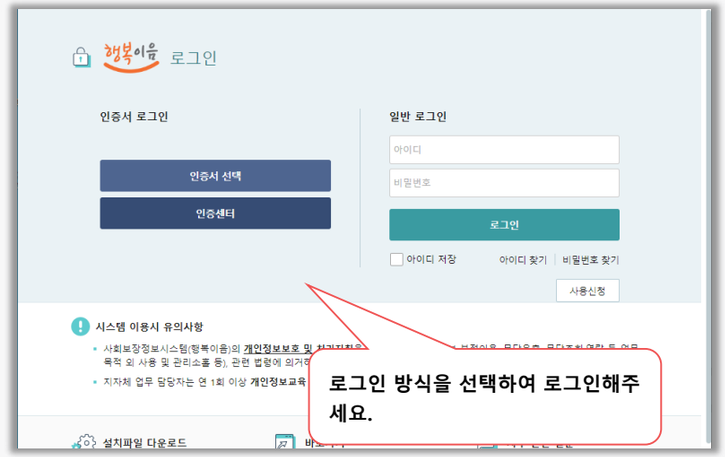

로그인 첫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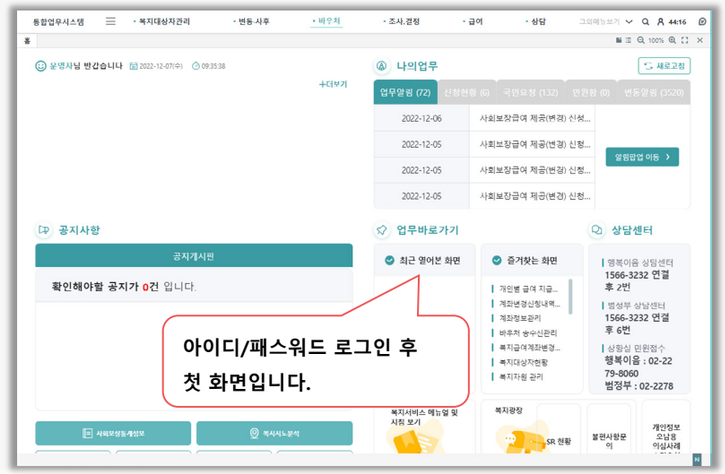

행복이음 메뉴 공통(2/2)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메뉴 선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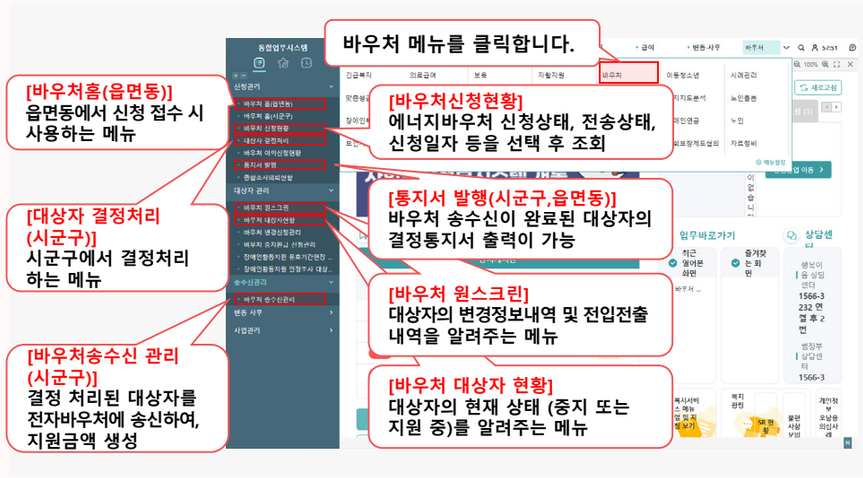

신청, 재신청 기간

구분	해당 처리 기간
신규신청 기간	`26년 06월 15일 ~ `26년 12월 31일
재신청 기간	`26년 06월 15일 ~ `27년 05월 31일
신청 및 재신청 송수신 일시 중지 (바우처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26년 06월 27일 ~ `26년 06월 30일 `26년 10월 1일 ~ `26년 10월 2일

한국에너지공단 12 한경정보기술

에너지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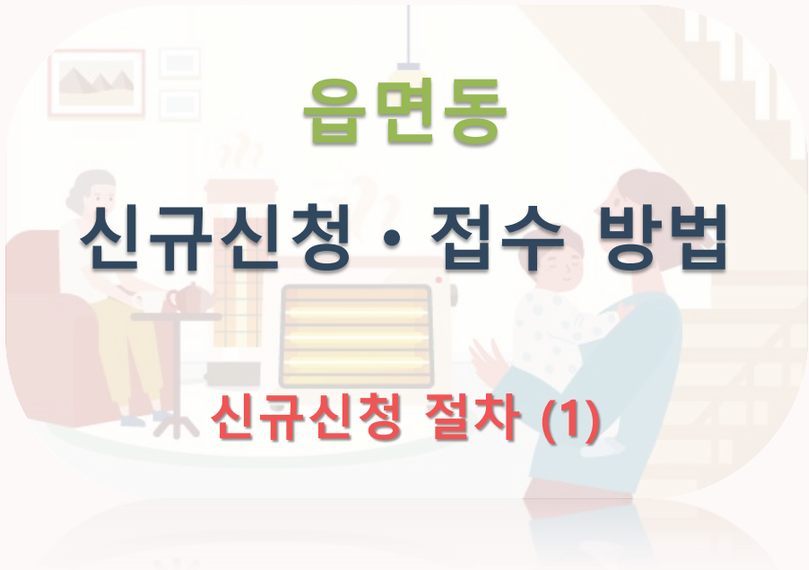

읍면동

신규신청 · 접수 방법

신규신청 절차 (1)

한국에너지공단 13 한경정보기술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홈 (읍면동) 화면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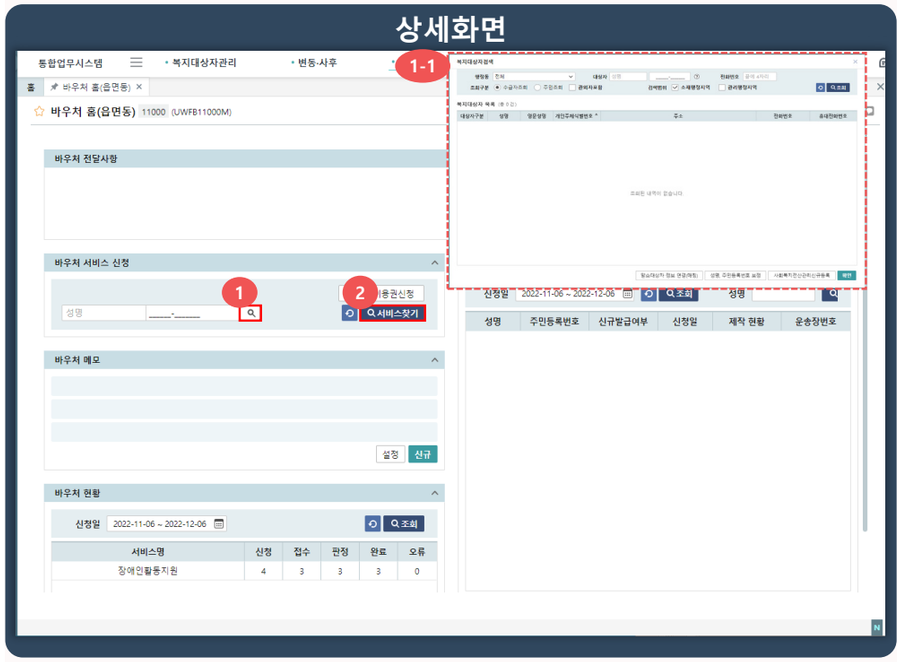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홈(읍면동)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 홈(읍면동)]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 클릭 시 인적정보조회창에 자동으로 대상자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1-1. 동일한 성명의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팝업에서 신청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화면 기능설명**

- [바우처 현황] 서비스 별로 신청, 접수, 완료 건수를 보여줍니다.
- [바우처 메모]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 부서, 개인별로 공지 가능한 메모 기능입니다.

읍면동 담당자 서비스 찾기(1/2)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서비스찾기**

상세화면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 서비스 찾기*

❖ *필수확인사항 : 신청 전 대상자 세대원 확인(주민등록등본상 기준) 임의로 세대원 추가 등록 금지*

1. [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만 지정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제 신청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되 (세대원 중 누구나 지정 가능) **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는 대상자를 신청자로 지정** 합니다.

2. 1-1. [건강보험료조회] 클릭 시 **[1-2].** 건강보험료 항목에 자동으로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데이터를 조회되며, **[③]** 확인 버튼 클릭

※ 건강보험료가 조회 안되는 경우(대부분 수급자)
2-1. [건보료 수동입력] 체크 시
2-2. 팝업창 불러오며, 수동입력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2-3. [산정구분]을 "지역"으로 선택
2-4. 건강보험료 항목에 "0"을 입력 후 [③] 확인 버튼 클릭

읍면동 담당자 서비스 찾기(2/2)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서비스찾기

상세화면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 서비스 찾기*

4. 기준 정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④]** 같이 예상하여 보여줍니다.
5.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 서비스를 선택 **[체크]**합니다.
6. [예상결과]는 참고용으로 **[신청불가능]** 표시되더라도 **[⑧일괄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7. [보기] 버튼을 클릭 시 대상자등급 판정 시 **[7-1판정조건]**을 보여줍니다
8. [일괄신청] 을 클릭합니다.

※ 예상결과 참고사항 ***(세대원 특성 P17 참조)***

1). 신청가능조건 = ***(소득기준 필수조건)*****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중 1개의 급여 + 1개 이상 세대원특성이 있는 경우**

2). 신청불가능 조건
1. 소득기준 없는 경우 또는 소득기준 있으나 세대원 특성이 없는 경우
2. **(재신청시)** 대상자 변경으로 인수자가 소득기준 없는 경우 ***(대상자 사망 인한 대상자 변경 시 신청 가능)***
3. 자동으로 확인 되지 않는 세대원 특성(시스템 내에 사전등록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괄신청 진행 후 7세 미취학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의 한에서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1/7)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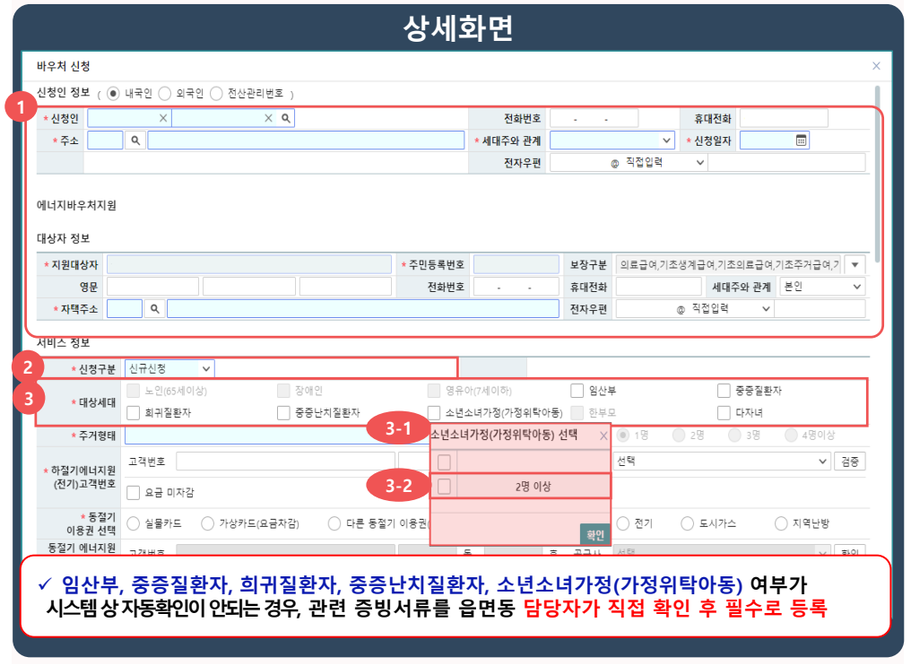

✓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여부가 시스템 상 자동확인이 안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필수로 등록**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1)*

1. 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는 서비스 찾기 ***[팝업화면]***에서 조회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표시 됩니다.
2. 신청구분은 ***(신규신청 시)*** 신규신청을 선택합니다.
3. 자동으로 확인(선택)된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수동으로 **체크(V)** 후 증빙서류**(P27참고)**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1. 자동선택 되지 않는 항목을 선택 시 세대원특성을 갖고 있는 세대원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7세 미취학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자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은 자동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3-2.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2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으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체크된 경우, 해제 후 선택 가능)
※ 다자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자녀"에도 체크합니다

세대원특성 자동체크 항목
①. 노인, ②. 장애인,
③. 한부모

세대원특성이 자동 체크되지 않을 때 증빙서류 첨부하거나 세대 구성을 변경하여 신청 가능한 항목
①. 영유아, ②. 임산부,
③. 중증질환자, ④. 희귀질환자,
⑤. 중증난치질환자
⑥.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⑦. 다자녀

※ 단, 대상자 또는 세대원이 자동 체크 불가 항목에 관련하여 행복이음 시스템 내에 다른 서비스에서 혜택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 체크되며, 자동 체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 체크되어 보여집니다. (후속 페이지 참고)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2/7)

2026년도 세대원 특성 자동 확인 기준

세대원 특성	자동 확인 기준	수동 선택 가능 기준
노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불가
영유아	2020.01.01 이후 출생자	세대 내 2019.01.01 이후 출생자가 있으며, [영유아 미취학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장애인	일반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가
임산부	의료급여 출산 전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수혜중이며, 서비스 종료일이 18개월 이내인 경우	[임신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암환자지원 수급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지원 수급	[중증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중증난치질환자	의료급여 희귀난치환자지원 수급자	[중증난치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급여 희귀난치성환자지원 수급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결핵) 수급 차상위의료급여1종(희귀질환) 수급	[희귀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한부모	모자가족인 경우 조손가족인 경우 부자가족인 경우 청소년한부모자가족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인 경우	불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를 수혜중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증명 제출 서류]를 첨부한 경우
다자녀	①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거나 "배우자의 자녀"이면서 2006.1.1이후 출생자 ②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을 수혜 중이면서 2006.1.1이후 출생자 ①+②합이 2명 이상인 경우	[가정위탁아동 증명 서류]를 첨부하고 다자녀 특성 기준을 만족한 경우 혹은 [다자녀 증명 가족관계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18 한경정보기술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3/7)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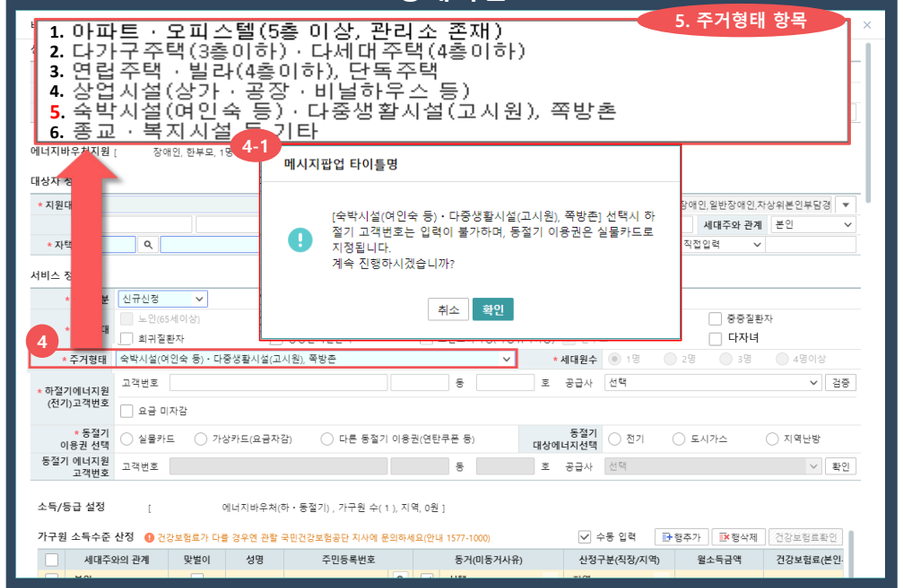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3)*

4. 주거형태는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에너지원 고객번호]**에 동, 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단. 주거형태 5번 [숙박시설(여인숙 등)·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촌] 선택 시 [하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를 입력 할 수 없게 되며, **[동절기 에너지원고객번호]**는 실물카드로 자동 체크 됩니다. **4-1**과 같이 알림 팝업이 열리게 됩니다.

A. 등록된 **신청지 주소**에 따라 도시가스, 지역 난방은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공급자명만** 선택 가능합니다. (**동절기에만 해당**)

※ 단, 12개 전기공급자 및 도시가스(54-주택관리공단), 지역난방(95-주택관리공단)지역과 상관없이 항상 표시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19 한경정보기술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4/7)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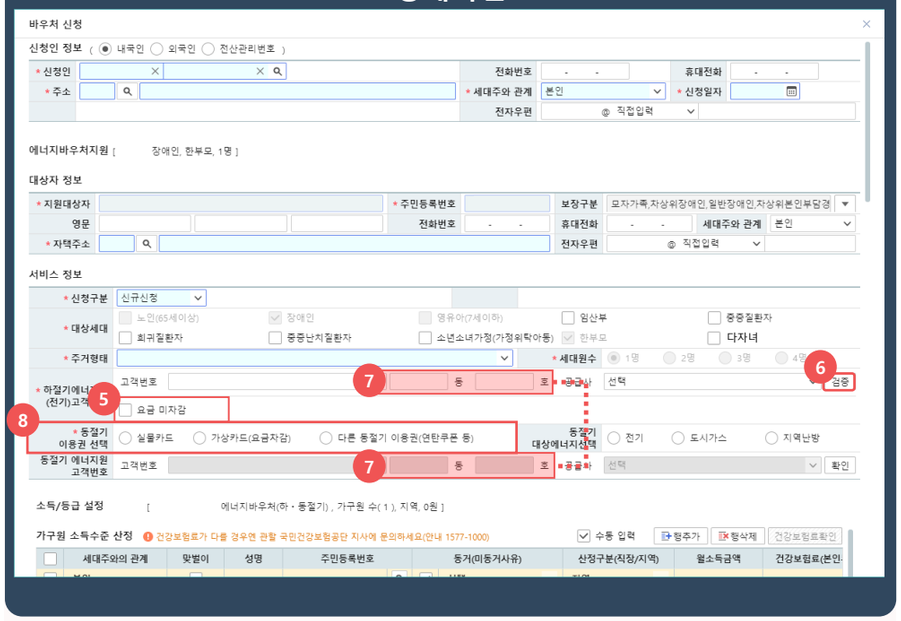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4)*

❖ *[8]번 가상 카드 선택 시에만 동절기 대상에너지선택,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가 활성화 됩니다.*

5. 하절기 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을 시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6, 7번 생략 후 8번으로 진행)
하절기 요금 사용을 원할 시, **하절기 에너지원은 전기만 사용**함으로 해당 **고객번호, 동, 호수 입력 후** 해당 **공급자를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에 체크가 된 경우, 하절기 공급사 및 고객번호는 공백으로 저장됩니다.

6. 하절기고객번호, 동, 호를 입력한 후 **[검증]** 버튼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 합니다.
- **입력한 고객번호에 해당하는 고객주소가 없더라도 고객번호가 정상적인 경우(고지서 등과 일치) 정상 신청 가능** (고객번호 검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21~22p) 참고)

7. 하절기 에너지원 동, 호수 입력 시 자동으로 동절기 동, 호수 자동 입력 됩니다.

8. 동절기 이용권선택은 **실물카드, 가상카드, 다른 동절기이용권** 중에 선택합니다. (다른 동절기 이용권 상세설명 P23 참조) **단, 에너지비용이 관리비 형태로 청구되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물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5/7)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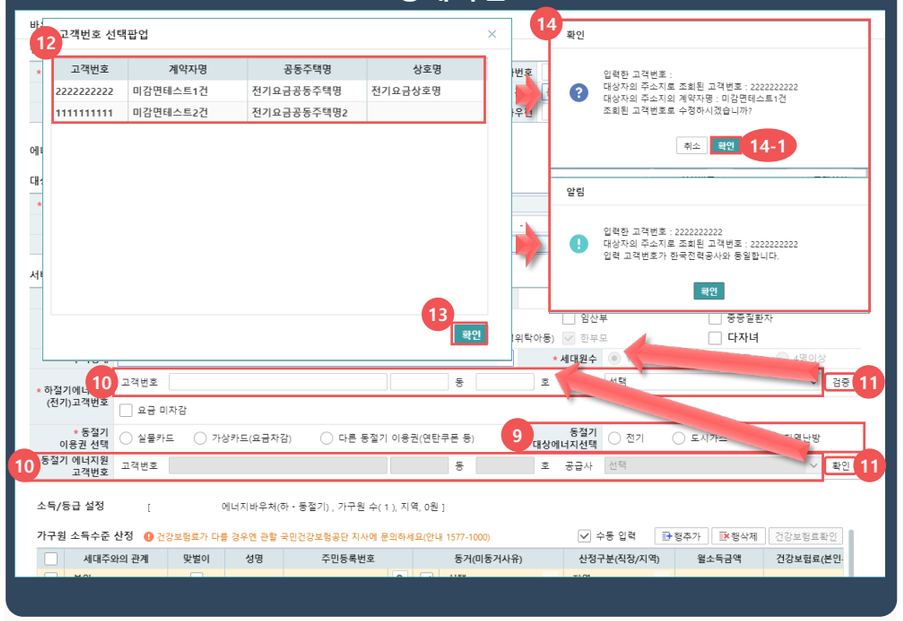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5) / 공급사 : 한국전력공사 선택의 경우*

9. (동절기 이용권이 가상카드인 경우) **동절기 대상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10. 하/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란의 고객번호, 공급자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고지서를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 **선택한 공급사가 '한국전력공사 ' 가 아닐 경우 22p를 참고해주세요**

11. [확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 합니다.

12. 대상자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고객번호가 2건 이상인 경우** 리스트로 표출됩니다.
- **조회된 고객번호가 한 건일 경우 해당 팝업이 나오지 않고 14로 넘어갑니다.**

13. [12번의 고객번호]에서 대상자의 고객번호에 해당하는 행을 건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4.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조회된 고객번호 **[비교 결과에 따른 알림]**이 나옵니다.
- **해당 알림 외 다른 알림이 나와도 고객번호가 정상적인 경우(고지서 등과 일치) 정상 신청 가능**

14-1. [확인] 클릭 시 해당 고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6/7)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6) / 공급사 : 한국전력공사 외 타공급사 선택의 경우*

9. 동절기 대상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10. 하/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란의 고객번호, 공급자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고지서를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 **선택한 공급사가 '한국전력공사 ' 일 경우 21p를 참고해주세요**

11. [확인]/[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 합니다.

- **입력한 고객번호에 해당하는 고객주소가 없더라도 고객번호가 정상적인 경우(고지서 등과 일치) 정상 신청 가능**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 – 신청화면(7/7)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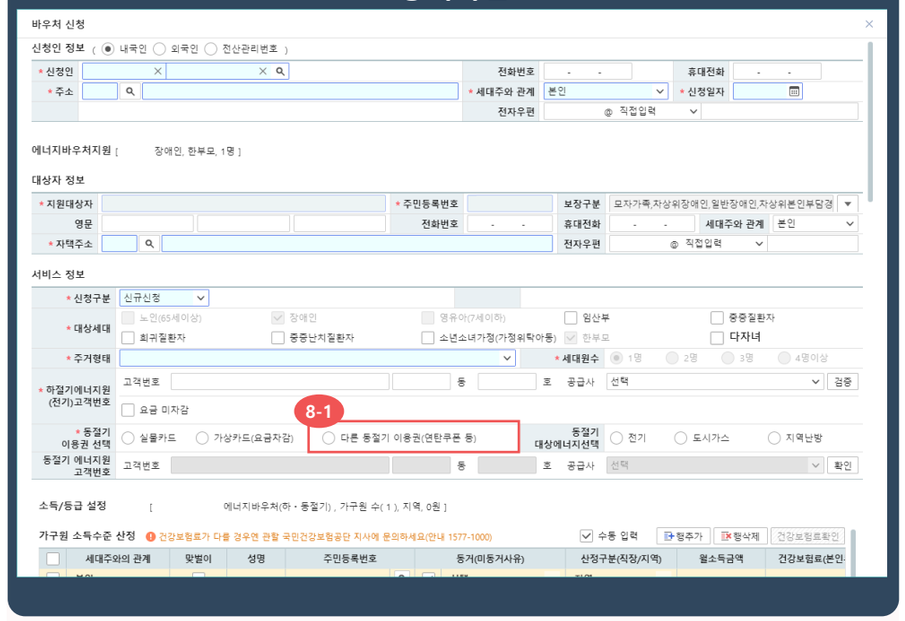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화면 (7)*

❖ *[7]번 가상 카드 선택 시에만 동절기 대상에너지선택,동절기 에너지원 고객번호가 활성화 됩니다.*

8-1.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경우]

대상자 중 동절기에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 있을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절기 이용권 주의사항]

(1). 하절기 요금 미차감 우선 선택 후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해제 및 알림창

(2). 다른 동절기 이용권 우선 선택 시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선택 불가

-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선택 할 경우 다른 동절기 이용권 수급자 지원금대로 지원받으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동절기 시작 이후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선택한 대상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담당자 신청접수– "소득/등급"영역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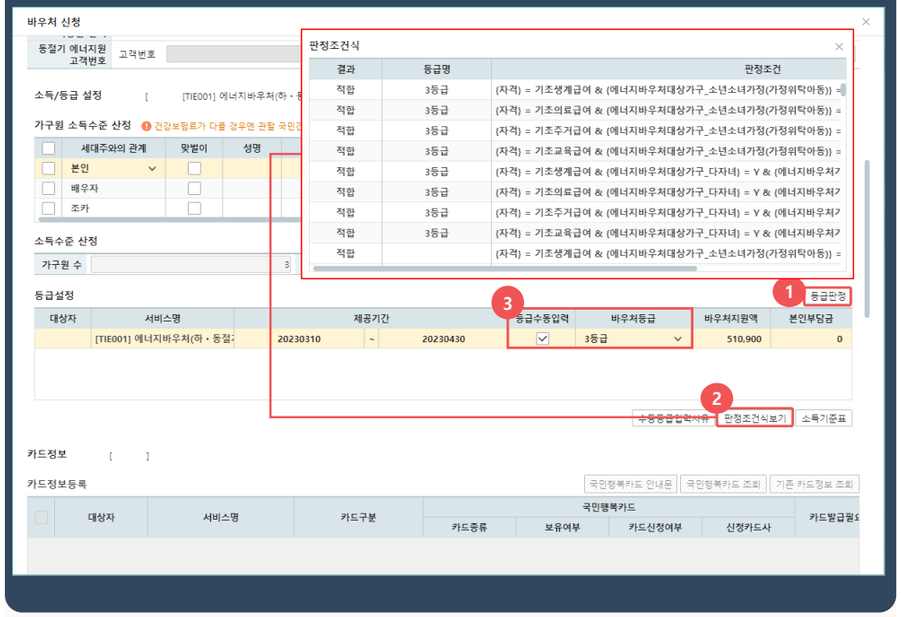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의"소득/등급"영역 화면*

1. **[등급판정]** 버튼을 클릭하여 바우처 등급을 확정합니다.
2. **[판정조건식보기]** 버튼을 클릭 시 대상자등급 판정시의 판정조건을 보여줍니다.
3. 신규신청 시에는 **[등급수동입력] 체크 후 수동 변경 불가합니다.**
   ※ 특히 **세대원**수 변동 기간 이후에 중지된 대상자를 [재신청] 시 **실제 세대원 인원이 변동(하향)되더라도 해당년도에는 신청서 기준으로 기존 등급과 기존 세대원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향은 정상처리됩니다)

읍면동 담당자 신청접수– 카드 정보 등록 영역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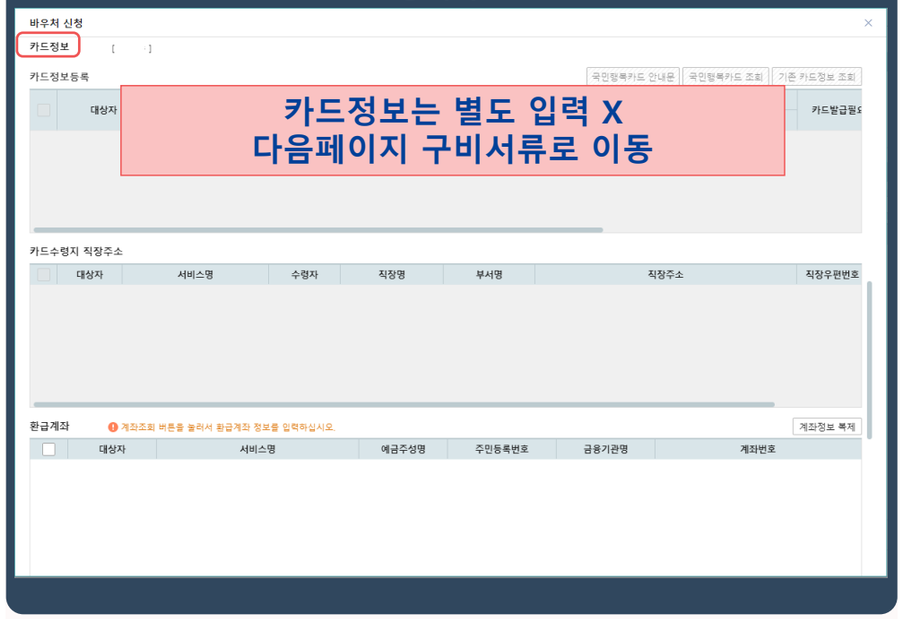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의 카드정보등록 영역 화면*

1. **[카드 발급 현황]** 을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신청여부는 방문 발급으로 표시됩니다.**
   (카드발급은 수급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상카드의 경우 카드신청 여부에 미신청으로 표기됩니다.*
3. **신청카드사 선택은 불가합니다.** ***(방문발급 원칙)***

읍면동 담당자 신청접수 – "구비서류" 등록, 저장, 신청접수(1/2) 에너지바우처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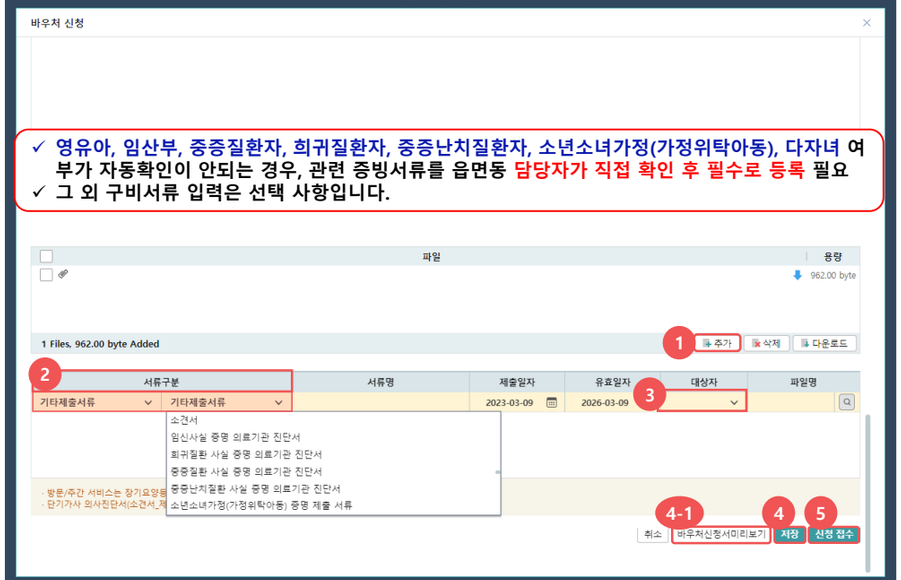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 "구비서류"등록 및 신청 접수*

1.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건씩만 추가 가능합니다.)
2. **(가상카드 에너지요금고지서 등록) [서류구분]**에서 **[기타제출서류],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를 선택하고 해당 신청 서류를 선택 등록합니다.

2-1. (임산부, 질환자 등 관련 구비서류 등록) **[서류구분]**에서 **[기타제출서류]**, **[사실 증명 의료기관진단서]**를 선택하고 해당 신청 서류를 선택 등록합니다. (서류구분 p26 참고)

3. **[대상자] 항목에서 등록한 구비서류에 관련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각 서류에 지정된 대상자가 없다면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4.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신청서는 **[바우처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페이지 참조)***

4-1. **[바우처신청서미리보기]** 버튼은 저장 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접수]** 클릭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읍면동 담당자 신청접수 – "구비서류" 등록, 저장, 신청접수(2/2)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첨부서류

서류 구분	
기타제출서류	에너지바우처신청서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영유아 증명 미취학 증명서 ※세대원특성 : 영유아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임신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세대원특성 : 임산부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희귀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세대원특성 : 희귀질환자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중증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세대원특성 : 중증질환자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중증난치질환 사실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세대원특성 : 중증난치질환자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증명 제출 서류 ※세대원특성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틱아동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다자녀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특성 : 다자녀에 체크한 경우 필수 첨부*

- *기타제출 서류를 선택 후 세부서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서류구분에 서류명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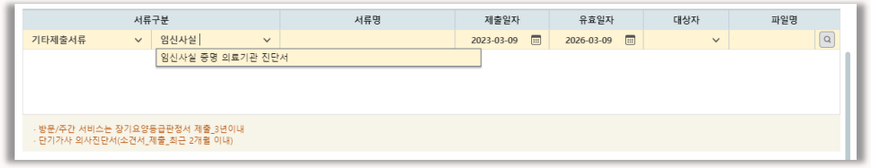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대상자 결정 처리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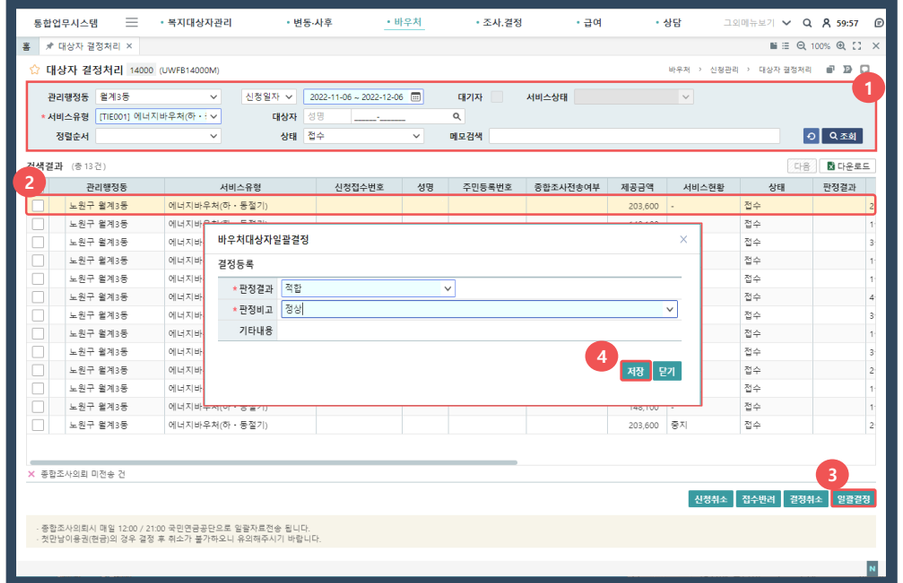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결정처리 대상자 조회 화면*

1.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대상자 결정처리]** 화면에 접속합니다. **[서비스유형]**을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하고, 신청일자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태]**가 접수인 결정 대상자를 **체크(V)**후 **[일괄결정]** 버튼 누릅니다.
3. **[바우처대상자일괄결정]** 팝업에서 **[판정결과]**와 **[판정비고]**의 내용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4. 조회된 결과 중 확인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대상자 결정상세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결정 처리 상세 정보 확인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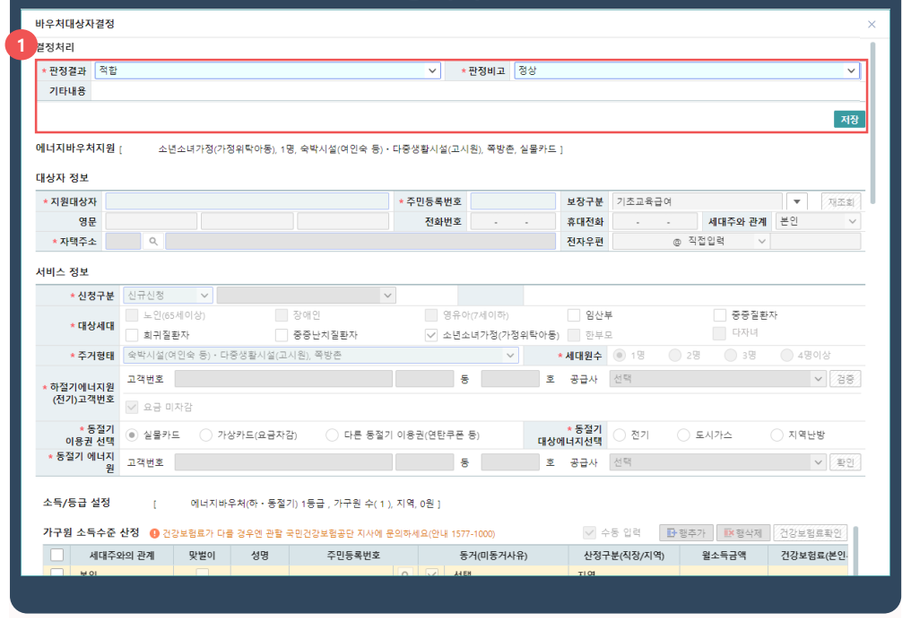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결정 처리 화면에서 선택된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1. **[바우처 대상자 결정]** 화면에서 선택된 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 후, **[결정처리]** 영역에서 **[판정결과], [판정비고]**를 선택하고 **[저장]** 클릭 하면 결정처리가 완료 됩니다.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결정 처리 대상자 신청취소, 접수반려, 결정취소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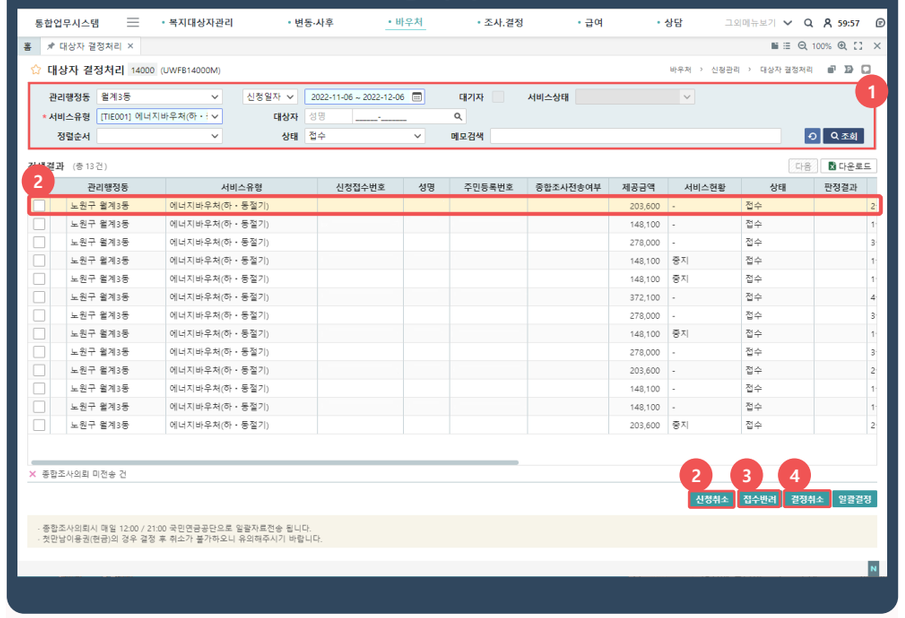

상세설명

❖ *신청정보 오류 등 취소 및 반려가 필요한 경우*

1.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로 선택하고, 신청일자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된 결과 중 취소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정 처리 전에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 시 해당 정보가 화면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재신청은 읍면동에서 신규신청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구분은 재신청으로 선택 후 진행)**
3. 조회된 결과 중 반려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접수반려]** 클릭 – 결정처리 전에만 가능하며, 접수 반려 시 해당 정보를 그대로 유지되며 읍면동 접수직전**(저장상태)**으로 회귀입니다.
4. **[결정취소]**는 결정 직후, 바우처 송수신 관리메뉴에서 송수신 하기 전에만 가능하며, 결정취소 후, **[신청취소]** 또는 **[접수반려]** 가능합니다.
5. **바우처 송수신 이후**에는 **취소 및 반려가 불가**합니다.

행복e음 에너지바우처

시군구

바우처 송수신 관리

– 대상자 결정 처리 이후 송수신

신규신청 절차 (3)

한국에너지공단 32 한경정보기술

행복e음 에너지바우처

시군구 담당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송 처리

경로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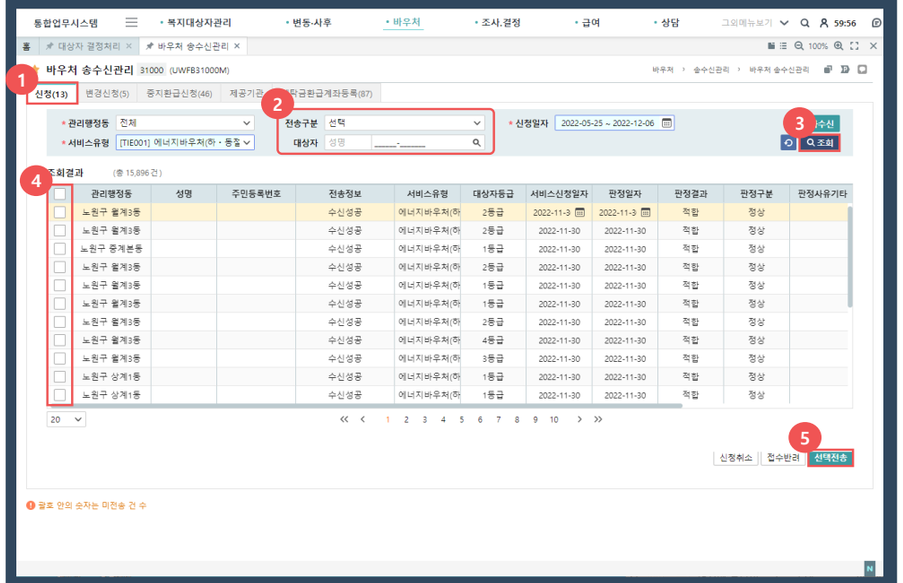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메뉴에서 송수신관리의 바우처 송수신관리를 선택할 때 나오는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송수신관리]-[바우처 송수신관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신청]** 또는 **[중지환급신청], [변경신청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과 [중지환급신청], [변경신청관리] 탭만 사용합니다.)
   - *[신청] 탭: 신청 또는 재신청의 경우, [중지환급신청] 탭: 중지신청의 경우, [변경신청관리] : 전화번호 변경의 경우*
2.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으로 선택, **[전송구분]과 [신청일자]** 등의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된 목록에서 전송이 필요한 대상자를 체크(V)합니다.
5. **[선택전송]**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바우처 금액이 생성됨 (전송이전에는 신청취소, 접수반려 가능)

- *(유의) [전송정보] 에서 [수신성공]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성공 후에 통지서 발행 등이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33 한경정보기술

읍면동 · 시군구

통지서 발행

-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 ***신규신청은 송수신 완료 시 바우처 신청 종료***

신규신청 절차 (4)

읍면동 · 시군구 통지서 발행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통지서 발행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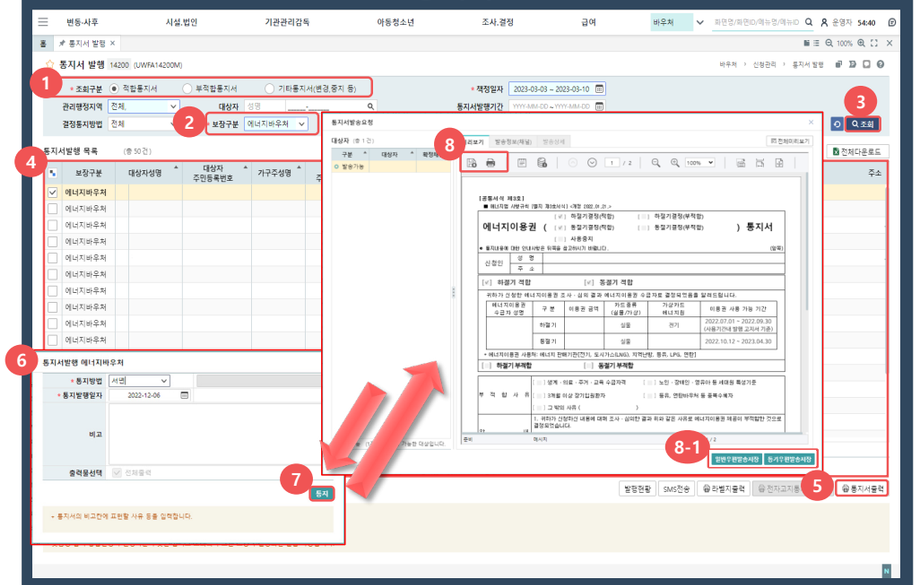

상세설명

❖ ***통지서 발행을 진행하는 화면***

1. **[조회구분]** 을 선택합니다.
2. **[보장구분]** 를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통지서발행 목록]** 화면에서 통지할 항목 체크
5. **[통지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통지서발행 에너지바우처] 팝업창**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7. **[통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인쇄 후 수기 발송 진행 시 **[통지서 발송요청] 팝업창에서** 저장 혹은 인쇄할 버튼을 클릭합니다.

8-1. 시스템을 통한 발송 시 **[일반우편발송저장], [등기우편발송저장]** 버튼으로 우편을 보낼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발송부서로 등록 필요합니다.(P38 참고)**

읍면동 · 시군구 통지서 발행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통지서 발행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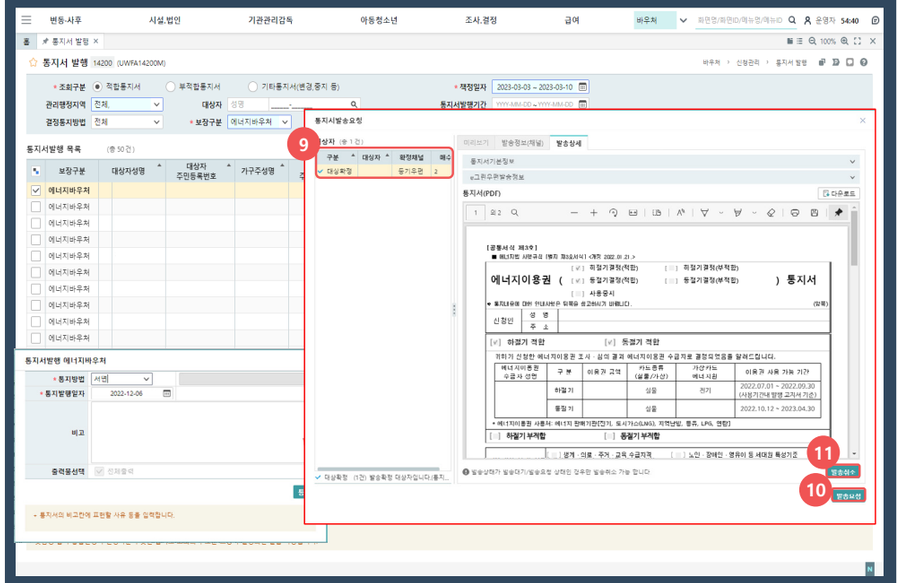

상세설명

❖ *통지서 발행을 진행하는 화면*

9. **[일반우편발송저장], [등기우편발송저장]** 을 선택한 대상자는 표시와 같이 구분이 변경됩니다.

10. **[발송요청]** 를 선택하면 상태가 **발송요청**으로 변경됩니다.

11.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송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발송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읍면동 · 시군구 통지서 발행

경로 : 통합알림 > 알림발송현황 > e그린우편/전자고지발송현황 > e그린우편/전자고지발송내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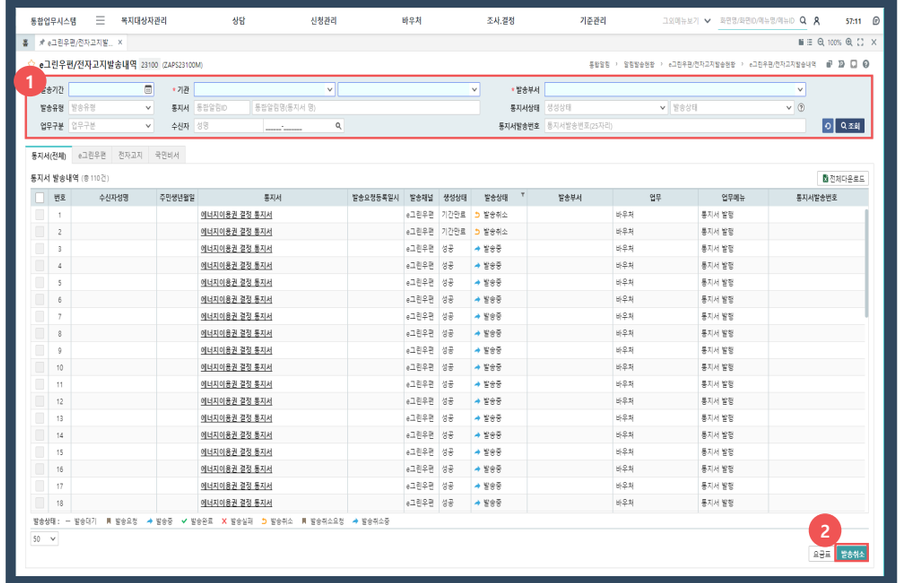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발행된 통지서의 발행 상태를 확인하는 화면*

1. **[통지서 명]**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결정 통지서]** 로 입력하고, 발송기간 등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송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발송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읍면동 · 시군구 통지서 발행

경로 : 복지광장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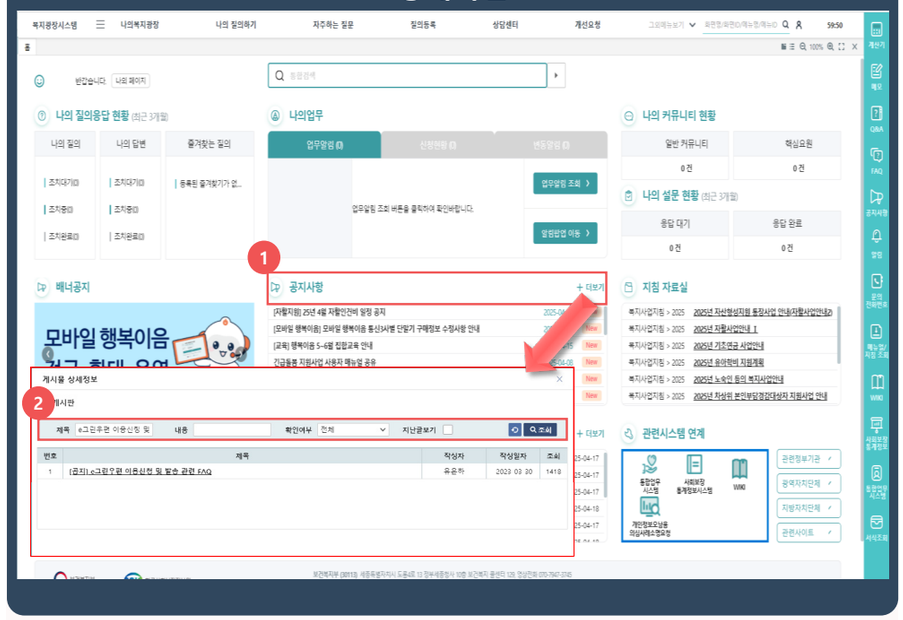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발행된 통지서의 발행 상태를 확인하는 화면*

1. **[공지사항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2. 제목에 **[e그린우편 이용신청 및 발송 관련 FAQ]** 를 입력 후 검색하여, 사전 부서 등록 절차 및 작성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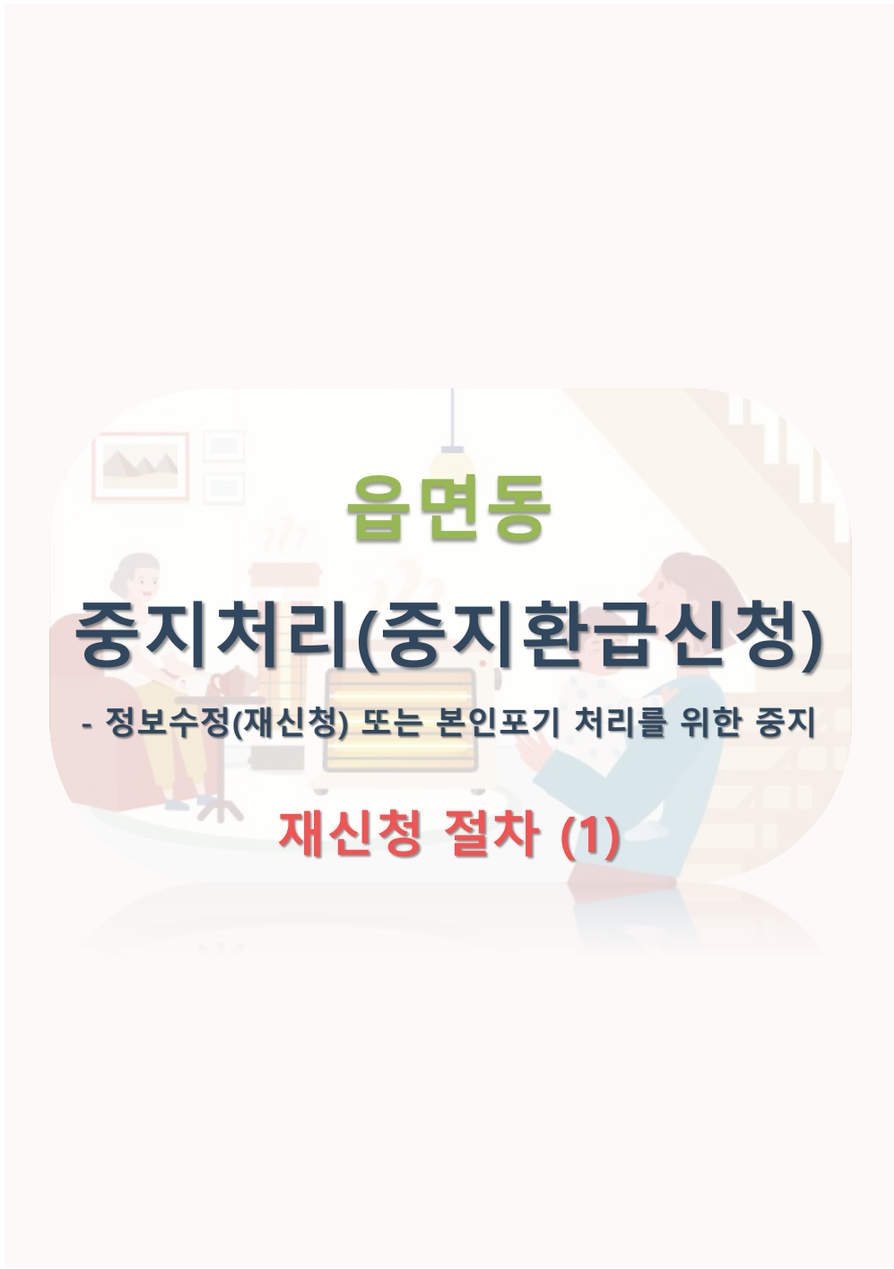

읍면동 담당자 중지 신청

경로 : 바우처 > 대상자 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팝업창)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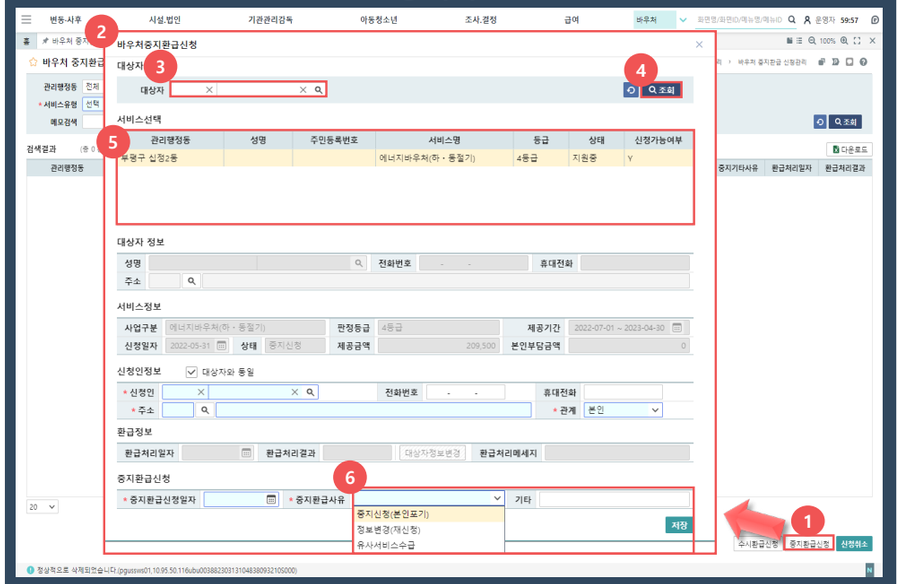

상세설명

❖ *지원 중인 서비스를 중지할 때 사용하는 화면*

1. **[중지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바우처 중지환급신청등록]** 화면이 뜹니다.
3. 검색할 대상자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4. 대상자가 조회되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5. 현재 지원중인 서비스 정보가 표시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6. **[중지환급신청]** 항목을 선택[**정보변경(재신청) 또는 중지신청(본인포기)**]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의) 사망, 전입 중지처리는 시스템에서 자동중지처리 되므로 담당공무원 임의로 중지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중지) 사망신고후 익일 7시35분, 전입신고후 익일 18시5분부터 처리 시작됩니다.*
- *사망신고,전입신고 후 발생 후 2일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시) 주민센터 사망신고일,전입신고일 (7월 6일) → 행복이음 시스템 자동중지적용일 (7월7일) → 7월 8일 재신청 진행*

한국에너지공단 40 한경정보기술

한국에너지공단 41 한경정보기술

시군구 중지환급 신청 건 전송처리

경로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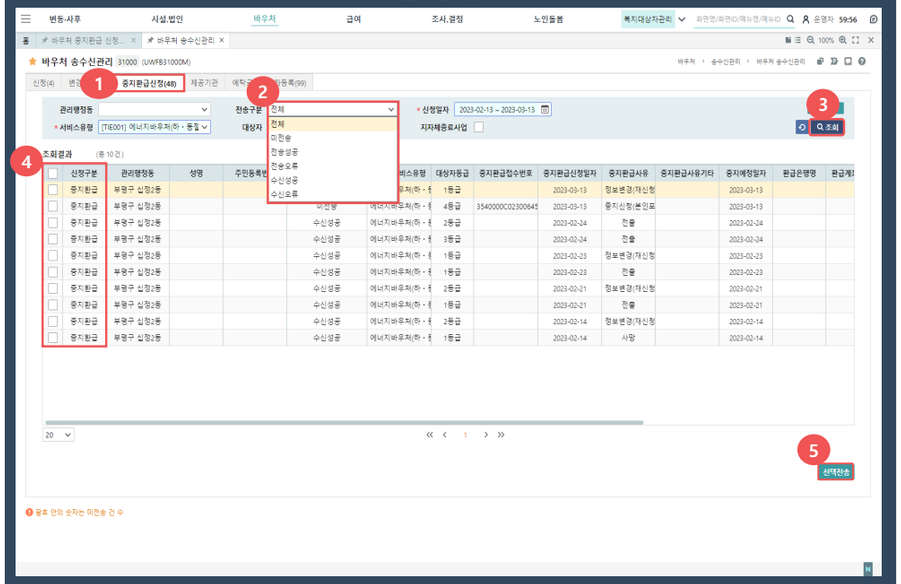

상세설명

❖ *중지환급신청의 경우에도 바우처 송수신을 완료하여야 '중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1. **[바우처송수신관리]**화면에서 **[중지환급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2. **[전송구분]**에서 **"미전송"** 또는 **"전송오류"**를 선택하여 전송이 필요한 목록을 불러옵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정보를 조회합니다.
4. **[신청구분]**이 **'중지환급'**로 되어있는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5. **[선택전송]**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바우처 금액이 생성됩니다.

•(유의) [전송정보]에서 "수신성공"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성공 이 되어야 중지처리가 완료됨

읍면동 • 시군구 원스크린

- 대상자 상태 확인 (신청상태, 중지상태, 전출입변동)

재신청 절차 (3)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원스크린

경로 : 바우처 > 대상자 관리 > **바우처 원스크린**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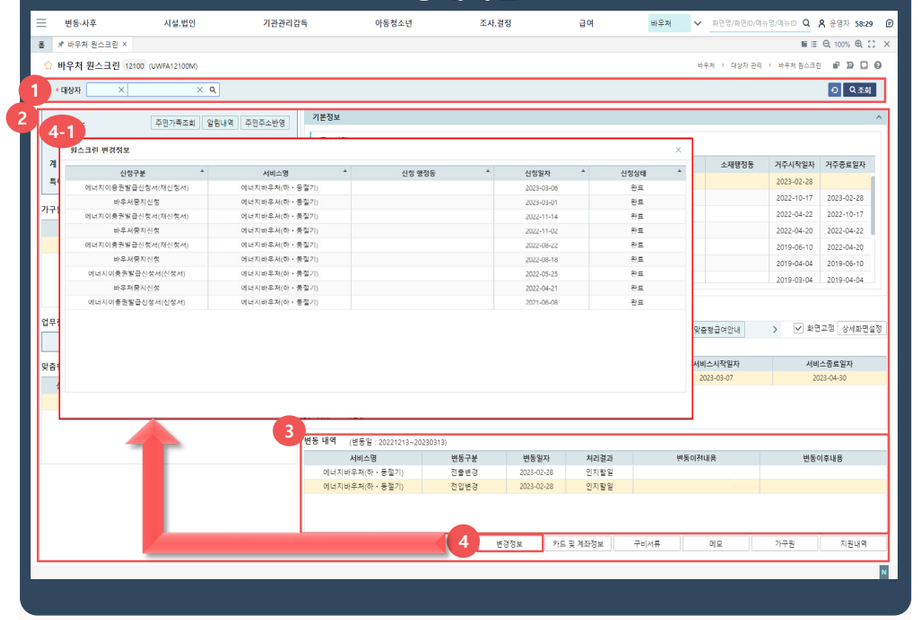

상세설명

❖ *대상자의 지원 중인 서비스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대상자 관리]-[바우처원스크린]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대상자 검색]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2. **대상자 상세 내역이** 화면에 출력 됩니다.
3. **전입전출 변동 시** 전입 전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변경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4-1의 팝업이 나옵니다.**

4-1. 기존 대상자 변경정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더블 클릭 시 **[바우처 신청상세], [바우처 중지환급신청 등록]** 화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바우처 재신청

– 재신청 (세대원수 변경,
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대상자 변경 등)

재신청 절차 (4)

변경 내용별 재신청 기간

-재신청은 중지이후 진행 가능

정보 변경 내용	변경 가능 기간
[세대원] 변경 세대원수 하향	'26. 6. 15 ~ '26. 6. 26 (단, '26. 6. 30. 기준 중지 상태인 수급자는 최초 재신청에 한해 '27. 5. 31. 까지 가능)
[동절기 이용권 변경] 실물/가상 → 다른 동절기 이용권	
[동절기 이용권 변경] 다른 동절기 이용권 → 실물/가상	`26. 6. 15. ~ `27. 5. 31.
[세대원] 변경 세대원수 상향/유지	
[동절기 고객번호] 변경	
[동절기 공급자] 변경	
[동절기 에너지원] 변경	
[대상자] 변경*	
[하절기 고객번호] 변경	
[하절기 공급자] 변경	
[주거형태] 변경	
[하절기 요금 미차감] 변경	

- *(자동중지) 사망신고 후 다음날 07시35분, 전입신고 후 다음 날 18시05분부터 처리*
- *26년 06월 30일 이후 중지 완료자는 [세대원(하향), 동절기 이용권(실물/가상 → 다른 동절기 이용권)] 변경 불가 / 26년 6월 30일까지 중지 완료 필수*
- *(대상자 변경)의 경우 변경할 대상자가 소득기준 가지고 있어야만 변경 가능*
  기존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한 변경 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세대원 중 누구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해당년도 사업기간만료일까지 지원 가능

읍면동 (정보 수정 시 – 중지처리를 하고 진행가능)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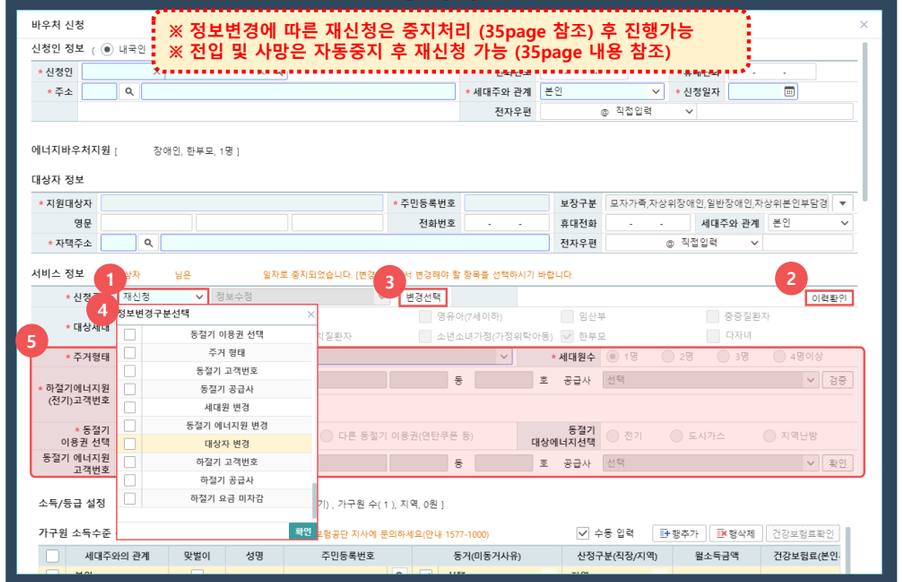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의 재신청(정보수정) 화면*

❖ 입력오류 등 대상자의 정보를 수정 해야 하는 경우, 중지처리를 진행 *(35page 참조)*한 후 재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홈(읍면동)]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대상자를 조회 선택*(14~16page참조)* 합니다.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세 서비스정보변경 *(43~47page 참조)*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4. [정보변경구분선택] 변경이 필요한 항목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5번**과 같이 항이 해당 항목이 활성화 됩니다.

➢ **('26.06.15~'27.05.31까지 변경가능 정보)**

✓ **하.동절기 고객정보 (고객번호, 공급사, 이용권 (다른 동절기 이용권 →실물/가상), 에너지원), 주거형태, 연락처**

읍면동 담당자 재신청(가상카드 에너지원 변경)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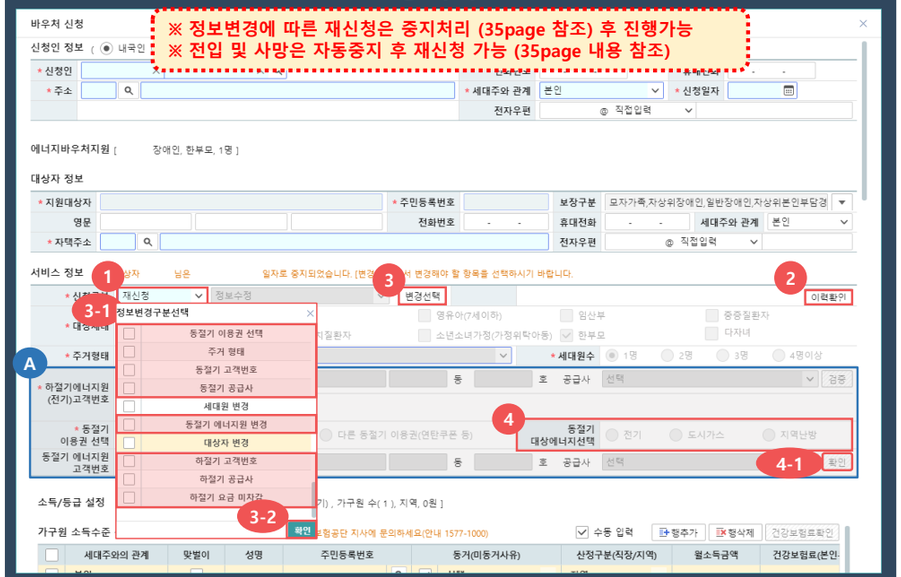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에너지원 변경*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 *전입전출로 인한 재신청 경우, [이력확인] 클릭 후 하•동절기정보(A영역)가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새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3-1. [이용권선택,동절기 고객번호, 공급자, 에너지원변경]를 선택하고, **3-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에너지선택]에서 동절기 에너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선택하고, 에너지고객번호, 공급자 등의 변경정보를 입력한 후 4-1.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 변경 시 (P17~P25) 참조

5. **[저장]**버튼을 클릭 후,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단, 동절기 이용권 변경 시 실물/가상 → 다른 동절기 이용권은 6월 26일까지 중지된 인원만 가능*

읍면동 담당자 재신청(세대원수 변경)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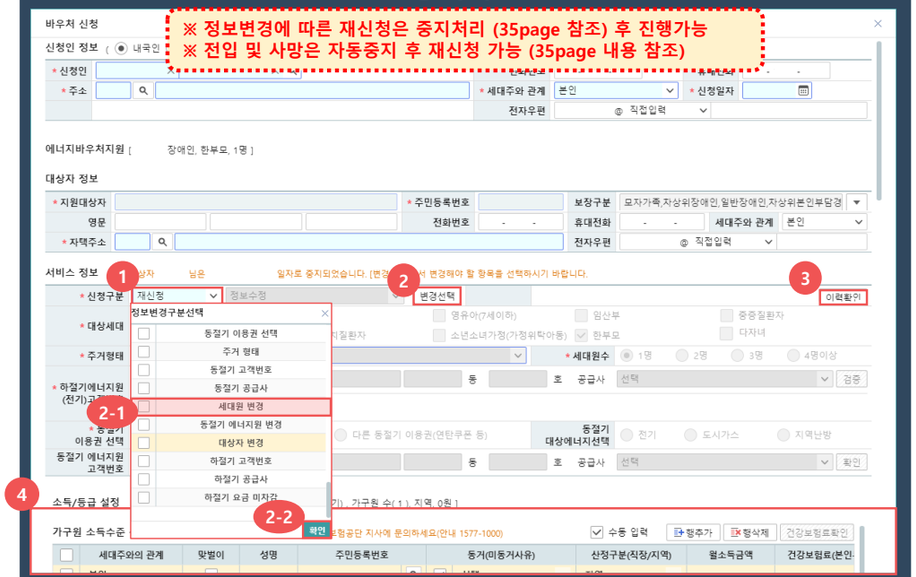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세대원 변경*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2.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2-1. [세대원 변경]를 선택하고, 2-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4.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은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 변경 시 (P17~P25) 참조

5. **[저장]**버튼을 클릭 후,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세대원수 변경] 시 이전에 신청되었던 세대원은 등본상 현재 시점의 세대원으로 자동변경 되어 보여집니다.*

읍면동 담당자 재신청(하절기 요금 미차감 변경)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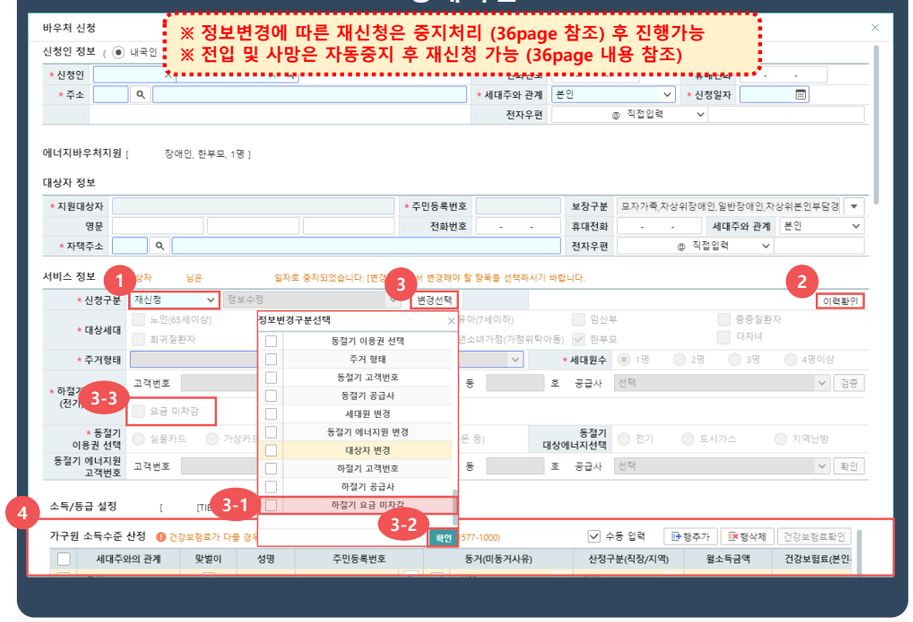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하절기 요금미차감*

1.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2.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신청정보를 조회합니다.
3. **[변경선택]** 클릭합니다.

3.1. **[하절기 요금 미차감]**를 선택하고, **3-2.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3. 재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을 원하는 경우 체크박스을 [**선택**]하시고, 원하지 않는 경우 체크박스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
※ 하절기 요금 미차감에 체크가 된 경우, 하절기 공급사 및 고객번호는 공백으로 저장됩니다.

4.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정보 변경 시 (P17~P25) 참조*
5. **[저장]**버튼을 클릭 후,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읍면동 담당자 재신청(대상자 변경)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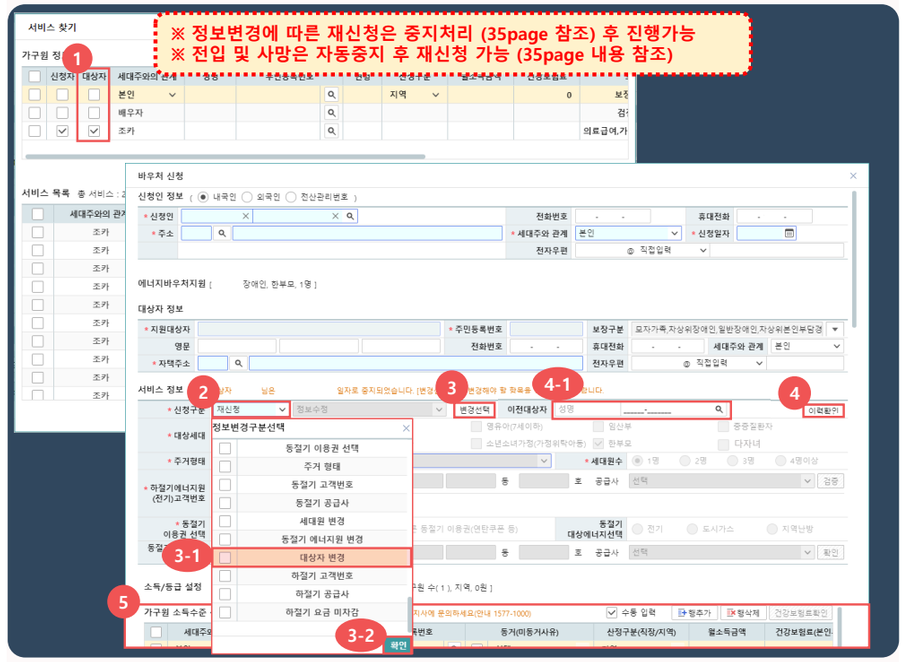

상세설명

❖ *재신청(정보수정)-대상자 변경*

1. **[서비스찾기]** 화면에서 변경할 대상자를 **[대상자]** 항목에서 변경 체크합니다.

** (주의) 변경할 대상자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함
** (주의) 사망중지 변경 시 수급 여부(소득기준)와 상관 없이 변경 가능
** (주의) 사망중지 변경 시 사망자가 아닌 변경할 대상자(세대원)으로 조회하여 신청 진행

2. **[바우처신청]** 화면에서 **[서비스정보]**영역의 **[신청구분]**을 **[재신청]**으로 선택합니다.
3. **[변경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3-1. **[대상자변경]만** 선택하고, **3-2.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력확인]** 버튼을 클릭 시 **4-1. [이전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대상자 정보입력 필요) ※ **추가 정보변경(이용권, 고객번호 등) 시 3번 항목 다시 진행 후 정보변경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등급설정], [카드정보], [구비서류]**의 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정보 변경 시 (P17~P25) 참조*
6. **[저장]**버튼을 클릭 후, **[신청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읍면동 담당자 대상자 변경으로 재신청 시 주의 사항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읍면동) > 서비스찾기 > 바우처 신청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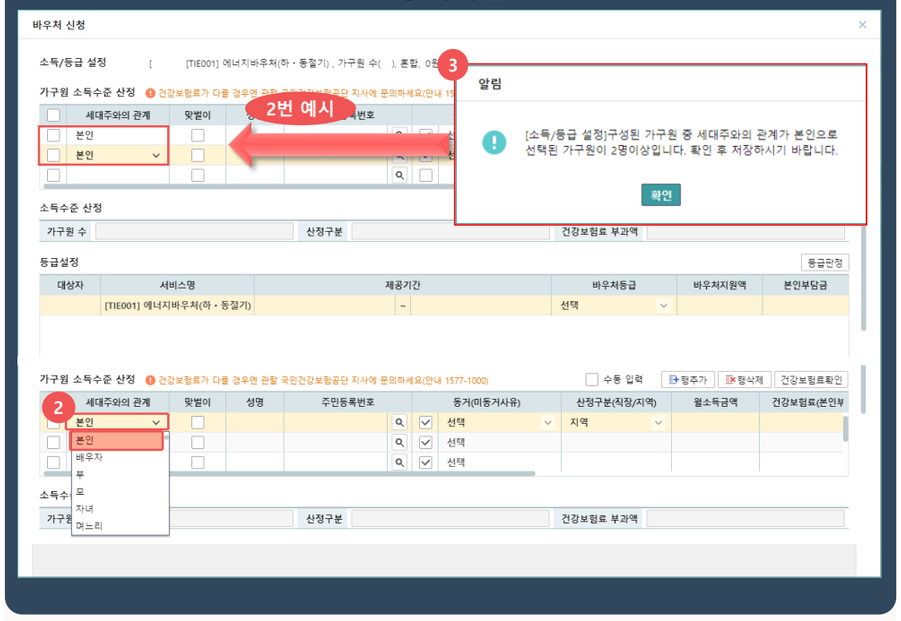

상세설명

❖ *대상자 변경으로 재신청 시 주의 사항*

**** (주의)변경할 대상자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수급자여야 함**
**** (주의)사망중지 변경 시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변경 가능**

1. **대상자변경** 절차를 진행 후 저장 시 ③ 과 같이 알림 메시지 발생 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은 [②]번과 같이 항목 클릭 시 해당된 가족관계로 변경 가능합니다.
3. [③] 경우 **[2번 예시]**과 같이 **세대원** 중 **본인 2개**로 체크되어 있어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할 대상자]**를 **본인 둔 상태에서** 다른 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변경하고 대상자 변경된 추가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e음 에너지바우처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신청현황

신청 및 재신청 후 신청 현황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54 한경정보기술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신청 현황 확인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신청 현황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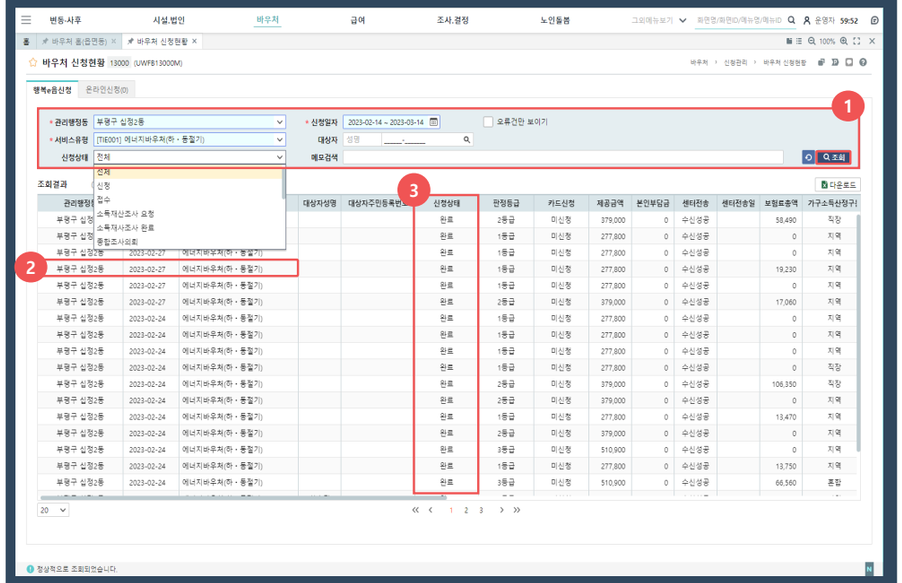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현황 조회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 신청현황]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서비스유형]**을 **[[TIE001] 에너지바우처(하 · 동절기)]**으로 선택, **[신청일자]**와 **[신청상태]** 등을 선택 후 **[조회]** 클릭하여 바우처 신청현황을 조회합니다.

2.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신청서의 상세보기 메뉴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다음페이지 참조)

3. 신청상태가 "신청"인 경우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설명]

신청 :읍면동에서 [저장] 클릭 후 신청상태
접수 :읍면동에서[신청접수] 클릭 후 접수상태
판정 : 시군구에서 결정한 상태
응답대기 : 신청정보 송신(시군구) 후, 바우처 생성 대기 상태
완료 : 바우처 생성 및 모든 절차 완료 상태(통지서 출력가능)
신청취소:읍면동, 시군구에서 신청을 취소한 상태 (수정 불가)
읍면동 신청취소 : 신청 상태에서 가능
시군구 신청취소 : 접수상태에서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55 한경정보기술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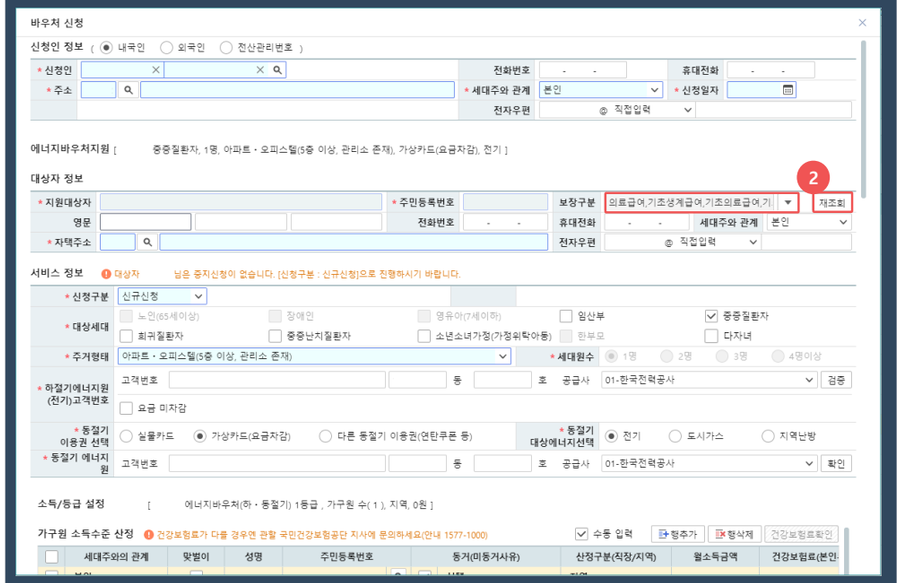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조회/수정하는 상세 보기 화면(1/3)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1. 신청현황의 목록에서 선택한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표시하고 **[신청자]/[대상자]**를 제외한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상태일 경우 [재조회] 버튼 클릭 시 대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구분의 재조회가 가능합니다.**
   (ex: 기초의료급여,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기초주거급여 등의 재조회)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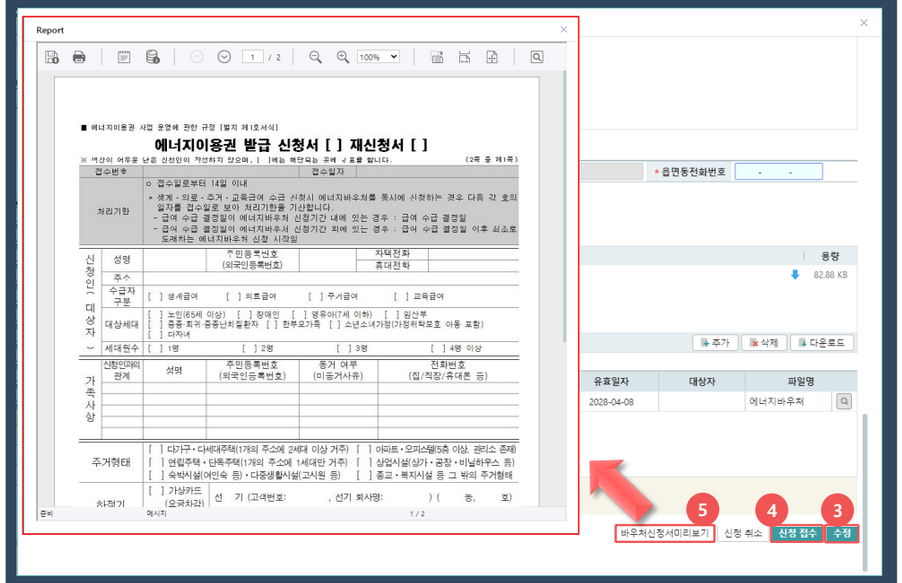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조회/수정하는 상세 보기 화면(2/3)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3.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수정을 클릭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접수]**를 클릭하여 **저장** 상태인 **신청서를 접수 처리**합니다.
   ※ 단, 접수 이후에는 정보 수정 하실 수 없으며, 신청 내용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5. 작성된 바우처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양식으로 확인합니다.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신청서 조회/수정 상세 보기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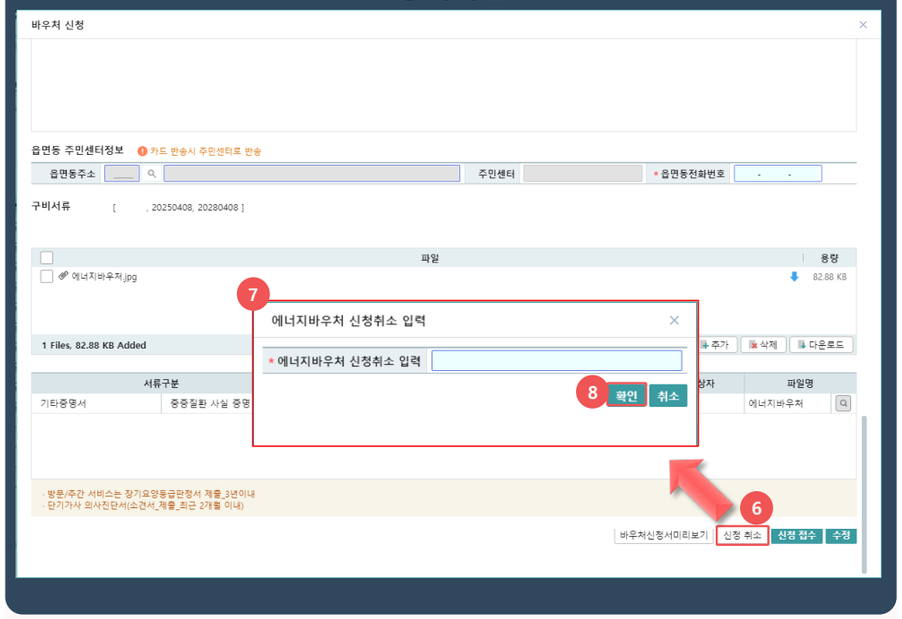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조회/수정하는 상세 보기 화면(3/3) (접수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6. 신청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취소 클릭 시 해당 입력창이 열립니다.

8. 신청취소 사유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신청 취소처리됩니다.

읍면동 · 시군구 바우처 대상자현황 확인

경로 : 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대상자현황**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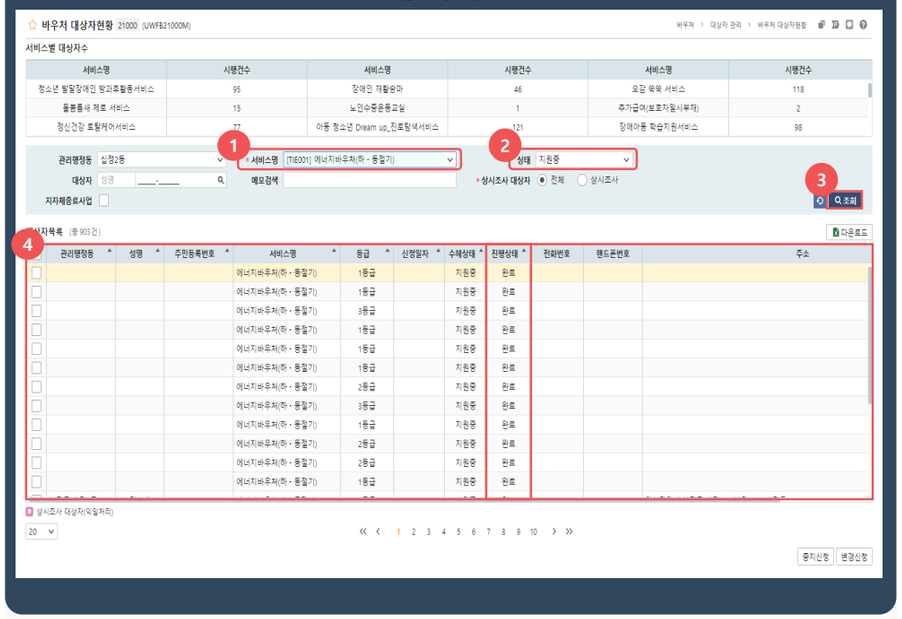

상세설명

❖ *대상자 현황*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대상자관리]-[바우처대상자현황]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서비스명]** 을 **[에너지바우처(하,동절기)]**으로 선택합니다.
2. **[상태]** 를 선택합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자목록]** 화면에서 "전체/중지/ '지원 중"인 대상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 바우처 홈(시군구)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홈(시군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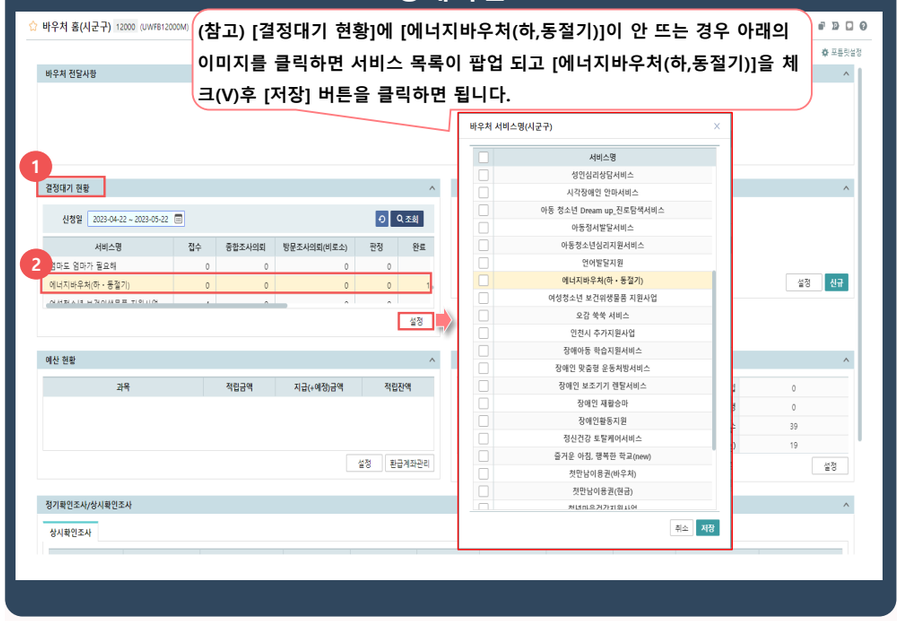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홈 (시군구)메인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바우처홈(시군구)]를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결정대기 현황]에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의 지원 현황이 신청, 접수, 완료 등으로 표시 됩니다.

2. 결정대기 현황의 신청상태의 건수를 더블 클릭하면 각 상태에 따라 화면이 팝업 됩니다.
   * 검색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 접수, 방문조사의뢰, 판정, 완료 건수 더블 클릭 -> **[바우처 결정처리]** 화면 팝업
➢ 전송오류, 수신오류, 미전송, 수신성공 건수 더블 클릭 -> **[바우처 송수신관리]**화면 팝업

✓ **기능설명**
- *[바우처 전달사항] 현재시간표시 및 이슈가 되는 3가지를 등록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대기 현황대상자] 결정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 통계입니다.*

읍면동 담당자 이의신청 등록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신청등록**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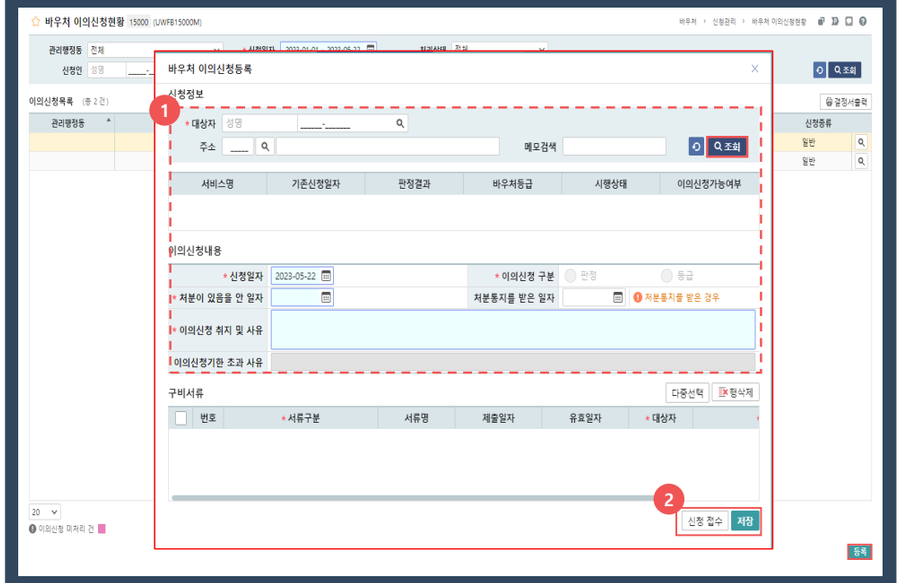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이의신청 등록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이의신청]-[이의신청등록]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신청정보]**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대상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판정결과 및 등급정보 등의 내역 조회됩니다.
2. 신청 대상자의 **이의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신청이 **저장되고 [신청접수] 버튼을** 접수처리가 완료 됩니다.

[공통] 이의신청 현황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현황**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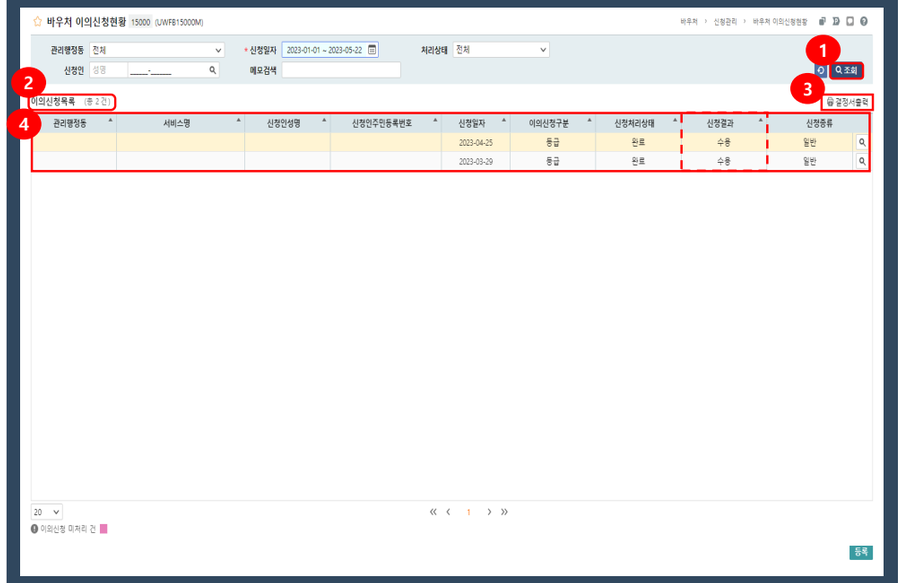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이의신청 현황 확인 화면*

1. 조회영역에서 관리행정동과 신청일자 등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버튼] 을 클릭 합니다.
2. 현재 이의신청 중인 대상자에 대한 현황이 이의신청목록에 표시됩니다.
3. 목록에서 신청처리상태 및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목록의 해당 신청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의신청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처리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기능설명**

- ***[결정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 이의신청 결정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이의신청 > 바우처 이의신청결정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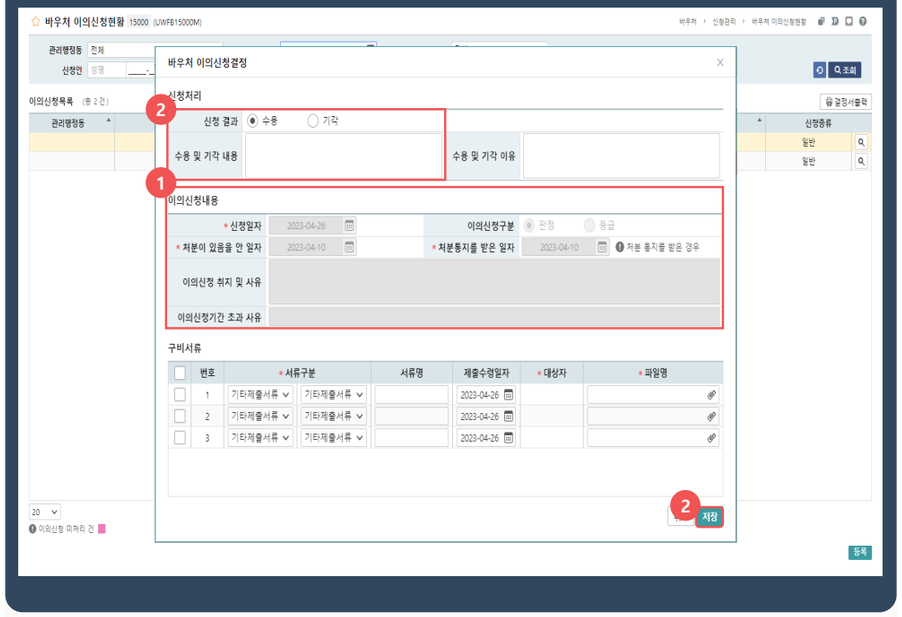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이의신청 결정처리 화면*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관리]-[이의신청]-[바우처이의신청결정]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이전 메뉴인 이의신청 현황의 목록에서 선택한 이의신청 신청자의 등록된 이의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합니다.

2. 신청처리영역에서 "신청결과"를 선택하여 [저장버튼]을 클릭 결정처리를 완료 합니다.

✓ **기능설명**

- ***이의신청 처리영역에서 신청결과가 수용처리 가 되면 신규 신청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신청현황 메뉴로 이동 됩니다.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신청현황조회 (1/3)

경로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 > **신청연계현황관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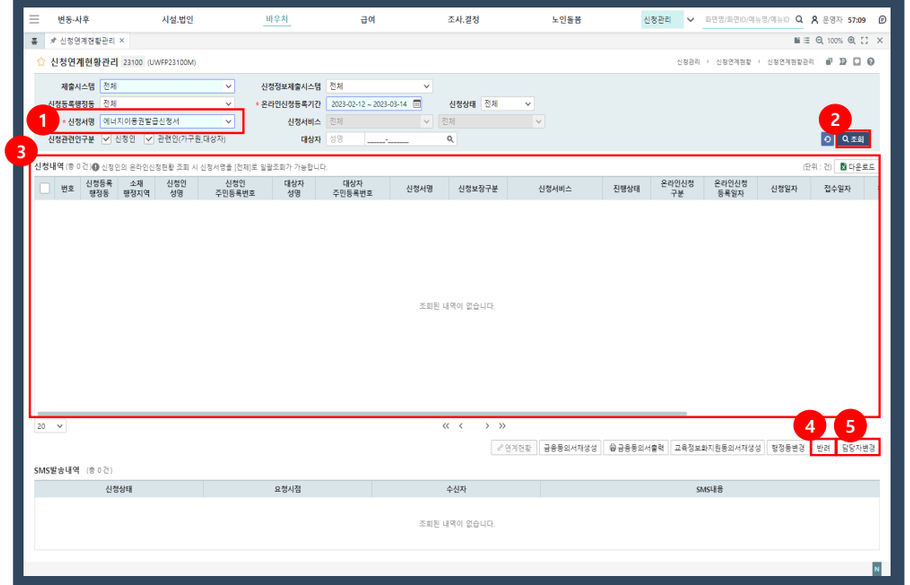

상세설명

❖ *온라인신청현황조회*

1. **신청서명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선택합니다.**
2. **신청내역 조회합니다.**
3. **신청내역 상세보기**
   - 목록 더블클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온라인반려처리**
   -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신청 항목을 클릭하고 [온라인반려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합니다.
5. **담당자정보관리**
   - 담당자 정보관리 팝업화면 생성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화면 오픈 시 팝업 창 자동 생성됩니다.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신청현황조회 (2/3)

경로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 > **신청연계현황관리**

상세화면

상세설명

❖ *담당자정보 관리*

1. **행정동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선택**
   - 상세정보의 성명, 전화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합니다.
   - 전화번호가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개인정보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연락처 수정 후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주의 사항**

※ ***온라인신청서의 접수, 반려, 결정 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등록된 담당자의 연락처가 첨부됩니다.***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신청현황조회 (3/3)

경로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 > 신청연계현황관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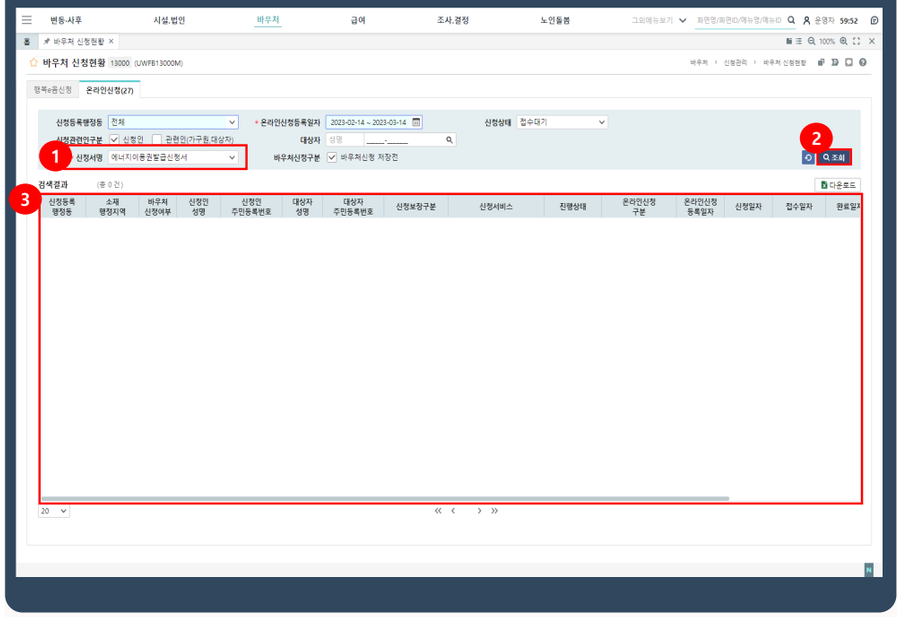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현황*

1. **신청서명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선택합니다.**
2. **신청내역 조회**
3. **신청내역 상세보기**

- 목록 더블클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상세화면으로 이동입니다.

✓ **주의 사항**

※ ***온라인신청에서 상세보기창으로 이동 후 저장 버튼 클릭 전까지 바우처신청현황 > 행복이음 신청(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상세_온라인 신청 (1/3)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온라인신청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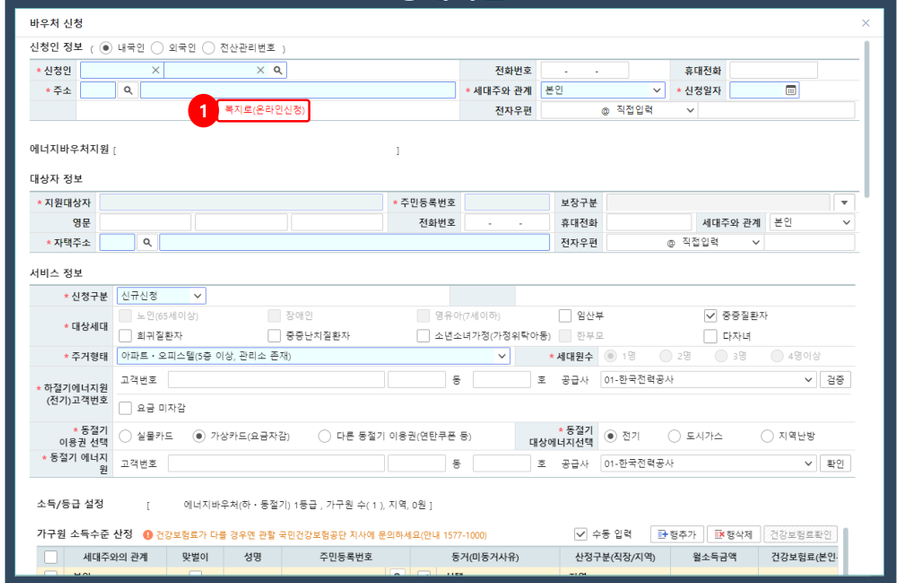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상세*

1. **온라인신청으로 연계된 신청서는 신청일자 우측에 복지로(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임신) 문구가 표기됨**

- 상세정보의 성명, 전화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상세_온라인 신청 (2/3)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온라인신청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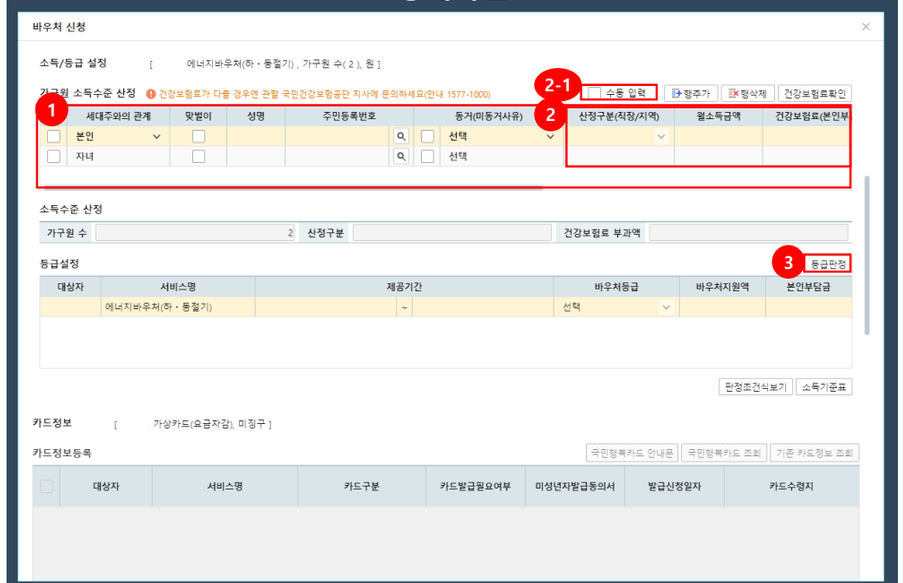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상세*

1. **세대원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정보가 실제 등본의 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의 경우 신청자의 입력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세대원을 재조회합니다. 세대원 조회 중 연계 실패 알림이 나왔을 경우, 세대 구성을 재확인 후 진행 필요합니다.**
2. **산정구분 및 건강보험료가 비어있을 경우, 2-1을 클릭하여 기입합니다.**
3. **산정구분 및 건강보험료가 입력 완료되었을 경우 등급판정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신청상세_온라인 신청 (3/3)

경로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신청현황 > 온라인신청 > **바우처신청상세**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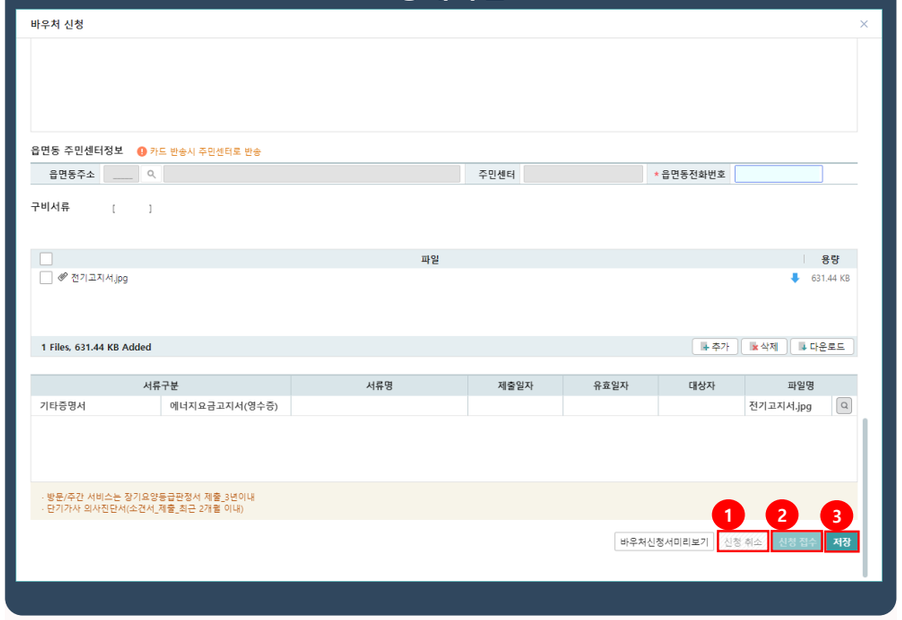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신청상세*

1. 신청취소 버튼 클릭 시 온라인신청서에 대한 반려처리 됩니다.
현재 저장 후에 신청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반려 시 복지로로 반려정보가 연계되며, 민원인에게 SMS 발송됩니다.

2. 저장

- 온라인신청서의 경우 신청접수 전 반드시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접수

- 신청접수부터는 기존 방문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접수, 판정 등 진행단계에 따라 민원인에게 SMS자동 발송됩니다.
  복지로로 신청한 대상자만 SMS 발송 됩니다.

※ *주의 사항*
※ ***SMS 발송 시 담당자의 연락처가 같이 첨부되어 발송되므로, 담당자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담당자 바우처 변동현황

경로 : 바우처 > 변동 사후 > **바우처 변동현황**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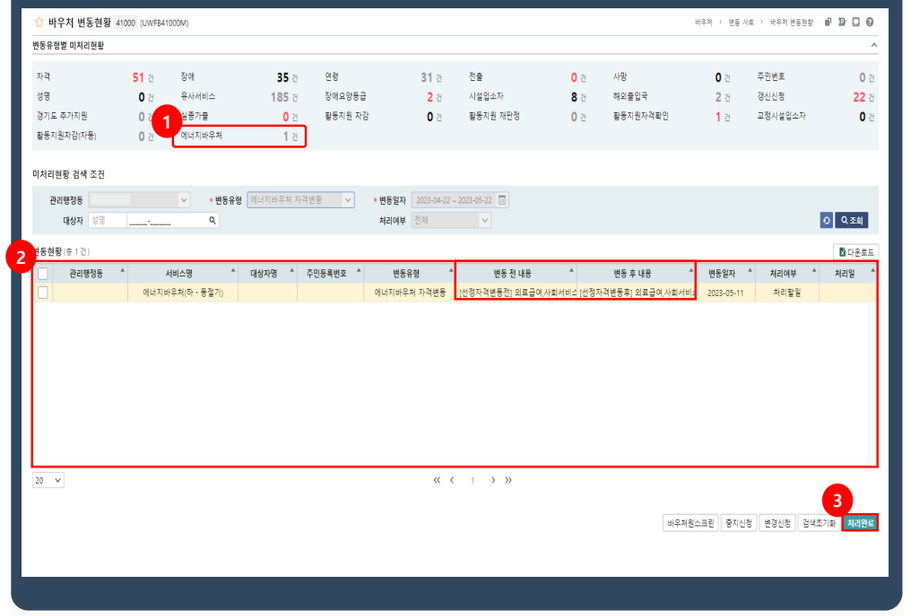

상세설명

❖ *바우처 변동현황*

➢ **로그인 후 [바우처]** 메뉴에서 **[변동 사후]-[바우처 변동현황] 을 클릭하여** 화면에 접속합니다.

1. [건수]를 클릭하여 바우처 변동현황을 조회합니다.

2. 자격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들이 조회되며 **변동 전 자격과 변동 후의 자격 확인 가능**
- 변동 전 내용 : 자격 변동 전 자격을 충족하던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 변동 후 내용 : 자격 변동 후 현재 충족하고있는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3. 체크박스에 체크된 대상자들의 처리여부를 처리완료로 수정합니다.

✓ **기능설명**
-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없어 [저장]단계까지만 된 신청자 중에서 자격을 취득하면서 신청가능한 상태로 변경된 대상자들이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 *변동 전 내용에서는 없던 '에너지바우처'가 변동 후 내용에 추가된 것 확인 가능*

읍면동 담당자 중지 신청

경로 : 바우처 > 대상자 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팝업창)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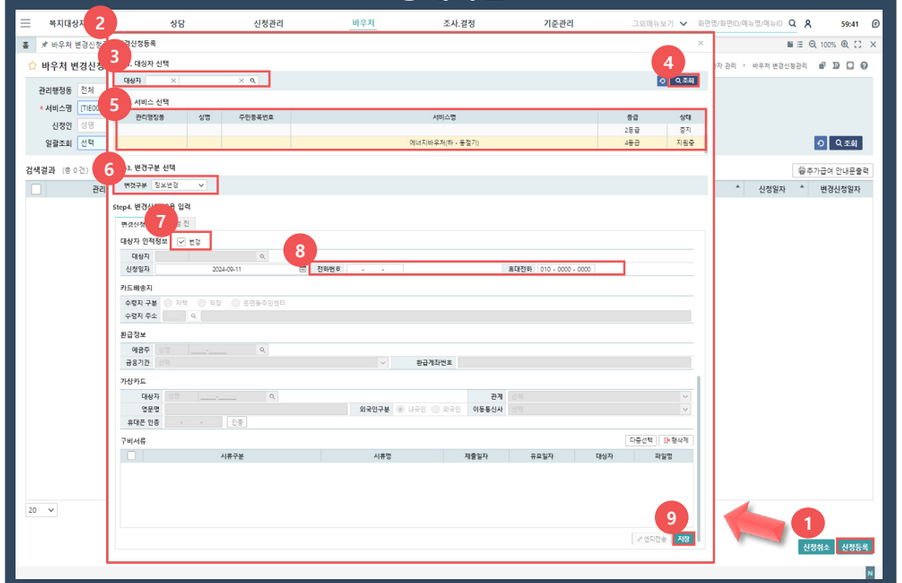

상세설명

❖ *지원 중인 서비스 정보를 변경신청할 때사용하는 화면*

1. **[신청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변경신청등록]** 화면이 뜹니다.
3. 검색할 대상자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4. 대상자가 조회되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5. 현재 지원중인 서비스 정보가 표시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6. **[변경구분]**을 **[정보변경]**으로 선택합니다.
7. **[변경]**을 체크합니다.
8. 변경할 전화번호 혹은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9.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군구 중지환급 신청 건 전송처리

경로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바우처송수신관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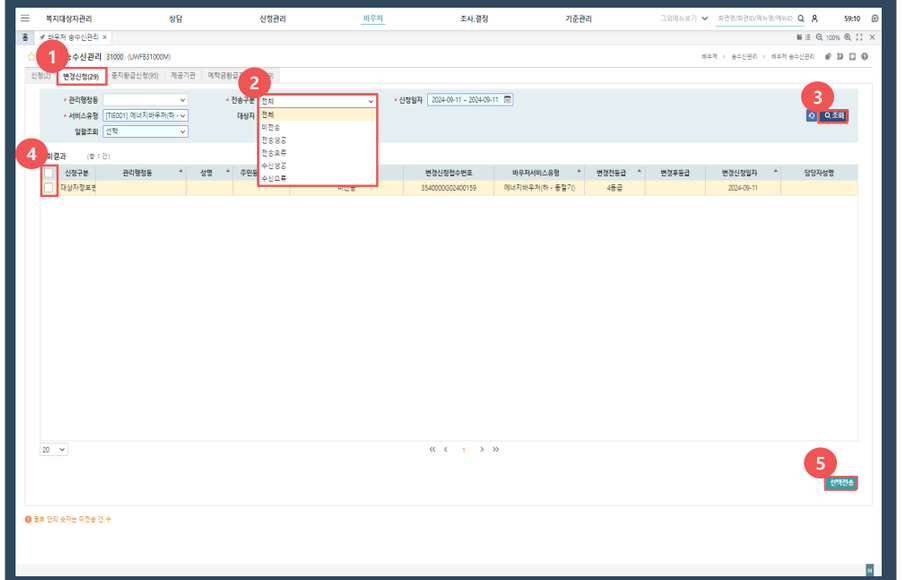

상세설명

❖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바우처 송수신을 완료하여야 변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1. **[바우처송수신관리]**화면에서 **[변경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2. **[전송구분]**에서 **"미전송"을** 선택하여 전송이 필요한 목록을 불러옵니다.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정보를 조회합니다.
4. 송수신을 진행할 대상자를 체크합니다.
5. **[선택전송]**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유의) 현재 전자바우처로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포탈로 연계 기능은 구현 진행중입니다.(현재 1개월 주기로 업데이트중)*

1. (엣지, 크롬) 쿠키 및 캐시 삭제 (1/4)

- 엣지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1/2)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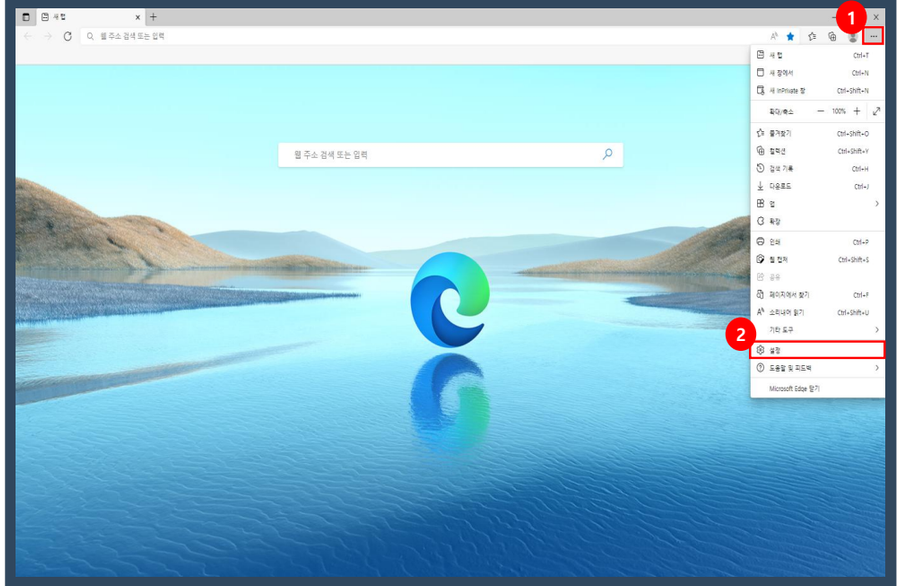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엣지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

1.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설정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엣지, 크롬) 쿠키 및 캐시 삭제 (2/4)

- 엣지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2/2)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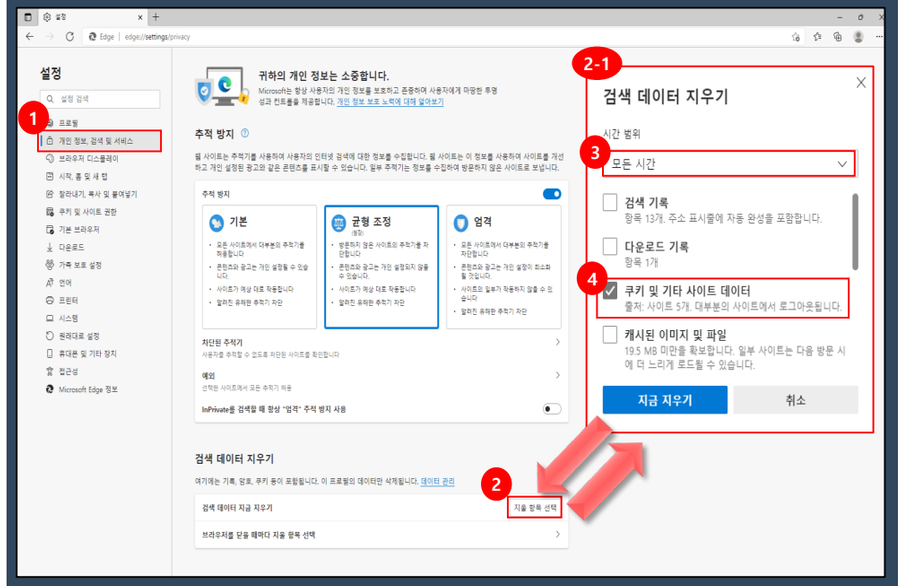

상세설명

❖ *엣지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

1.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지울 항목 선택]**을 선택하여 2-1.[검색 데이터 지우기] 팝업을 띄웁니다.
3. 시간범위를 [모든 시간]으로 선택합니다.
4.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를 체크하여 지금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1. (엣지, 크롬) 쿠키 및 캐시 삭제 (3/4)

- 크롬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1/2)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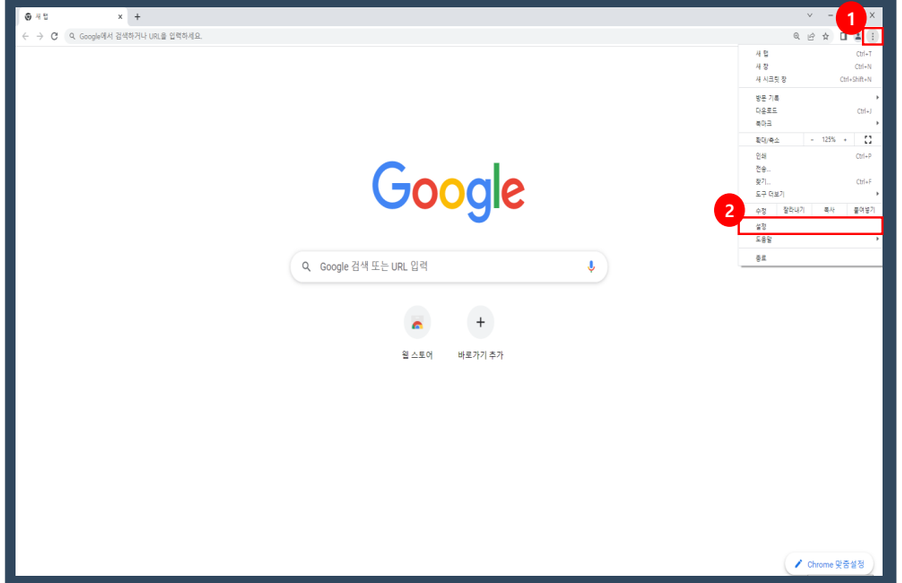

상세설명

❖ *크롬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

1.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설정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엣지, 크롬) 쿠키 및 캐시 삭제 (4/4)

- 크롬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2/2)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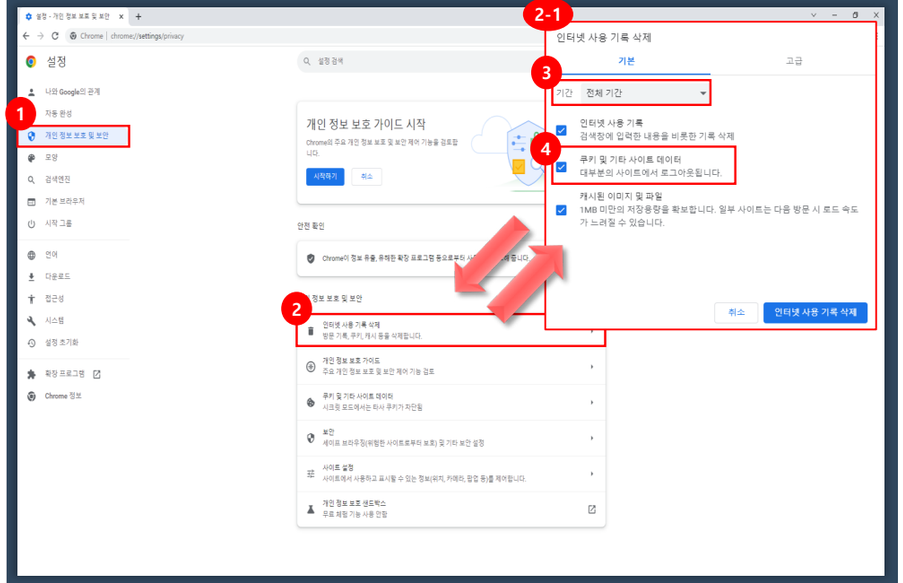

상세설명

❖ *크롬 쿠키 및 캐시 데이터 삭제*

1.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를 클릭합니다.
2.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선택하여 **2-1.[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팝업을 띄웁니다.
3. 기간을 [모든 기간]으로 선택합니다.
4.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를 체크하여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합니다.

2. 외국인 성명 보정 (1/2)

경로 : 경로 미존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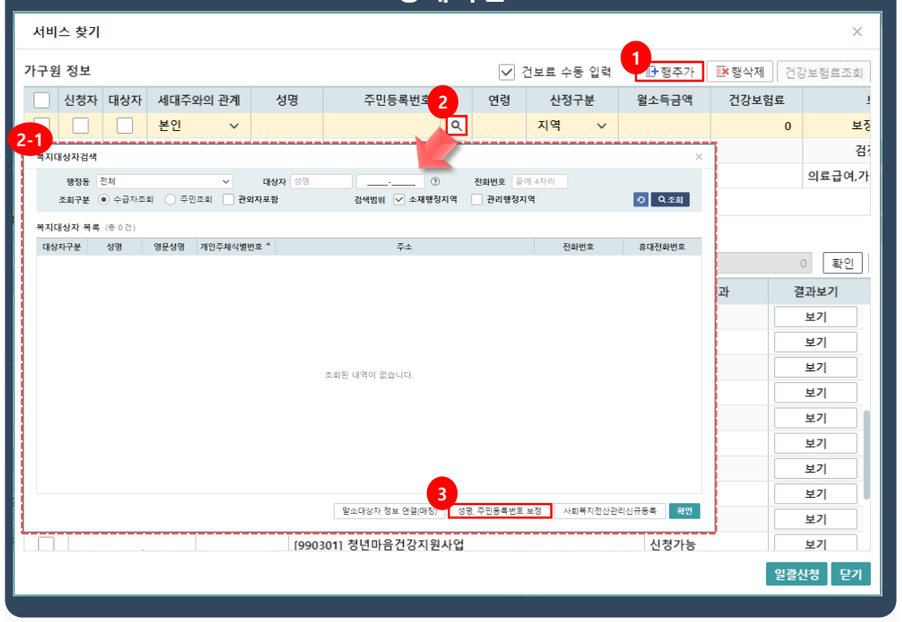

상세설명

❖ *외국인 성명 보정 (외국인의 성명이 한글이 아니라 영문인 경우)*

1. **[행추가]**를 클릭하여 외국인을 입력할 행을 추가합니다.

2.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2-1. [복지대상자검색]** 팝업을 확인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2. 외국인 성명 보정 (2/2)

경로 : 경로 미존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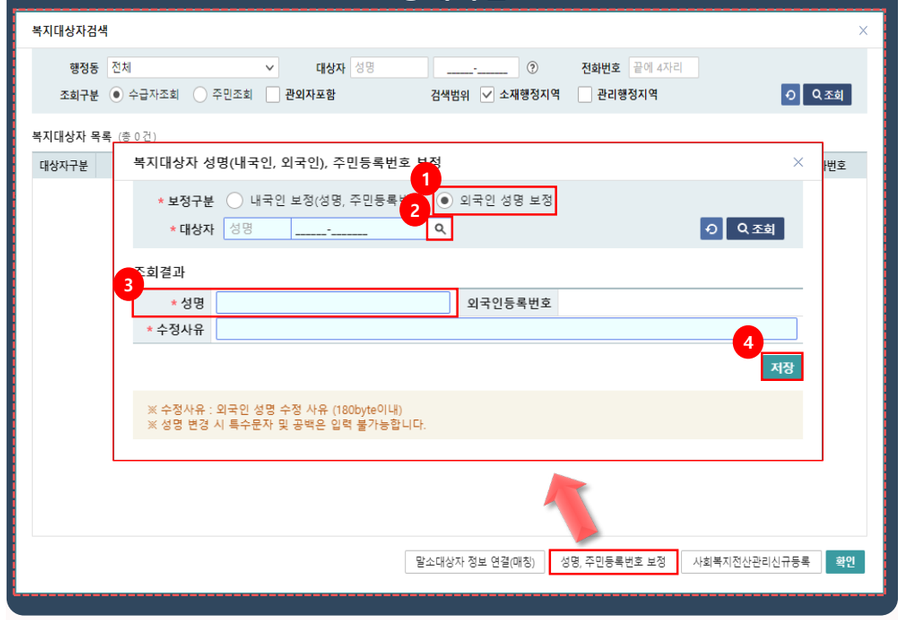

상세설명

❖ *외국인 성명 보정 (외국인의 성명이 한글이 아니라 영문인 경우)*

1. **[복지대상자 성명(내국인,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보정]** 팝업에서 **[외국인 성명 보정]**을 클릭합니다.

2. 외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을 입력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조회가 완료되면 **[성명에 입력된 영문 성명을 한국어로 입력]**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하여 성명 보정 처리를 완료합니다.

3. 주소 재입력

경로 : 경로 미존재

상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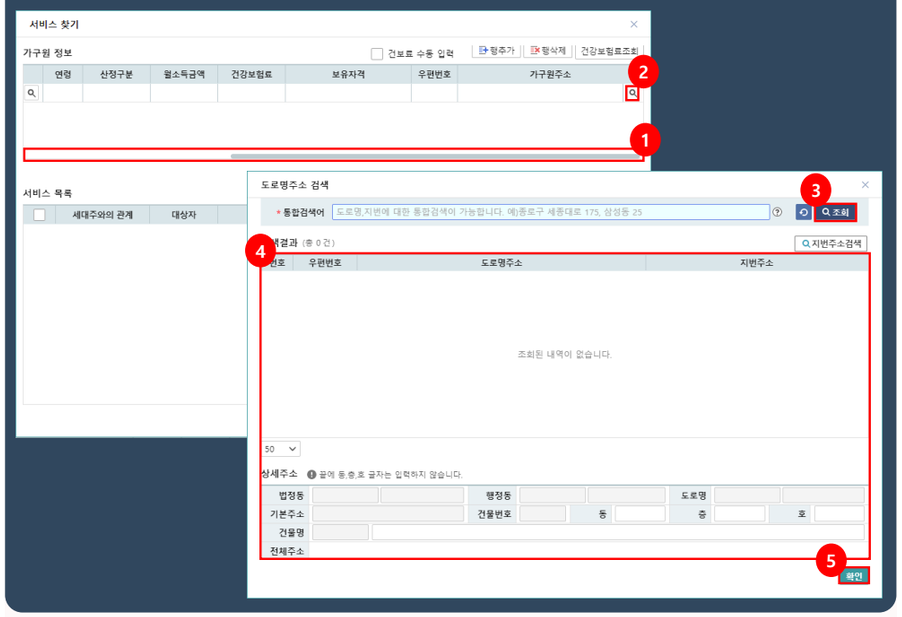

상세설명

❖ *주소 재입력(입력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1. [좌우 스크롤]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2.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주소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주소를 선택]** 후 필요시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붙임9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 기능수정 발생 시, 업무포털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예정

https://www.energyv.or.kr/workp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가이드

2026. 5.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CONTENTS

1 회원가입
2 로그인
3 대시보드
4 수급자 현황
5 수급자 현황(등유·LPG)
6 유형별 수급자 현황
7 예외지급 관리
8 가맹점 현황
9 게시판 현황

01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회원정보 입력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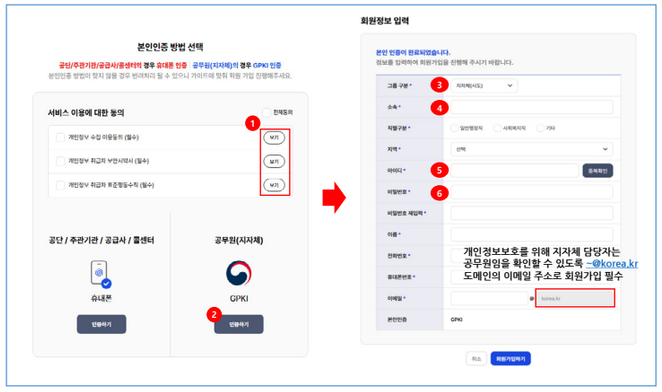

1. **[보기]** 버튼 클릭
   → 내용 확인 후 **[동의]**
2. GPKI 인증(필수)
   ※ **지자체는 반드시 GPKI로 인증 필요**
   (휴대폰으로 인증 시, 지자체 권한으로 생성불가)
3. **[그룹 구분] 신청인 본인이 해당하는 그룹을 선택**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읍면동),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중 하나를 선택
4. **[소속] 선택한 그룹 구분별 아래 형식에 맞춰 소속 기재**
   시도 : ~시청 ~과
   시군구 : ~구(군)청 ~과
   읍면동 : ~동 행정복지센터
5. **[영문] 혹은 [영문 + 숫자] 조합**
   (숫자만으로 ID 설정 불가)
6.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8~13자리 조합의 비밀번호 설정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1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요청서 양식 및 요청공문 샘플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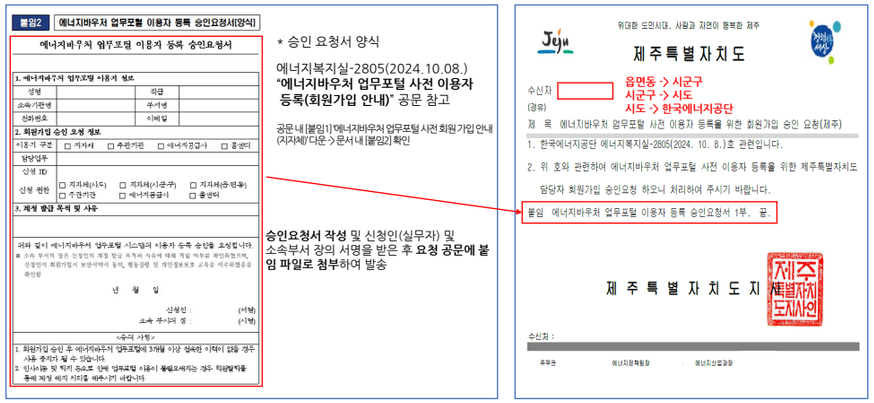

* 승인 요청서 양식

에너지복지실-2805(2024.10.08.)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사전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안내)"** 공문 참고

공문 내 [붙임1]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사전 회원가입 안내(지자체) 다운 -> 문서 내 [붙임2] 확인

승인요청서 작성 및 신청인(실무자) 및 소속부서 장의 서명을 받은 **후 요청 공문에 붙임 파일로 첨부**하여 발송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1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체계 및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승인 체계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승인) ⇄ 시도 (요청 / 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요청 / 승인)

승인 절차

①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상에서 **[회원가입] 신청**

② 위 [승인체계]에 따른 승인 담당 기관에 **승인 요청서 공문** 발송 (다음 페이지 참고)

③ 승인요청 공문을 받은 시군구 혹은 시도 담당자는 내용 일치 여부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

* 승인 요청서 양식: 에너지복지실-2805(2024.10.08.)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사전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안내"** 공문 참고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2 로그인

로그인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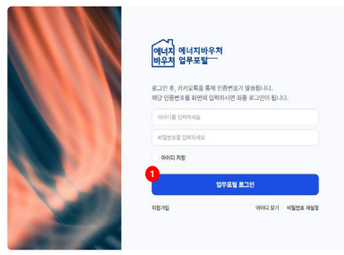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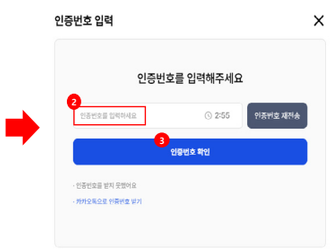

1.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2. 3.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 후 **[인증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2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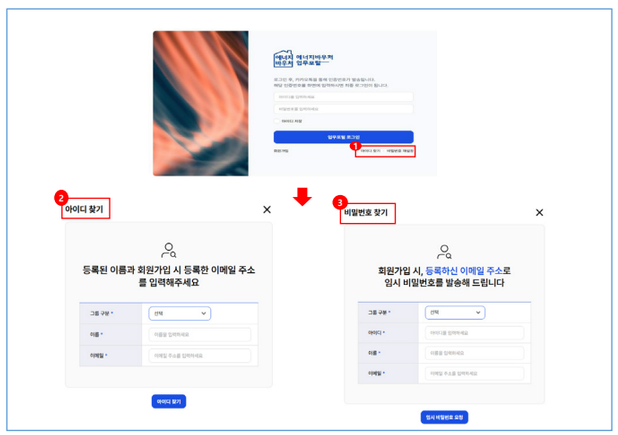

1.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재설정]**
   ID /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클릭

2. **아이디 찾기**
   1) 본인의 소속에 맞는 올바른 그룹 선택 **(읍면동/시군구/시도)**
   2)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입력
   3) **[아이디 찾기]** 버튼 클릭

3. **비밀번호 재설정**
   1) 본인의 소속에 맞는 올바른 그룹 선택 **(읍면동/시군구/시도)**
   2) **ID / 이름 / 이메일 주소** 입력
   3) **[임시 비밀번호 요청]** 버튼 클릭
   4)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전송
      →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3 대시보드

대시보드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1. **[사이드바 열고 닫기]**
   클릭 시 **메뉴 숨김 / 펼침** 가능

2. **즐겨찾기 등록**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대해 ★(별) 모양을 눌러 즐겨찾기 추가
   (최대 **10개** 등록가능)

3. **즐겨찾기 편집**
   X 버튼을 클릭 시 즐겨찾기 메뉴에서 삭제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2 로그인

회원 정보 변경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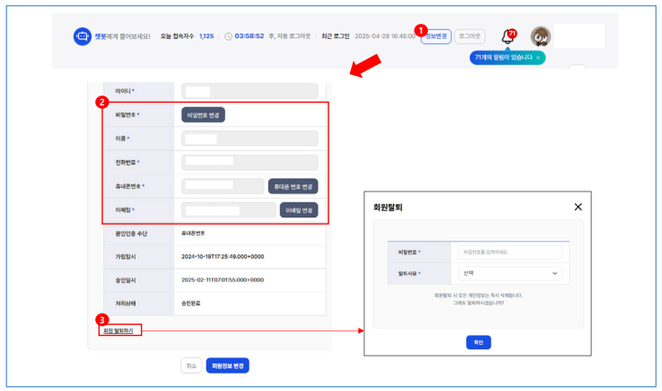

1. **[정보변경] 탭**
   업무포털 **우측 상단**에 존재

2. **변경 가능한 정보**
   - 비밀번호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3. **[회원 탈퇴]**
   비밀번호, 탈퇴사유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담당자 변경 시, 기존 담당자 회원 탈퇴 필수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4 수급자 현황

대상자 조회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수급자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1. **[검색조건]**
   사업년도, 수급자명, 생년월일 등 조회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조건 설정

2. **[조회]**
   검색조건 설정 후 조회 시, **해당 조건에 맞는 수급자의 리스트** 표시

3. **[초기화]**
   설정 해 둔 검색조건을 초기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4 수급자 현황

대상자 상세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1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수급자의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암호: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 제외)**
  ex) 010-1234-3333 → 01012343333

2 [엑셀 다운로드 사유]

- 다운로드 사유,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기재 후 **[확인]** 버튼 클릭
- 다운로드 사유 '기타' 선택 시 자유롭게 입력 가능하지만, **부적절한 사유 작성** 시(ex. 123, 가나다 등) **비정상 다운로드 행위로 간주 및 소명 요청 예정**이므로 적절한 다운로드 사유 작성 필요

3 [상태]

- 수급자의 **수급여부(사용중 / 사용중지)** 확인

4 [대상자 상세조회] 이동

- **수급자명** 클릭 시 **대상자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5 수급자 현황(등유·LPG)

재사용 신청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수급자현황(등유 ·LPG)]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종류가 '가상카드' 인 경우 재사용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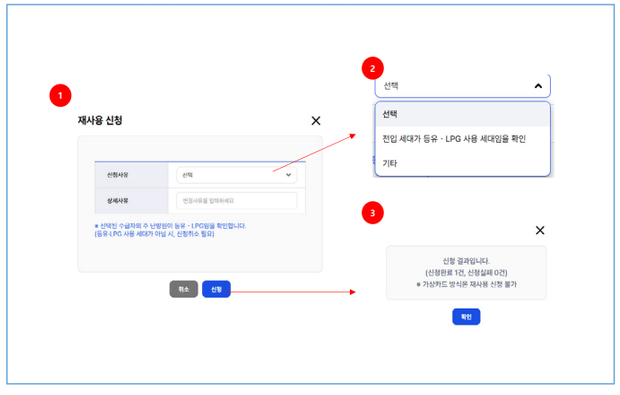

1 [재사용 신청]

건출입으로 인해 등유 · LPG 사용이 중지된 수급자의 재사용 신청

※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상태이면서 실물카드인 경우 재사용 신청 가능

2 [사유 선택]

재사용 신청 사유를 선택 및 작성 후, 재사용 신청 필요

※ 재사용 신청자가 등유 · LPG 사용세대 인지 확인 필요

3 [신청 결과]

신청 완료 시 표출되는 화면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5 수급자 현황(등유·LPG)

대상자 조회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수급자 현황]

1 [검색조건]

사업년도, 수급자명, 생년월일 등 조회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조건 설정

2 [조회]

검색조건 설정 후 조회 시, **해당 조건에 맞는 수급자의 리스트** 표시

3 [초기화]

설정한 검색조건을 초기화

4 [재사용 신청] (다음 페이지 참고)

대상자가 **전출입** 혹은 **가상카드 전환 시** 재신청을 진행하여 시군구 승인 하에 대상자로 편입

5 [신청 회수]

재사용 신청 내용을 취소하고 신청 전의 상태로 되돌림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5 수급자 현황(등유·LPG)

대상③ 신청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관리] → [대상③신청(등유 · LPG)]

1 등유 · LPG 추가지원을 원하는 대상자 선택 후 2 대상3 신청 을 통해 신청

※ 대상 ③ 신청자 명단은 '실물카드' 수급자 중 등유 · LPG 추가지원을 받지 않는 명단으로,
반드시 수급자의 난방환경이 등유 · LPG 임을 확인 후 신청

3 [신청 회수]

대상 ③ 신청 내용을 취소하고 신청 전의 상태로 되돌림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6 유형별 수급자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유형별 수급자 현황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유형별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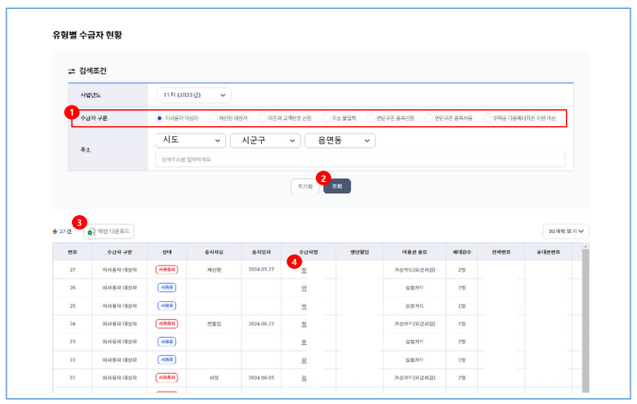

1. **[수급자 구분]**
   선택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유형 선택
2. **[조회]**
   검색조건 설정 후 조회 시,
   해당 조건에 맞는 수급자의 리스트 표시
3.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유형별 수급자의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암호:**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 제외)

   ex) 010-1234-3333 → 01012343333
4. **[대상자 상세조회] 이동**
   - **수급자명** 클릭 시
     대상자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7 예외지급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예외지급 관리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관리] → [예외지급 관리] → [예외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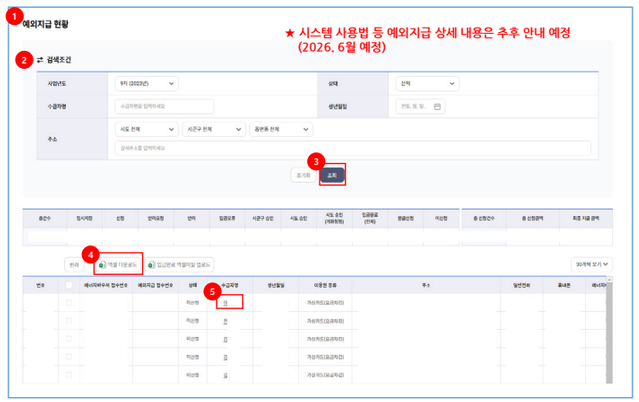

1. **[예외지급 현황]**
   예외지급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 가능
2. **[검색조건]**
   사업년도, 상태, 수급자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건 설정
3. **[조회]**
   검색조건 설정 후 조회 시,
   해당 조건에 맞는 수급자 리스트 표시
4. **[엑셀 다운로드]**
   - 조회한 예외지급 수급자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암호:**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 제외)

   ex) 010-1234-3333 → 01012343333
5. **[예외지급 상세정보] 이동**
   - **수급자명** 클릭 시, 수급자의
     예외지급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8 가맹점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가맹점 현황

접속경로 : 에너지바우처 대국민 홈페이지 (www.energyv.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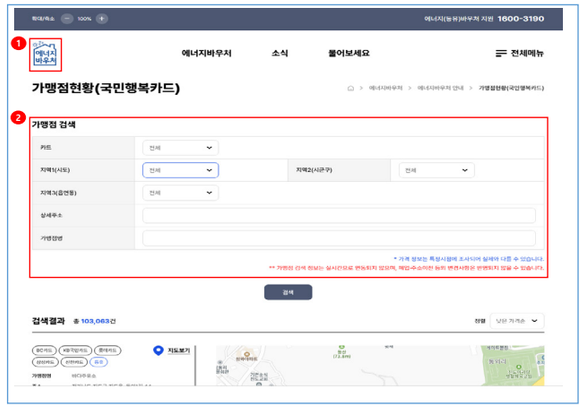

1. **[에너지바우처 대국민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접속
   - **[에너지바우처] 탭 - [가맹점현황(국민행복카드)]**

   * 현재 업무포털 내 가맹점 현황 데이터는 정비 중에 있으므로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관련 정보는 대국민 홈페이지 데이터를 활용 부탁드립니다.
2. **[가맹점 검색]**
   - 카드(BC/롯데/삼성/KB국민/신한), 지역, 상세주소, 가맹점명을 통해 검색 가능
   - 등유 : 오피넷 시스템과 연동되어 가맹점의 실시간 가격 파악 가능

   ※ 가맹점의 폐업·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은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사전 연락 후 방문 필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09 게시판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공지사항 & 자료실

접속경로 : [게시판 현황] → [공지사항 &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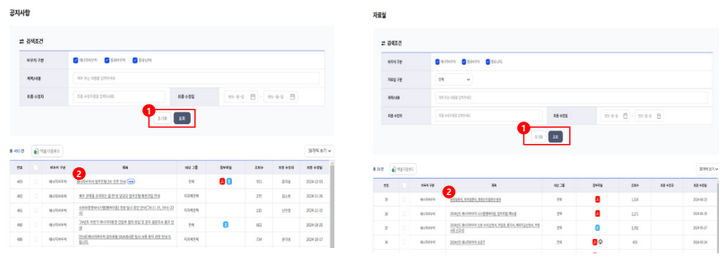

[공지사항]
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 업무포털) 및 에너지바우처 관련 안내

[자료실]
각종 **문서 서식 및 매뉴얼** 게시

1. **[초기화] 및 [조회]**
   - **[초기화]**: 설정한 검색조건을 초기화
   - **[조회]**: 검색조건 설정 후 조회 시, **해당 조건에 맞는 게시물의 리스트** 표시
2. **게시물 상세조회**
   - 열람하고자 하는 게시글의 [제목] 클릭 시 상세 조회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문의처

안내기관	전화번호	안내 내용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공무원 전용 핫라인)	1600–3192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콜센터	1566–3232 (단축번호 2번)	행복이음 시스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발행일 2026년 6월
발 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 (02) 2267-0663